2020.03.

목 차

1. 학부 소개 ····· 4
   가. 지구환경과학 소개 ····· 4

2. 학부 구성 ····· 5-9
   가. 교수 현황 ····· 5-8
   나. 교직원 현황 ····· 9
   다. 시설 현황 ····· 9

3. 학사관리 및 학적 ····· 10-16
   가. 등록 ····· 10
   나. 수강신청 ····· 11
   다. 휴·복학 ····· 11-12
   라. 지도교수 선정 및 선정절차 ····· 12
   마. 석사·박사 통합과정 ····· 13
   바. 연구생 등록 ····· 14
   사. 전문연구요원 ····· 14-16

4. 교과과정 및 이수규정 ····· 17-43
   가. 지구환경과학부 교과목 목록 및 개요 ····· 17-41
   나. 주요 이수규정 ····· 41-43

5. 대학원 과정별 일정표 ····· 44
   가. 석사과정 ····· 44
   나. 박사과정 ····· 44
   다. 석박사 통합과정 ····· 44

6. 논문 제출 자격시험 ····· 45-46
   가. 시험과목 ····· 45
   나. 응시자격 ····· 45
   다.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논자시 합격인정 여부 (대기과학전공 해당) ····· 46

7. 논문 제출 및 심사 ····· 47-50
   가. 논문 제출자격 ····· 47
   나. 논문심사 신청 ····· 47
   다.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 47
   라. 논문심사 절차 ····· 47-48
   마.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 ····· 48
   바. 논문제출 기한 및 연장 ····· 48-50

8. 대학원 장학 ····· 51-52
가. 장학금 신청 ····· 51
나. 장학금 종류 ····· 51-52

9. 국내·외 교류 ····· 53-57
가.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 ····· 53
나. 공동/복수학위 ····· 53
다. 국제학술교류 협정 체결 현황 (2020년) ····· 54-55
라. 교환학생 ····· 55
마. Study Abroad Program (SAP) ····· 55-57

10. 기타 학생 생활 ····· 58-68
가. 관악학생생활관 안내 ····· 58-59
나. 학생증(S-card) 발급 안내 ····· 59-62
다. 학생건강검진 안내 ····· 62
라. 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 63
마. 교육 ····· 64-67
바. 대학원 생활 중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 68
사. 자:우리 ····· 68

11. 각종 서식 및 시행 지침 ····· 69-190

SCIENCE
자연과학대학·지구환경과학부

1. 학부 소개

가. 지구환경과학 소개

지구환경과학은 지구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지구 대기권, 수권, 지권의 구성물질과 이들의 순환, 변화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환경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예측하는 자연과학의 한 영역이다. 지구환경과학은 지구대기의 물리·화학적 상태와 그 운동을 이해하는 대기과학, 지구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지구물질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하는 지구시스템과학, 해양의 구성 물질과 물을 포함한 물질 순환, 생태계를 이해하는 해양학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각자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해양학 등 관심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 전공분야는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학문의 대상에 따라 크게 대기과학, 지구시스템과학, 해양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과학은 지구대기의 운동과 물리적, 화학적 상태와 그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밝히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대기과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크게 나누어 기상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예측하는 문제, 기상이변이나 지구온난화와 관계된 기후변화의 문제, 대기환경의 오염과 보존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대기과학 분야는 전 세계적인 관측 및 감시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학문에 비하여 국제적 교류와 공동연구가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지상 및 상층 관측망을 통하여 대기를 동시에 관측, 감시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상레이더, 기상위성 등 첨단장비가 사용된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고 날씨 및 기후를 예측하는데 슈퍼컴퓨터 등 첨단장비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구시스템과학은 우리의 생활터전인 행성 지구에 대해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46억년 된 지구와 태양계의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진화해 왔는지 밝히고자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연구기법들을 적용해 오고 있다. 지진이나 화산처럼 지구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맨틀 대류와 같이 지구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인 자연현상들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최근에는 첨단 연구기기의 도입으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례로 극미량의 동위원소를 분석함으로써 차가운 원시지구 (Cool Early Earth)라는 가설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현재의 지구는 물론이고 미래의 지구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결국 인간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있었던 핵폭탄 실험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결국 지구시스템과학의 각종 연구 분야들이 함께 어우러져 해답을 얻고 있다. 그 밖에도 지진, 화산, 산사태, 수자원 개발, 원전부지 조사, 방폐장 부지선정 등 인간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제들이 지구시스템과학의 응용 연구 분야에 포함된다.

해양학은 육지와 인접한 연안역과 심해를 포함하여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와 바다 속 생명현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의 역할과 반응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해양학은 인공위성, 무인잠수정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해양관측과 관측 자료의 분석 및 현상에 관한 원인 규명, 수치모델을 이용한 미래 바다 모습의 예측을 포함한다. 해류, 파랑, 조석 등과 같은 바닷물 자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해양학, 바다의 밑바닥을 구성하는 해저의 지형과 구성 물질 및 해저에 남아있는 과거의 기록 등을 연구하는 지질해양학,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큰 포유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다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는 생물해양학, 바닷물 속에 녹아있거나 혹은 작은 입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무기 물질의 성분과 특성, 그리고 이들 물질의 기원 등을 연구하는 화학해양학, 해양생물의 화학물질에 의한 생태적 적응이나 생리활성 해양천연물 및 유전자 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해양생명공학 등이 있다. 그 외에 해양-대기 상호작용,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보존, 심층수 및 해저 지하수,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의 공간적 활용 및 자연재해와 해양공학 등에 대한 연구도 있으며, 해양학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연계성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학부 구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구환경과학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두 명의 외국인 교수를 포함하여 37명의 전임교수와 2020년 현재 230여명의 학부생 그리고 130여명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 홈페이지(sees.snu.ac.kr)에서 찾을 수 있다.

가. 교수 현황 (가나다 순)

<table>
<tr>
<td rowspan="6"> </td>
<td colspan="2">강헌중 교수</td>
<td rowspan="6"> </td>
<td colspan="2">Prof. Kim, Kwang-Yul</td>
</tr>
<tr>
<td colspan="2">해양천연물신약연구실</td>
<td colspan="2">통계기후학연구실</td>
</tr>
<tr>
<td>연구실</td><td>24동 309호</td>
<td>연구실</td><td>501동 420호</td>
</tr>
<tr>
<td>전공</td><td>해양천연물화학, 해양생명공학</td>
<td>전공</td><td>기후학 및 자료분석</td>
</tr>
<tr>
<td>전화</td><td>02-880-5730</td>
<td>전화</td><td>02-880-4205</td>
</tr>
<tr>
<td>이메일</td><td>hjkang@snu.ac.kr</td>
<td>이메일</td><td>kwang56@snu.ac.kr</td>
</tr>
<tr>
<td></td>
<td>홈페이지</td><td>https://marinedrugdiscover.wixsite.com/marinedrugdiscovery</td>
<td></td>
<td>홈페이지</td><td>statclim.snu.ac.kr</td>
</tr>
<tr>
<td rowspan="5"> </td>
<td colspan="2">김규범 교수</td>
<td rowspan="5"> </td>
<td colspan="2">김덕진 교수</td>
</tr>
<tr>
<td colspan="2">환경해양생지화학연구실</td>
<td colspan="2">인공위성지구물리연구실</td>
</tr>
<tr>
<td>연구실</td><td>24동 406호</td>
<td>연구실</td><td>25-1동 421호</td>
</tr>
<tr>
<td>전공</td><td>화학해양학, 환경화학</td>
<td>전공</td><td>원격탐사/지구물리</td>
</tr>
<tr>
<td>전화</td><td>02-880-7508</td>
<td>전화</td><td>02-880-6631</td>
</tr>
<tr>
<td>이메일</td><td>gkim@snu.ac.kr</td>
<td>이메일</td><td>djkim@snu.ac.kr</td>
</tr>
<tr>
<td></td>
<td>홈페이지</td><td>embl.snu.ac.kr</td>
<td></td>
<td>홈페이지</td><td>satgeo.snu.ac.kr</td>
</tr>
<tr>
<td rowspan="5"> </td>
<td colspan="2">김상우 교수</td>
<td rowspan="5"> </td>
<td colspan="2">김영희 교수</td>
</tr>
<tr>
<td colspan="2">기후환경실험실</td>
<td colspan="2">지구물리연구실</td>
</tr>
<tr>
<td>연구실</td><td>501동 425호</td>
<td>연구실</td><td>25-1동 513호</td>
</tr>
<tr>
<td>전공</td><td>대기과학/대기환경</td>
<td>전공</td><td>지구물리학/지진학</td>
</tr>
<tr>
<td>전화</td><td>02-880-6716</td>
<td>전화</td><td>02-880-6735</td>
</tr>
<tr>
<td>이메일</td><td>sangwookim@snu.ac.kr</td>
<td>이메일</td><td>younghkim@snu.ac.kr</td>
</tr>
<tr>
<td></td>
<td>홈페이지</td><td>air.snu.ac.kr</td>
<td></td>
<td>홈페이지</td><td>seislab.snu.ac.kr</td>
</tr>
<tr>
<td rowspan="5"> </td>
<td colspan="2">김정훈 교수</td>
<td rowspan="5"> </td>
<td colspan="2">김종성 교수</td>
</tr>
<tr>
<td colspan="2">예보분석응용실험실</td>
<td colspan="2">해양저서생태학연구실</td>
</tr>
<tr>
<td>연구실</td><td>501동 421호</td>
<td>연구실</td><td>25-1동 307호</td>
</tr>
<tr>
<td>전공</td><td>일기예보 및 응용기상</td>
<td>전공</td><td>해양저서생태학</td>
</tr>
<tr>
<td>전화</td><td>02-880-6718</td>
<td>전화</td><td>02-880-6750</td>
</tr>
<tr>
<td>이메일</td><td>jhkim99@snu.ac.kr</td>
<td>이메일</td><td>jskocean@snu.ac.kr</td>
</tr>
<tr>
<td></td>
<td>홈페이지</td><td>http://aml.snu.ac.kr</td>
<td></td>
<td>홈페이지</td><td>benthos.snu.ac.kr</td>
</tr>
</table>

<table>
<tr>
<td rowspan="5"> </td>
<td colspan="2">나한나 교수</td>
<td rowspan="5"> </td>
<td colspan="2">남성현 교수</td>
</tr>
<tr>
<td colspan="2">물리해양학연구실</td>
<td colspan="2">해양환경관측연구실</td>
</tr>
<tr>
<td>연구실</td>
<td>25-1동 411호</td>
<td>연구실</td>
<td>25-1동 408호</td>
</tr>
<tr>
<td>전공</td>
<td>물리해양학</td>
<td>전공</td>
<td>물리해양학</td>
</tr>
<tr>
<td>전화</td>
<td>02-880-6747</td>
<td>전화</td>
<td>02-880-4138</td>
</tr>
<tr>
<td></td>
<td>이메일</td>
<td>hanna.ocean@snu.ac.kr</td>
<td></td>
<td>이메일</td>
<td>namsh@snu.ac.kr</td>
</tr>
<tr>
<td></td>
<td>홈페이지</td>
<td>https://hannaocean.wixsite.com/website</td>
<td></td>
<td>홈페이지</td>
<td>http://ool.snu.ac.kr</td>
</tr>
<tr>
<td rowspan="5"> </td>
<td colspan="2">박록진 교수</td>
<td rowspan="5"> </td>
<td colspan="2">박상욱 교수</td>
</tr>
<tr>
<td colspan="2">대기화학모델링실험실</td>
<td colspan="2">과학정책</td>
</tr>
<tr>
<td>연구실</td>
<td>501동 520호</td>
<td>연구실</td>
<td>24동 224호</td>
</tr>
<tr>
<td>전공</td>
<td>대기화학, 대기오염 모델링</td>
<td>전공</td>
<td>과학정책</td>
</tr>
<tr>
<td>전화</td>
<td>02-880-6715</td>
<td>전화</td>
<td>02-880-6740</td>
</tr>
<tr>
<td></td>
<td>이메일</td>
<td>rjpark@snu.ac.kr</td>
<td></td>
<td>이메일</td>
<td>sangook.park@snu.ac.kr</td>
</tr>
<tr>
<td></td>
<td>홈페이지</td>
<td>http://airchem.snu.ac.kr/acmg/</td>
<td></td>
<td>홈페이지</td>
<td></td>
</tr>
<tr>
<td rowspan="5"> </td>
<td colspan="2">박성수 교수</td>
<td rowspan="5"> </td>
<td colspan="2">박정우 교수</td>
</tr>
<tr>
<td colspan="2">수치모델연구실</td>
<td colspan="2">해양암석지구화학연구실</td>
</tr>
<tr>
<td>연구실</td>
<td>501동 524호</td>
<td>연구실</td>
<td>25-1동 310호</td>
</tr>
<tr>
<td>전공</td>
<td>구름 및 난류 모수화</td>
<td>전공</td>
<td>암석지구화학 및 해양지질</td>
</tr>
<tr>
<td>전화</td>
<td>02-880-6717</td>
<td>전화</td>
<td>02-880-9288</td>
</tr>
<tr>
<td></td>
<td>이메일</td>
<td>sungsup@snu.ac.kr</td>
<td></td>
<td>이메일</td>
<td>jung-woo.park@snu.ac.kr</td>
</tr>
<tr>
<td></td>
<td>홈페이지</td>
<td>nmlab.snu.ac.kr</td>
<td></td>
<td>홈페이지</td>
<td>http://ssabam.wix.com/jungwoopark</td>
</tr>
<tr>
<td rowspan="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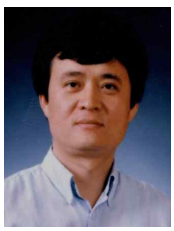 </td>
<td colspan="2">백종진 교수</td>
<td rowspan="5"> </td>
<td colspan="2">손병주 교수</td>
</tr>
<tr>
<td colspan="2">대류/도시기상실험실</td>
<td colspan="2">위성기상실험실</td>
</tr>
<tr>
<td>연구실</td>
<td>501동 422호</td>
<td>연구실</td>
<td>501동 523호</td>
</tr>
<tr>
<td>전공</td>
<td>종규모기상, 구름물리</td>
<td>전공</td>
<td>위성기상</td>
</tr>
<tr>
<td>전화</td>
<td>02-880-6990</td>
<td>전화</td>
<td>02-880-7783</td>
</tr>
<tr>
<td></td>
<td>이메일</td>
<td>jjbaik@snu.ac.kr</td>
<td></td>
<td>이메일</td>
<td>sohn@snu.ac.kr</td>
</tr>
<tr>
<td></td>
<td>홈페이지</td>
<td>cum.snu.ac.kr</td>
<td></td>
<td>홈페이지</td>
<td>metsat.snu.ac.kr</td>
</tr>
<tr>
<td rowspan="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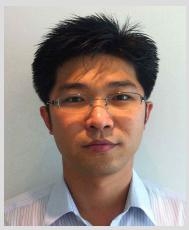 </td>
<td colspan="2">손석우 교수</td>
<td rowspan="5"> </td>
<td colspan="2">심민섭 교수</td>
</tr>
<tr>
<td colspan="2">날씨/기후역학실험실</td>
<td colspan="2">지구미생물학연구실</td>
</tr>
<tr>
<td>연구실</td>
<td>501동 424호</td>
<td>연구실</td>
<td>25-1동 606호</td>
</tr>
<tr>
<td>전공</td>
<td>대기역학</td>
<td>전공</td>
<td>지구미생물학/동위원소지구화학</td>
</tr>
<tr>
<td>전화</td>
<td>02-880-8147</td>
<td>전화</td>
<td>02-880-6632</td>
</tr>
<tr>
<td></td>
<td>이메일</td>
<td>seokwooson@snu.ac.kr</td>
<td></td>
<td>이메일</td>
<td>mssim@snu.ac.kr</td>
</tr>
<tr>
<td></td>
<td>홈페이지</td>
<td>http://wcd.snu.ac.kr</td>
<td></td>
<td>홈페이지</td>
<td>https://sites.google.com/view/geobiosnu/</td>
</tr>
</table>

	안진호 교수			우주선 교수	
	빙하/고기후연구실			퇴적지질학연구실	
	연구실	25-1동 614호		연구실	25-1동 205호
	전공	지구화학/ 빙하학		전공	퇴적학/퇴적암
	전화	02-880-6726		전화	02-880-6736
	이메일	jinhoahn@snu.ac.kr		이메일	jusunwoo@snu.ac.kr
	홈페이지	icecore.snu.ac.kr		홈페이지	
	이강근 교수			이상묵 교수	
	수리지구환경연구실			해양지구물리/동역학연구실	
	연구실	25-1동 506호		연구실	25-1동 318호
	전공	수리지구환경학		전공	지구동역학, 해양지구물리 계산과학
	전화	02-880-8161		전화	02-880-6745
	이메일	kklee@snu.ac.kr		이메일	smlee@snu.ac.kr
	홈페이지	http://snuwater.snu.ac.kr		홈페이지	mggl.snu.ac.kr
	이성근 교수			이융남 교수	
	지구물질과학연구실			고생물학연구실	
	연구실	25-1동 306호		연구실	25-1동 510호
	전공	지구물질물리화학		전공	척추고생물학
	전화	02-880-6729		전화	02-880-6737
	이메일	sungklee@snu.ac.kr		이메일	ynlee@snu.ac.kr
	홈페이지	http://hosting03.snu.ac.kr/~sungklee		홈페이지	paleolab.snu.ac.kr
	이인성 교수			이준기 교수	
	자원지질연구실			지진학연구실	
	연구실	25-1동 605호		연구실	25-1동 517호
	전공	자원지질학		전공	지진학/지구물리
	전화	02-880-6730		전화	02-880-6731
	이메일	insung@snu.ac.kr		이메일	rhie@snu.ac.kr
	홈페이지	resource111.com		홈페이지	seismo.snu.ac.kr
	이현우 교수			임규호 교수	
	화산학/휘발성성분연구실			종관규모기상학실험실	
	연구실	25-1동 507호		연구실	47동 201호
	전공	화산학 및 지구화학		전공	종관기상학
	전화	02-880-6732		전화	02-880-6725
	이메일	lhw615@snu.ac.kr		이메일	gyuholim@snu.ac.kr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volcanochem/		홈페이지	ssmg.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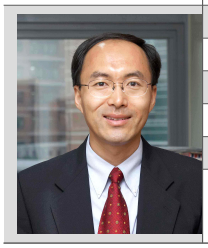	정해명 교수			정해진 교수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			생태바이오에너지융합연구실	
	연구실	25-1동 514호		연구실	25-1동 201호
	전공	지체구조물리학		전공	해양생물학
	전화	02-880-6733		전화	02-880-6746
	이메일	hjung@snu.ac.kr		이메일	hjjeong@snu.ac.kr

	홈페이지	hosting03.snu.ac.kr/~hjung/		홈페이지	hosting03.snu.ac.kr/~hjjeong
	조양기 교수			최경식 교수	
	해양환경예측연구실			해양퇴적학연구실	
	연구실	25-1동 410호		연구실	25-1동 511호
	전공	물리해양		전공	해양퇴적학
	전화	02-880-6749		전화	02-880-6748
	이메일	choyk@snu.ac.kr		이메일	tidalchoi@snu.ac.kr
	홈페이지	mepl.snu.ac.kr/inc=intro_lab		홈페이지	tidalsed.snu.ac.kr
	최우갑 교수			허영숙 교수	
	대규모순환실험실			동위원소지구화학연구실	
	연구실	501동 521호		연구실	25-1동 608호
	전공	중층대기		전공	지구화학
	전화	02-880-6711		전화	02-880-9167
	이메일	wchoi@snu.ac.kr		이메일	yhuh@snu.ac.kr
	홈페이지	lscirc.snu.ac.kr		홈페이지	hosting02.snu.ac.kr/~yhuh
	허창회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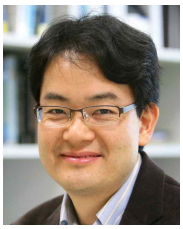	황점식 교수	
	기후물리실험실			화학해양학실험실	
	연구실	501동 423호		연구실	501동 525호
	전공	기후물리		전공	화학해양학
	전화	02-880-8861		전화	02-880-6751
	이메일	hoch@cpl.snu.ac.kr		이메일	jeomshik@snu.ac.kr
	홈페이지	cpl.snu.ac.kr		홈페이지	http://jeomshik-hwang.wixsite.com/jeomshik-hwang
	황청연 교수				
	미생물해양학 연구실				
	연구실	24동 416호			
	전공	미생물해양학			
	전화	02-880-8171			
	이메일	chung.hwang@snu.ac.kr			
	홈페이지	mol.snu.ac.kr			

나. 교직원 현황

◎ 지구환경과학부 행정실 (25-1동 311호)

구분	업무분야		전화	e-mail	비고
	담당업무	담당자			
학부장	총괄	이강근	8161, 6876	kklee@snu.ac.kr	
부학부장	교무	김덕진	6631	djkim@snu.ac.kr	
	학생	황점식	6751	jeomshik@snu.ac.kr	
	연구	손석우	8147	seokwooson@snu.ac.kr	
직 원	예산 등 학부전체관리	장정란	6743	jungran@snu.ac.kr	
	학사과정 업무	신성미	6738	ssm0603@snu.ac.kr	
		서지원	6713	jiwonseo813@snu.ac.kr	(휴직)
	교원 인사	정기철	6727	jungkc@snu.ac.kr	
	교무	류현희	6723	h8104@snu.ac.kr	
		정규현	6724	kyuhyeon@snu.ac.kr	
		유정현	6497	freedom86@snu.ac.kr	(휴직)
	서무	김종원	6723	advocator@snu.ac.kr	
		이강준	6728	xia0325@snu.ac.kr	
		김현정	6744	khj0102@snu.ac.kr	

◎ BK 사업단 (25-1동 315호)

구분	업무분야		전화	e-mail	비고
	담당업무	담당자			
단장	총괄	허창회	8861	hoch@cpl.snu.ac.kr	
직원	BK사업단 전체관리	강형주	5743	hjkang74@snu.ac.kr	
	사업	김정민	5743	jungmin@snu.ac.kr	

다. 시설 현황

1) 학부 공간

- 지구환경과학부는 25-1동 전체, 24동 3,4층과 1층 일부, 501동 4,5층에 주로 입주하여 있음
- 이외에도 대기관측소(47동), 지진관측소(48동)에 일부 교수 및 대학원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해 해양연구소(강원도 동해시 소재)가 있음
- 학부장실, 행정실, BK사업단 은 25-1동 3층에 위치해 있으며 501동 거주 구성원들을 위하여 501동 4층에 행정실 일부가 위치해 있음
- 대학원생들의 휴식과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25-1동 419호와 501동 526A호에 대학원생 휴게공간 있음

3. 학사관리 및 학적

가. 등록

1) 등록금 납부 안내: 1학기는 2월 초 경, 2학기는 8월 초 경 학부 홈페이지 공지

2) 본 등록(수납) 기간: 1학기는 2월 중순 경, 2학기는 8월 중순 경 (변동될 수 있음)

3) 추가 등록 및 분납 안내: 등록금 납부 안내 시 함께 공지
*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분납 불가

4) 고지서 출력 방법
가) 마이스누포털(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등록 → 고지서 출력
나) 학생포털에 은행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만 등록금고지서 발급 가능

5) 납부 방법
가) 현금납부
-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무통장입금) 또는 은행창구 납부
- 가상계좌번호 예금주는 학생성명이며, 입금자명은 상관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등록 완료
- 수납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및 ATM기계에서 <등록금납부> 메뉴 이용

나) 신용카드 납부(농협BC카드, 농협NH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만 가능)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점 방문하여 창구 납부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결제
- 카드취소는 당일 외 불가하며, 결제 후 할부기간 변경 등 불가
- 타인명의 카드 가능, 법인·체크카드 불가, 신한 BC 카드 불가

다) 학생회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일괄납부
라) 주의사항: 규정학기초과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시(0학점인 경우) 미등록 제적됨

6) 등록금 납부확인
가) 학생포탈사이트 개인정보에 등록한 핸드폰번호로 확인 메시지 전송
나) 등록금납부확인
- 서울대학교 등록금 납부 안내 페이지(http://www.snu.ac.kr/tuition) → 등록금납부확인 바로가기

다) 납부확인서 확인 및 출력
- 학생포털(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증명/확인서 → 증명/확인서 발급

7) 문의전화
가) 등록금 관련: 재무과(02-880-5107, 5113), 환불(구내전화: 02-880-5110)
나)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장학복지과(02-880-5078, 5079)
다) 학생회비 관련: 학생지원과(02-880-5566), 총학생회실(02-880-5223)
라) 연구생부담금(석박사 수료생) 관련: 교무과 (02-880-5161)
마) 카드결제 관련: 농협, 신한카드, 우리카드

나. 수강신청

1) 신입생 수강신청: 1학기는 2월 말, 2학기는 8월 말 (학교 홈페이지 참조)

2) 수강신청안내: 1학기는 1월 중순 경, 2학기는 7월 중순 경 학부 홈페이지에서 공지
*매 학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3)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snu.ac.kr)에서 신청
가) 로그인
- 학번은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설정되어 있음

나) 예비수강신청절차
- 예비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 연습을 통해 수강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할 수 있으며, 예비수강신청인원을 통해 강좌별 수강수요를 가늠해볼 수 있음
- 예비수강신청기간 중 신청한 교과목은 실제 수강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수강신청기간 중 신청해야 수강신청 처리 됨

4) 수강신청 변경
가) 수강신청변경기간: 개강 후 1주일 이내 실시 (정확한 기간은 수강신청 안내문 참조)
나) 수강신청변경기간 중에는 수강신청사이트를 통해 직접 교과목 신청 및 삭제 가능, 정원초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 수강신청조정기간 내 수강신청정정요청서(초안지)를 교과목 개설학과(부)에 제출

5) 수강신청 취소
가) 수강신청취소기간: 수업일수 2/4선 까지
나) 수강신청취소 절차 전산화: 수강생의 수강신청취소 신청 후, 담당교원/개설학부(과)의 온라인 승인

6) 재수강: 대학원 과정 학생은 처음 수강시 성적과 관계없이 재수강 가능

7) 관련 문의: 지구환경과학부 행정실

다. 휴·복학

1) 휴·복학 신청기간: 매 학기 학부 홈페이지에 공지
가) 미등록 휴학: 수업일수 1/4선까지
나) 등록 후 휴학: 수업일수 2/4선까지
- 등록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신청을 할 수 있음 (휴학 처리 후 등록은 불가)
- 등록금을 분납 중인 학생은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다) 복학: 학기 개시 전
(휴학기간이 종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 전에 복학신청을 해야함)

2) 휴학 연한 및 신청 가능 학기
가) 관련 규정: 「학칙」 제 66조·67조 및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나) 휴학 가능 연한: (석사과정) 4개 학기, (박사과정) 6개 학기, (석사·박사 통합과정) 8개 학기

※ 단, 아래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휴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종강일까지 신청 가능)

- 군휴학: 병역의무기간이 포함된 학기
- 창업휴학: 2개 학기
- 임신·출산휴학: 2개 학기
- 육아휴학: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4개 학기
- 질병휴학: 4개 학기
- 권고휴학: 4개 학기

다) 1회에 2개 학기까지 휴학신청 가능. 단, 군 휴학은 병역의무기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권고휴학은 4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3) 휴·복학 신청절차

가) 마이스누 포털(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개인정보 → 휴·복학신청 → 지도교수/학부 승인

※ 지도교수님이 승인 방식을 '오프라인 승인'으로 설정하여 휴학신청서가 출력이 가능한 경우, 휴학신청서 출력 후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학부 행정실에 제출

나) 휴·복학 종류별 첨부서류 (휴·복학 신청 시 같이 업로드)

- 군휴학: 입영통지서
- 창업휴학: 성적증명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시설입대 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학부장 추천서
- 임신·출산휴학: 진단서,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육아휴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휴학: "4주 이상의 장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며 치료 기간 중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1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된 것)

※ 수업일수 3/4선 이후 질병휴학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군복귀: 전역증명서, 병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이중학적 금지: 본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음 (「학칙」70조)

※ 공동학위의 경우, 학생은 본교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학위가 수여됨

라. 지도교수 선정 및 선정절차

1) 지도교수 신청서 제출시기: 매 학년도 3월 초, 9월 초

가) 논문지도교수 선정 기한: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

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기한: 입학 후 3개 학기 이내

※ 부득이한 경우 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학부에서 심사 후 지도교수 변경 가능

2) 지도교수 선정 절차 : 학생이 지도교수 확인을 받은 신청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

마. 석사·박사 통합과정

1) 정의 및 선발대상

가) 정의: 석사·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 학위 취득 없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나) 선발대상: 통합과정의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2)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가) 수업연한: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재학연한: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3) 석사·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박사과정생 자격 인정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4개 학기부터 박사과정생으로 인정한다.

4) 석사·박사 통합과정 포기

기본 원칙: 학적변동기간 내 석박통합포기 가능(방학기간은 학적변동기간이 아님)

※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 중「서울대학교 학칙」제89조제1항 및「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당해학기 수료사정 전에 석박통합 포기 한 경우**

⇒ 바로 수료사정 후 다음 학기 연구생 등록 가능

▪ **당해학기 수료사정 후에 석박통합 포기 한 경우**

⇒ 해당 학기에 수료사정이 이미 완료되어 다음 학기 정규 등록 후 다음 학기 수료사정 시 수료

바. 연구생 등록

1) 대학원연구생의 정의

- 대학원연구생이라 함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학원연구생은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원연구생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대학원연구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아래의 내용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대학원연구생 등록

- 납부대상자 :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 중 해당 학기에 학교 제반시설을 이용하거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mysnu)에서 로그인(학생ID)
  학사/정보 ⇒ 등록 ⇒ 고지서/내역조회 ⇒ 연구생부담금고지서를 선택 후 출력

3) 납부금액 및 납부장소

- 납부금액 : 자연 • 공학계열(200,000원),
- 납부방법 : 전산 출력된 납부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명기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 로 계좌 이체하여 납부

사. 전문연구요원

1) 선발 대상(공통)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2) 신청 시기: 매 학년도 4월 중순(전기), 9월 중순(후기)

3) 선발 인원

가) 인원 배정 기준

- (총괄배정 인원 기준) 전/후반기 7:3, 이공계/기초의학계 95:5, 수도권/비수도권 7:3 비율로 배정하여 선발

※ 박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대학원의 소재지 기준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기관
-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소재한 기관

나) (2019년 기준)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현황: 배정인원은 현역입영예정대상자에 해당

- 2019년 총괄 배정인원 : 총 600명(113개 대학원)

구분	이공계 분야(95%)			기초의학계 분야(5%)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70%)	비수도권 (30%)	계
전기 (70%)	279	120	399	15	-	15	294	120	414

후기 (30%)	120	51	171	6	9	15	126	60	186
계	399	171	570	21	9	30	420	180	600

*(배정인원 미달 시, 미달 인원은 후기에 포함하여 선발하되, 전기 미달인원이 발생한 권역에 우선 배정하여 선정)

4) 선발 절차

가) 지원서 취합/제출: 지원자 소속 대학 담당자가 총괄 현황 제출

나) 접수: 한국연구재단에 신청공문 및 제출서류 구비 등 접수 확인

다) 지원서 심사: 지원자격 요건 검토 및 선발기준 검토

라) 합격자(편입대상자) 발표

5) 선발 방법

가) 현역입영대상자: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나) 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발

*(보충역은 배정인원과 별개로 선발, 선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6) 선발 기준

가) 선발기준 항목 및 배점(총점 600점)

◎ 국사시험(P/F)

- 인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기간: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받은 급수
- 적용방법: 3급 이상 합격자 (※Pass/Fail으로 별도의 배점 없음)

◎ 영어시험(300점)

- 인정시험: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
- 인정기간: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적용방법: 기존 TEPS와 New TEPS별 환산방법에 따라 300점 만점 기준으로 변환

◎ 출신대학원 성적(300점)

-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나) 가산점 적용 사항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 15점부여 (영어시험 배점(300점)의 5%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대학원 성적 고득점자 ②영어성적 고득점자 ③연소자

7)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지원자 제출서류 (**※⑤~⑧은 보충역 지원자는 미제출**)

①지원서

②병적증명서

③석사학위 취득증명서

④박사과정 재학증명서
⑤TEPS 성적표
⑥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⑦석사과정 성적증명서
⑧국제과학올림피아드입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나) 세부절차
①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http://www.kri.go.kr) 접속 후 정보 기입
②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접속 후 **지원자 온라인 신청 및 첨부서류 탑재** > 온라인 신청완료(※반드시 마감시각 전까지 온라인 **"신청완료"** 처리하여야 함.)
③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통보**

8)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접속 폭주로 시스템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기 바람
- 지원서 오기재, 제출서류 미비, 양식 미준수, 유의사항 미확인, 마감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자는 반드시 온라인 지원시스템(e-R&D)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 또한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시 주관기관명은 연구소 기준이 아닌 소속기관 기준으로 선택
  e.g.) 서울대학교 (O), 서울대학교 xxx연구소 (X)

9) 문의처
가) 서류 제출, 선발 방법 및 절차 관련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 042-869-6452, 6454

나)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전산 오류 및 한국연구자저오시스템(KRI) 정보 등록 관련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1544- 6118

※향후 일정 및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재확인요망

4. 교과과정 및 이수규정

가. 지구환경과학부 교과목 목록 및 개요

1) 대학원 교과목 목록

(빨간색 표시 과목은 2군 과목으로 부제가 다를 경우 중복 수강 가능)

(2020.02.14.기준)

해양	지질	대기
해류학	안정동위원소지구화학 및 실험	종관기상학
조석이론과 분석	층서고생물학	대규모대기역학
퇴적학	환경지구화학	미기상학
해저퇴적물 지구화학	화산학 특론 및 실험	대기수치모델링 및 실습1
해양오염론	퇴적상분석	대기난류 및 경계층
해양저서생태학	수리지질학	대기대순환
해양미생물생태학	지구미생물학연구방법론	열대기상학
추적자화학	지구시스템 탐사자료처리와 영상화	구름물리학
해양천연물화학특론	지구내부물리학	기상통계학
해양지구동역학	지진학	지리정보기상학
천해해양물리학	지체구조물리학특강	대기수치모델링 및 실습2
해양순환특강	광물학특론 및 실험	중규모 기상학
해양파동특강	암석학특강	중층대기역학
분지해석	구조지질학특강	대기복사학
해양지구화학특강	고급 퇴적학 및 층서학	대기원격탐사학
해양생태학특강	고생물학세미나	대기과학 특강 1
퇴적물평가특강	자원지질학특수연구	대기해양역학
지구환경과 해양미생물특강	현대지질학	대기오염 및 분산
생물해양학특강	환경지질학특강	대기파동
환경화학특론 및 실험	응용지질학특강	대기과학 특강 2
해양신약특강	지구시스템환경관측학특강	대기화학
화학해양학특강	지구물리특강	
해양학 세미나	탐사지구물리특강	
	지구화학특강	
총 23개	**총 24개**	**총 21개**

지환부 공통과목	지구환경과학세미나, 대학원 논문연구
자연대 공통과목	고급유기물분광분석, 고급수용액화학, 해수분석 및 실험 특강, 지구환경과학특강1

참고: 학사과정 교과목

*: 300(자연대공통)과목

(2020.02.14.기준)

학년	학기	해양	지질	대기
1학년		해양학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해양학실험	지구시스템과학실험	대기과학실험
		지구환경과학, 지구환경과학실험		
2학년	1학기	바다의탐구*	지구시스템진화*	기후학개론*
	2학기	기초유체역학*	판구조론 및 실험*	대기열역학*
		환경해양학 및 실험*		
3학년	1학기	물리해양학 및 실험	광물과 암석 및 실험	대기역학1
		생물해양학 및 실험	구조지질학 및 실험	대기탐사 및 실험
		퇴적학 및 실험	지구물리	대기물리1
		화학해양학개론 및 실험	환경지구학	
	2학기	조석과 파랑	화석 및 실험	대기역학2
		해양유기화학 및 실험	지구화학 및 실험	대기분석 및 실험
		지질해양학 및 실험		대기물리2
		표영환경생태학		미기상학 개론
4학년	1학기	해양선상실습	암석학 및 실험	예보학 및 실험
		해양천연물신약개론 및 실험*	퇴적지질학 및 실험	기후역학
		지구과학계산과 프로그래밍*	지진·지구동력학	대기화학개론 및 실습
			인공위성지구물리 및 실습	
			수리지구환경 및 실험	
	2학기	연안해양역학	자원지질학 및 실험	중층대기
		미생물해양학 및 실험	지구생물학 및 실험	위성기상기후학
		해양오염 및 실험	야외지질실습	대기수치모델링 개론 및 실습
		심해저 지구화학 및 실험		
	매학기	지구환경과학실험연구		
총		20개 (300과목 5개 포함)	18개 (300과목 2개 포함)	17개 (300과목 2개 포함)
		3과목		
교양		자연재해의 관측과 이해 (해양·지질 팀티칭)	지구의 이해	인간과 지구환경
		바다과학기행	화산과 지진	
			지구환경변화 (해양·지질·대기 팀티칭)	

2) 대학원 교과목 개요

◎ 자연대 공통 (4과목)

1. 300.507A
해수분석 및 실험특강 (Topics on seawater Analysis and Lab.), 3-1-4

해수 내에 녹아 있는 원소들의 분포형태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이들 분포를 통하여 생지화학적 과정들을 규명한다. 해수의 순환과정 및 수괴 추적에 응용하기 위한 원리들의 최근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실험을 통하여 이를 심화학습한다.

In this course, the distribution of the chemical elements which is resolved in the sea water will be deeply understood, and by this procedure whole biogeochemical processes will be examined. Recent research cases will be introduced to understand and to apply them to deeply understand the ocean circulation processes and tracing the water mass.

2. 300.509
고급유기물분광분석 (Advanced Spectroscopic Analysis of Organic Compounds), 3-3-0

이 교과목은 유기화학이나 천연물화학 전공자를 위한 대학원 강의로 각종 유기물의 고급 1차원 및 2차원 핵자기공명법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해 다룬다.

This course is for the graduate students who major in organic chemistry or bioorganic chemistry and deals with the understanding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1-D and 2-D NMR spectra of the various organic matters.

3. 300.510
지구환경과학특강1 (Topics in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1), 3-3-0

지구 및 우주 환경의 형성과정, 우주 및 지구시스템의 구조, 지구환경의 장기적 및 경향적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에 대하여 교수 및 관련 전문가의 세미나 발표, 학생의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한다. 이 과목은 지구환경과학 전공 학생들에게 지구 및 우주 환경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과 내용을 소개하고,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earth and the universe, the structure of the earth system and universe, trend, methods, results of the research of the long-term and evolving process of the earth environment in the ways of seminars of professor, relevant specialists, presentation of the students, and discussion. This course will introduce the various research area and methods and the fundamentals for the deep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4. 300.505A
고급수용액화학 (Advanced Aquatic Chemistry), 3-3-0

이 강좌는 해수 및 지하수에 녹아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역할들을 규명, 이해하고 최근 연구결과 소개를 통하여 이에 대한 분석 및 반응 기작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In this course the role of the various materials which is dissolved in the sea water and the underground water will be examined and understood, and by introducing the recent articles of the research analysis of the materials and its reaction processes will be discussed.

◎ 지구환경과학부 공통 교과목 (2과목)

1. 3345.777
지구환경과학세미나 (Seminar in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3-3-0

이 과목은 지구환경과학부 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수강생 전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통년 과정의 세미나 과목의 하나로서 1,2학기 개설되는 과목이다. 현 지구환경과학부를 구성하는 6개의 연구부에서 각 2주씩의 세미나를 담당하여 수강생들에게 폭넓은 지구환경과학 전반에 걸친 연구를 소개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수강생 전원은 필수적으로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논문 발표 능력을 훈련시키는데 강의의 주요 목표를 삼고 있다.

This course is the one of the mendatory courses every graduate student in SEES has to take before graduation.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introduce current research activities in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six research groups in SEES will be in charge of preparing the seminars and each student has to prepare and present a term paper, acquiring the skill for scientific presentation.

2. 3345.803
대학원논문연구 (Reading and Research), 3-3-0

개요 없음

◎ 지질 관련 교과목 (24과목)

1. 3345.601B
환경지구화학 (Environmental Geochemistry), 3-3-0

지구시스템환경변화에 관여하는 지구화학의 기본 원리와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특별히 지구시스템을 이루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빙권에서의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주요 수업내용에는‘물질의 순환’,‘ 미량기체와 기후변화’, ‘빙권변화’, ‘지구물질의 기원’을 포함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principles and methods of gas geochemistry for environmental change in the earth system. Especially, emphases is placed on interactions among geosphere, hydrosphere, atmosphere, biosphere and cryosphere, that compose the earth system.
The main topics include cycling of substances, trace gas and climate change, cryospheric change and origin of geological materials.

2. M1411.001600

화산학 특론 및 실험 (Advanced volcanology and Lab.), 3-2-2

화산학 특론 및 실험에서는 화산이 나타나는 다양한 지구조 환경을 이해하고 마그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학습한다. 화산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작들과 분화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국내·외의 다양한 화산활동에 대하여 논의하며 야외/실내 실습을 진행한다.

We will learn various tectonic settings where volcanoes erupt and physical/chemical properties of magmas. Also, we will study a variety of volcanic processes as well as volcano monitoring. There will be discussion aboutinternational/domestic volcanism, field trips, and lab activities.

3. 3345.603
안정동위원소지구화학및실험 (Stable Isotope Geochemistry and Lab.), 3-2-2

안정동위원소는 지구시스템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수단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암석 및 광상의 성인연구, 고기후 및 고지리 연구, 퇴적환경 연구, 해양에서의 수괴(Water Mass)의 추적 및 기원연구, 무기물의 결정구조연구, 화학반응의 메커니즘 연구, 생체내 물질의 신진대사 연구, 토양, 수질 및 대기오염원의 추적에 관한 연구 등 여러 분야의 연구가 가능하다. 자원지질분야에서는 광상과 연관된 모암 및 광상의 생성환경 및 기원물질의 추적자로 활용함으로서 광상의 기원연구와 탐사에 이용되고 있다. 그와 함께 인간활동과 연관된 환경변화 monitoring에도 이용된다. 따라서 이 강의는 향후 지구시스템연구에 있어서 안정동위원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Principles governing the distributions of stable isotopes in igneous, metamorphic, and sedimentary environments are addressed. The mass spectrometry and sample preparation techniques used in the isotopic analysis of the various samples in nature including silicates, sulfides, sulfates, water, and carbonates are introduced with an emphasis of application of petrology and resource geology.

4. M1411.001900
퇴적상분석 (Sedimentary Facies Analysis), 3-3-0

퇴적물/퇴적암의 물리적, 생화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퇴적상을 구분하고 이를 해석하여 퇴적작용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퇴적상 조합을 이용해 퇴적환경을 재구성하고 지질학적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밝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퇴적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순차층 서학의 이론과 실제 적용도 다루어 진다. 이를 바탕으로 퇴적 환경변화를 조절 하는 지체구조, 해수면변동, 기후변화, 분지내적 요소에 대해서 토의한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advanced skills to describe physical and biochemical properties of sedimentary record, to interpret their formative processes using facies analysis, and to reconstruct the depositional environments and their changes through geological time by using analysis of facies associations. The course also cover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sequence stratigraphy which is based on the facies analysis. The controlling factors of the changes in depositional environments, such as tectonics, sea-level changes, climate changes, and intrinsic factors of the sedimentary basins will be discussed.

5. 3345.606
층서고생물학 (Stratigraphy and Paleontology), 3-3-0

지질학에서 층서 확립의 기본원리를 소개하며, 다양한 종류의 층서단위와 그들의 적용 그리고 성격의 차이를 논의한다.
특히, 시간 지시자로서 화석이 가지는 의미를 바탕으로 야외에서 층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생물학적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와 병행하여, 전세계에서 산출되는 주요 척추화석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생물학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principles of stratigraphy, procedures in establishing the stratigraphic units, and their characteristics. Emphasis is given to applying the paleontological data in solving geological problems. Students gather paleontological information and investigate vertebrate fossil groups found in the world.

6. 3345.609
수리지질학 (Hydrogeology), 3-3-0

수자원의 순환, 지하수의 생성 및 유동, 그리고 지하수 유동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지중이동현상 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토양, 다공질 매질, 파쇄다공질 매질, 또는 파쇄매질에서 포화 또는 불포화 상태에 있는 물의 이동, 또는 물 속에 용존되거나 지질매체내의 불용성 오염물질의 거동과 관련된 내용, 지하수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오염원의 유형과 그 영향에 관한 내용, 대수층의 특성(대수성 상수)을 알아내는 방법론 및 또는 실험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Water cycle, occurrence and flow of groundwater, transport of contaminants in subsurface waters are main topics of this course. The characteristics of porous and fractured medium in terms of groundwater flow and contaminant transport are studied along with fluid dynamics and stochastic theory.

7. M1411.001300
지구미생물학연구방법론 (Methods in Geomicrobiology), 3-3-0

이과목은 지구미생물학분야에서 이용되는 지구화학 및 미생물학의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입문과정이다. 강의 전반부는 바이오마커, 분자생물학, 미량원소, 동위원소 및 간단한 수치모델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후반부에는 관련 분야의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구미생물학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토의 할 기회를 제공한다.

This lecture introduces microbiological and low-temperature geochemical techniques commonly used in geomicrobial research. The first half of the lecture covers essential concepts of stable isotope mass-spectrometry, organic biogeochemistry, redoxgeochemistry, and molecularbiology.
In the later half, we will review major outstanding questions in the field of geomicrobiology, and learn common approaches to solving these problems.

8.3345.612A
지구시스템원격탐사자료처리와 영상화(Process and imaging of Earth System Remote Sensing Data),

3-3-0

최근 인공위성의 수가 많아져 지구를 관측한 원격탐사(공간)자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용량 원격탐사자료들을 지구과학적 연구를 위해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기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원격탐사 센서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용량 지구 관측 공간자료를 처리 할 수 있는 이론 및 접근 방법을 학습한다.

The volume of remote sensing (spatial) data has grown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as the number of satellite us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To efficiently process large volume of multi-source (multi-sensor) remote sensing data, special data handling and processing techniques are needed.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the background rationale and approaches in processing and handling the Earth observing remote sensing (spatial) data.

9. 3345.614
지구내부물리학 (Physics of the Earth's Interior), 3-3-0

지구내부 특히 맨틀 및 지각의 구조와 활동에 대해 지구물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된 과정 및 결과를 공부한다. 주로 지진파의 전파성질과 기록자료를 이용하여 지구내부의 파동속도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지구내부물질의 지구동력학적인 움직임을 파악한다.

The structure of the earth, especially of the crust and mantle, and the movement of material are studied using geophysical method. Analyses of seismograms recorded after propagation in the earth, the structure of the wave velocity, and geodynamical interpretations are conducted.

10. 3345.615
지진학(Earthquake Seismology), 3-3-0

지진의 발생, 지진파전파, 지진활동, 지구내부구조 등 지진학의 기본적개념을 교육한다. 탄성이론, 지진파전파이론, 실체파, 표면파의 분석방법, 지진계의 원리 등을 교육하고 역산이론 및 tomography를 이용하여 지구내부 구조를 규명하는 방법을 배운다. 지진활동과 진원기구, 지진정력학 및 동력학 및 Seismotectonics를 교육한다.

Funfamental problems of seismology are addressed in this course. Topics discussed include elasticity, propagation body and surface waves, earth's structure, source mechanism, inversion of seismic data, tomography, kinematics and dynamics.

11. 3345.620
지체구조물리학 특강 (Advanced Study in Tectonophysics), 3-3-0

지구 내부활동의 연구를 위해 고압고온에서의 실험연구, 초고압변성과정, 지진의 발생메카니즘, 지각과 맨틀의 유동, 그리고 지진파의 전파 속도와 지체 구조의 특성에 대해 공부한다. 필요에 따라 지체구조 물리학의 특정 주제에 대해 강의한다.

Fundamentals of experimental studies at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are introduced to

understand deformation processes in the interior of the Earth. Topics discussed include experimental methods at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rheology, ultra-high pressure metamorphism, crust and mantle flow, and seismic wave propagation and tectonics. Special topics in tectonophysics can be also discussed.

12. 3345.741
광물학특론및실험 (Advanced Mineralogy and Lab.), 3-2-2

광물에 대한 정밀한 연구방법과 함께 학기마다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중요한 주제는 X선 광물학, 점토광물학, 분광광물학, 산업광물학 및 환경광물학이다.

Advanced methods of studying minerals are introduced to examine x-ray, clay, spectroscopic, and industrial mineralogy.

13. 3345.742
암석학특강(Advanced Topics in Petrology), 3-2-2

암석학 및 고온지구화학의 다양한 연구 기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관심분야/연구주제에 맞춰 발표와 토의를 병행한다.

We will study and discuss various research topics of petrology and high temperature geochemistry. Students will give talks based on their research interests.

14. 3345.744
구조지질학특강(Topics in Structural Geology), 3-3-0

야외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석 변형의 근본원리를 구조지질학적인 측면에서 학습하고자 한다. 암석의 변형과정, 변형 미구조, 그리고 이에 관련된 지체구조에 관해 학습한다. 지구내부구조 연구를 위해 최근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압암석변형 기기들도 소개될 것이다. 부제에 따라서 새로운 책이나 외국 학술지를 통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basic mechanism of rock deformation in the field and in the deep interior of the Earth. Rock deformation processes, microstructures, and tectonics in both brittle and ductile field are covered. High pressure experimental facilities for the study of rock deformation will also be introduced. Topics found in recent journals in Structural Geology, Tectonics, Science, and Nature are addressed.

15. M1411.002000
고급 퇴적학 및 층서학(Advanced Sedimentology and Stratigraph), 3-3-0

퇴적물에 기록된 퇴적작용을 읽어내고 이를 조절한 요인을 밝히는 것은 지구환경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퇴적작용, 생물-퇴적물 연관 작용, 퇴적물 기원지, 퇴적물 동위원소/지화학 지시자 등을 분석해 지체구조운동, 고지리, 고환경, 분지해석에 활용하는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그 이론과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Deciphering sedimentary records and revealing the controlling factors are important because they provide information for reconstructing past changes in global environments. This course covers research themes which use depositional processes, sediment-life interaction, sediment provenance, and geochemical/isotopic proxies for understanding histories of tectonics, paleogeography, paleoenvironments, and basin evolution. Principles and latest research results of the themes are to be discussed in this curse.

16. 3345.746
고생물학세미나(Seminar in Paleobiology), 3-3-0

현대고생물학에서는 화석을 단지 암석 속에 들어 있는 생물의 유해로만 다루지 않고, 화석이 가지는 생물학적 의미를 역동적으로 해석 하고 있다. 척추고생물학은 어류부터 파충류, 포유류까지 다양한 척추 동물화석을 다룬다. 매학기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최신 연구내용을 습득하도록 한다. 부제의 항목으로는 “척추고생물학”, “공룡학”, “미척추고생물학”, “흔적화석학” 등이 있다.

Papers and books in modern Vertebrate Paleontology with various subjects are read and discussed. Discussed topics include Vertebrate Paleontology, Dinosaurology, Microvertebrate Paleontology, Vertebrate Ichnology.

17. 3345.747
자원지질학특수연구(Advanced Study in Resource Geology), 3-2-2

자원지질학은 인간생활에 유용한 광물이나 원소가 자연 중에 이상 농집된 부위의 생성환경과 그 과정의 물리화학적인 조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광상의 성인을 규명하기 위한 원료물질, 운반과정, 농집환경 및 기작, 이후 변화들이 그 관심의 대상이 된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광상의 모델링, 한국 및 세계 각지의 광상 생성시기와 생성 기작, 이들 광상연구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및 유체포유물 방법의 적용, 열수광상의 성인 등의 주제를 가지고 폭넓게 자원의 분포와 농축기작 및 탐사에 관련된 연구에 관하여 소개하고 상호간의 토론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geological processes controlling ore deposition, application of stable and radioactive isotopes, fluid inclusions, and thermodynamics to the study of ore deposits. Course includes seminars on special topics on the geochemistry of the hydrothermal ore deposits, major ore deposits in Korea, and application of stable isotope research in the study of ore deposits.

18. 3345.749
현대지질학(Recent Advances in Geology), 3-2-2

지질학 연구 분야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들을 다루며, 새로운 연구 동향 및 성과, 또는 첨단 연구 기기에 대한 소개를 포함한다. 강의 주제는 학제 간 연구를 비롯해 각 지질학 세부 연구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한다.

Students discuss major issues in modern geology, and are introduced to the new developments in

geological research done with state-of-the-art instruments. Topics of lectures emphasize the interdisciplinary aspect of solid earth system science.

19. 3345.750
환경지질학특강(Topics in Environmental Geology), 3-3-0

우리 생활 주변의 자연환경을 형성하는 지하수나 토양의 환경 변화와 오염물질의 분포, 이동 및 변화에 대해 공부한다. 우리 주변의 지질매체 내에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은 다양한 물리적, 생화학적 과정에 의해 변화되고 이동된다. 이들의 이동과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본 원리에 대하여 공부한다. 더 나아가 오염현상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를 정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고찰해 본다.

The course covers diagnosis and prognosis of soil/groundwater environments, characterization of the fate and transport of contaminants in subsurface environments, and study of remediation measures.

20. 3345.751A
응용지질학특강(Topics in Applied Geology), 3-3-0

이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응용지질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선택된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와 토론을 경험하게 된다. 지반 침하, 지하 채광과 터널링, 사면 불안정화, 해수 침투, 방사성 폐기물의 지층 처분 및 온실가스 지중 저장 등이 그러한 선택된 주제에 포함된다.

This lecture makes students experience for themselves individual studies and discussions about a selected specific topic among the various fields of applied geology. Land subsidence, underground mining and tunneling, slope instabilization, seawater intrusion, geologic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and geologic storage of green house gases are included in such selected specific topics.

21, 3345.752
지구시스템환경관측학특강(Workshop in Earth System Observation Science), 3-3-0

지구시스템환경관측은 광범위하여서 센서는 물론 응용분야도 광범위하다. 이 과목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선택하여 강의와 세미나식으로 연구하고 공부한다. 연구과제의 선택은 학생과 교수가 토의하여 결정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목이다.

This is a graduate course on advanced techniques in Earth observation science with specific applications to be chosen by the students. This course emphasizes the practical training of spatial data processing by each student. Course format is dependent upon size of enrollment.

22, 3345.753A
지구물리특강(Topics in Geophysics), 3-3-0

지구물리의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이론, 자료처리 및 역산법 등을 공부하며, 매 학기 다른 주제에 대하여 실제 배운 이론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Students study basic geophysical theories, data analysis, and inversion techniques, which are necessary to research on various geophysical problems. They also learn how to apply the techniques to different subjects arranged in each semester.

23. 3345.754
탐사지구물리특강 (Topics in Exploration Geophysics), 3-3-0

천부지구 내부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각종 지구물리탐사 방법의 이론과 실례를 교육한다. 중력탐사, 자력탐사, 전기탐사, 전자파탐사, 탄성파탐사등 여러 분야에서 학기별로 한 분야를 선택하여 자료획득 및 분석방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 탐사에 적용하는 측면을 교육한다. 지하자원탐사, 기반조사 외에도 환경지구물리, 지질재해에 관한 탐사지구물리학의 응용에도 중점을 둔다.

Students will review various geophysical methods for exploring the shallow structure of the Earth. Students will also examine theories of gravity, geomagnetism, seismology, geoelectricity and electromagnetism applied to exploration along with methods of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There will be emphasis of applications to environmental problems, geotechnical engineering, and geological hazards in case studies.

24. 3345.755
지구화학특강 (Topics in Geochemistry), 3-3-0

지구화학분야의 최신 주요 연구 동향에 대해 매 학기 부제를 정해 공부한다. 학생들의 발표와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가 병행된다. 특히 다양한 동위원소 시스템을 지구 표면 프로세스, 고기후, 연대측정 등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amine new and significa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geochemistry, focusing on a specific theme each semester. The format is mainly student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ith supplementary lectures. Topics include application of isotope systems to geochronology, paleoclimate, and Earth surface processes.

◎ **해양관련 교과목 (23과목)**

1. 3345.652
해류학 (Ocean Currents) 3-3-0

이 교과목에서는 해양과 대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학적 개념을 다루는 지구유체역학의 주요 주제를 다루며, 지구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유체는 지구자전과 수직 성층의 영향을 받는다. 이 교과목에서 다룰 주제는 포텐셜와도 방정식, 천해역학, 행성파와 지형파, 준지형류 역학과 해양 대순환에 있어 마찰의 영향과 해양의 풍성순환에 관한 이론 등이다.

The content of this course is mainly based on core subjects in geophysical fluid dynamics, whose concerns are fundamental dynamical concepts essential to an understanding of the atmosphere and ocean. Earth's rotation and vertical stratification characterize the fluid which we deal with through this course. The course will cover the potential vorticity equation, shallow water dynamics, planetary and topographic waves, quasi-geostrophic dynamics, effects of friction on a large scale circulation, and simple theoretical frames for ocean's wind-driven circulation.

2. 3345.653
조석이론과 분석 (Tide Theory and Analysis), 3-3-0

조석의 발생, 전파, 소멸에 관련된 조석이론들을 다루고, 순압 및 경압 조석 현상들을 지배하는 (내부)조석파 역학 이론을 학습하며, 또 실제 해양에서 최근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여 수행한 관련 연구 결과들과 그 동향을 파악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examine tide theories on generation, propagation, and dissipation, and the dynamics of (external and internal) waves underlying both barotropic and baroclinic tides. We will also review relevant articles recently published in literatures by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 observational data.

3. 3345.655
퇴적학 (Sedimentology), 3-3-0

퇴적학은 퇴적물이 생성, 운반, 퇴적되어 퇴적암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순수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퇴적물과 퇴적층에 관한 데이터를 기술하고 분석하여 퇴적작용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순차층서학적 이론을 포함한다. 즉 퇴적작용의 지배요인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Sedimentology studies the process of formation, transport and deposition of material, accumulated in continental and marine environments. The study of sedimentary processes and products allows us to interpret the dynamics of depositional environments and consequently controlling factors in a sequence stratigraphic framework.

4. 3345.656
해저퇴적물 지구화학 (Geochemistry of Marine Sediments), 3-3-0

해저퇴적물의 화학적 특성과 분포 및 기원을 다루는 강의이다. 주요 강의내용으로서는 퇴적물 유형과 환경별

지화학 성분의 특징, 퇴적후 속성작용, 퇴적물의 지화학 특성의 해석 등이 포함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chemical properties, distribution and origin of marine sediments. Main topics include geochemical properties of different sediment types and environments, early diagenetic processes of sedimentary deposits, and analyses of geochemistry data.

5. 3345.657
해양오염론 (Marine Pollution), 3-3-0

해양오염은 통상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유해물질, 열 등이 해양환경에 유입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의 변화를 야기 시키는 현상이다. 해양오염의 진지한 연구는 공공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새롭게 알려진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본 강좌에서는 해양오염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학습하고 해양오염으로 야기되는 인류의 건강에 대한 위협도 고찰한다.

Marine pollution is an undesirable change in the marine environments chiefly caused by inordinately high concentrations of hazardous substances and heat. An in-depth study of marine pollution should become a public concern and attention should be duly paid to newly perceived threats to marine ecosystems.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problems concerning marine pollution and its hazardous influence on human health.

6. 3345.658A
해양저서생태학 (Marine Benthic Ecology), 3-3-0

해양의 저서환경 특성과 이에 따른 해양저서생물의 반응 및 적응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석환경에 따라 상·중·하부 조간대, 저질특성에 따라 니질·사질·암반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각 저서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종조성, 분포특성, 생물반응 및 기능의 상호관계를 탐구한다. 아울러 해양저서생물의 군집 구조를 기술하는 제반 수리·통계적 방법론을 습득한다.

Advanced understanding of marine benthic environments followed by analysis of benthic community responses on environmental changes and stresses, topics include habitat characteristics on the intertidal zones, focusing on the association of benthic community structure and function to corresponding habitats. General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tools for the interpretation of marine benthic responses to environments will be highlighted.

7. 3345.659
해양미생물생태학 (Marine Microbial Ecology), 3-3-0

해양의 수층과 퇴적물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의 분포, 생산 및 활동도, 군집구조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 양상과 이를 조절하는 요인들에 대해 강의한다.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할 경우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 강의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discuss bacteria, viruses and protozoa in the pelagic and benthic marine environments: their distribution, production and activities, community structure, variability and controlling factors. Students will actively investigate and discuss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marine microorganisms (e.g.bacteria, heterotrophic nanoflagellates and virsues) in marine ecosystems. The major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encourage students to develop their own hypotheses, test them and discuss the results in scientific reports.

8. 3345.660
추적자화학 (Tracer Chemistry), 3-3-0

오늘날의 화학 해양학은 추적자를 응용한 해양현상의 이해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온도,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 등의 기본적인 해양인자와 함께 다양한 안정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응용하여 해양현상을 이해하는 연구를 소개하고 이의 현대적 응용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Applying tracers to understand the ocean phenomena is prevalent in chemical oceanography today.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researches which analyze the ocean phenomena by applying the basic component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and the nutrient as well as the various stable and unstable radioisotope. We will also discuss the modern application methods.

9. 3345.661
해양천연물화학특론 (Advanced Marine Natural Products Chemistry), 3-3-0

이 교과목에서는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천연물화학의 전반을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루어진다. 첫째, 다양한 생리활성도 측정법 및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천연물의 유형에 따른 생합성을 다루게 된다. 이를 토대로 각 해양생물 문에 따라 다양한 생리활성물질 전반에 대해 다루게 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marine natural products chemistry and biology. Topic that we will examine include: sophisticated bioassays, including immuno-modulating assays and receptor-based screening; the molecular aspects of biosynthetic pathways of secondary metabolites; the stereochemistry of marine natural products chemistry.

10. 3345.736
해양지구동역학 (Marine Geodynamics), 3-3-0

해양을 포함해 지구표면에 나타나는 많은 지질구조들은 결국 지질학적인 힘에 대한 변형의 결과이다. 지구구성 물질의 강도는 힘이 가해진 시간, 온도, 압력 등에 대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단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구물질의 강도와 그 강도를 결정하는 이론들을 더욱 잘 이해할 경우 지질학적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정량화도 가능하다. 이 과목에서는 지각과 맨틀의 역학적 물질 특성(유동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관련된 이론들을 탐구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Earth crust and mantle to tectonic forc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ir material strength. Recent advances (both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have allowed us to place a better constraint on material strength, which is known to vary in nonlinear fashion as function of strain rate, temperature, pressure etc. In this course, we review these achievements, including the theories, and their application to geological situations.

11. 3345.761
천해해양물리학 (Physical Oceanography of the Coastal processes), 3-3-0

천해역의 제 현상을 물리해양학적인 관점에서 접근, 분석하는 기법을 습득하고, 인간 활동과 맞물려 대두되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개념을 환경이라는 포괄적 개념 하에서 이해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are required to learn the methods of approaching and analyzing the whole phenomena of the shallow sea area in the point of the physical oceanography. They will understand the opposing concept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which is directly connected with various human activities in the inclusiv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12. 3345.762
해양순환특강 (Topics in Theory of Ocean Circulation), 3-3-0

지구유체역학의 이론을 소개하고, 유체역학 이론을 응용하여 해양과 대기의 대규모 순환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This lecture is to provide to graduate students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eophysical fluid dynamics. The focus of this lecture is the application of fluid mechanics to the dynamics of large-scale flows in the oceans and atmosphere.

13. 3345.763
해양파동특강 (Topcis in Ocean Waves), 3-3-0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단기 파동 즉 풍파, 지진해파, 켈빈파, 로스비파 등의 발생, 전파, 소멸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해양에서 얻어지는 파동자료의 분석 및 해석법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do a theoretical study on the formation, propagation, and breaking of various long and short waves such as wind waves, tsunami, Kelvin wave, and Rossby wave. We will also practice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 data of ocean waves.

14. 3345.766
분지해석 (Basin Analysis), 3-3-0

분지해석은 퇴적분지의 거시적 지배요인을 규명하는 학문분야로서, 현생 및 고기의 퇴적분지 형성에 관한 모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현생 퇴적분지의 퇴적작용, 예를 들면 동해의 울릉분지, 서해의 서해분지 또한 고기의 태백산분지, 경상분지 등 발생에서 변형에 이르기까지의 지각의 활동, 지구조적 요인, 그리고 퇴적속성작용 등 지각의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분야이다.

Basin analysis is a practical guide for the study of geologic evolution of ancient and modern sedimentary basins, using facies and depositional systems analysis, seismic stratigraphy and a broad range of basin mapping techniques. It includes the analysis of major sedimentary basin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djacent seas.

15. 3345.767
해양지구화학특강 (Topics in Marine Geochemistry), 3-3-0

해양지구화학 분야의 국내의 최신 연구 동향과 주요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강의로서, 매 학기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2군 교과목이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recent research trends and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marine geochemistry. Topics vary from semester to semester.

16. 3345.769
해양생태학특강 (Topics in Marine Ecology), 3-3-0

본 강의는 해양환경에서의 일차생산자와 소비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이해시키고 해양군집의 구조와 동태를 학습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양생태의 기능에 대하여 연구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do a detailed study about primary producers and consumers in marine environments.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marine communities and the functional aspects of marine ecosystems.

17. 3345.770
퇴적물평가특강 (Topics in Sediment Assessment), 3-3-0

오염물질의 최종 종착지인 저서환경(해양퇴적물)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제반 방법론 및 배경지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서환경 건강성 평가를 위한 분석대상, 분석항목, 분석방법, 평가기준 등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접근법을 선진국에서의 사례연구들을 통해 학습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퇴적물 평가에의 적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토의한다.

Advanced understanding of backgrounds and methodologies on sediment assessment towards ecological stability and ecosystem health, topics include exposure, effect, and ecological assessment. Through the case studies, we will clarif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methods of approach to the objects, items, methods, and criteria for the evaluation. We will finally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such practices into our system.

18. 3345.771
지구환경과 해양미생물특강 (Topics in Earth Environments and Marine Microbes), 3-3-0

지구의 생지화학적 순환에서 해양미생물들의 역할, 지구환경 조절 기능의 해양미생물, 여러 극한환경에서의 생존 및 생화학적 적응, 해양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의 개선 및 정화, 해양생물의 질병 및 역학, 그리고 해양생물공학을 다룬다.

Major topics dealt with are roles of marine microbes in biogeochemical cycles on earth and in controlling earth environments, survival and biochemical adaptation of the microbes in various extreme environments on Earth. Further, environmental remediation using the microbes, diseases and epidemics of marine lifes and marine biotechnology are discussed.

19. 3345.772
생물해양학특강 (Topics in Biological Oceanography), 3-3-0

생물해양학분야의 최근 연구과제에 대하여 학기에 따라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의 최첨단 연구의 문제들에 접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강의가 구성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interaction of biological and abiotic processes that govern the ocean. We will have discussions on ecology, applying foraging theory and analytic formulation of encounter roles of predator and prey as organizing principles. Discussion topics include the differences between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s which arise primarily from the ways in which deposit feeders process muds, suspension feeders extract particles, bacteria absorb solutes, and marine plants gather nutrients and light.

20. 3345.773
환경화학특론 및 실험 (Advanced Environmental Chemistry and Lab.), 3-1-4

지구환경의 제 문제를 강의를 통하여 소개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실험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소개하고 운용기법을 체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학기에 따라 질량분석기, AMS, 대기환경관측시스템 등 현대적 실험기법을 선택하여 실용적인 관측법을 습득하고 연구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In this course we will examine the various problems of the earth environment and conduct experiments to investigate the experimental methods to make practical research on these problems. Students will acquire modern practical observing methods such as mass analytic tools, AMS, and air environmental observing system and develop the skills to apply these methods in their own research.

21. 3345.774A
해양신약특강 (Topics on Marine Drugs), 3-3-0

본 교과목에서는 해양천연물신약개발에 필요한 신규 약물표적 및 질병과 관련한 신호전달계, 이를 기반한 각종 생리활성검색법, 질환동물모델, 선도물질 최적화 과정, 약물 동력학 및 기초 독성검증, 전임상 및 임상시험 등 해양천연물신약 개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대상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가 학기별로 다루어진다.

This course will cover a comprehensive topic on marine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Students will also conduct their own research on a topic of their choice in marine drugs such as novel drug targets, underlying physiology of human diseases, animal disease models, lead optimization, ADME-PK, preclinical trials, clinical trials and design and etc. Their research will be presented in the class. The time limit for the presentation will vary according to the size of classes. Presentations must be given in English. After each seminar, students will have a discussion on the ways to improve their presentations.

22. 3345.775
화학해양학특강 (Topics in Chemical Oceanography), 3-3-0

이 강좌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화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양 및 이를 통한 지구환경시스템에 대한 물질순환 기작, 지구환경의 변화 과정, 및 해양천연물의 이용 등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여 각 학기별로 주제를 정하여 심화학습하게 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element circulation and changes in the earth environment, and the utilization of marine natural products. Topics for intensive discussion will be assigned each term.

23. 3345.776
해양학 세미나 (Seminar in Oceanography), 3-3-0

학생들이 해당 학기 중 선별된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게 하며, 또한 강의시간 중 이를 발표하고 서로 토의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 분야에 접하게 함과 동시에 연구를 발표하는 능력을 아울러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과목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do research on selected topics and discuss them in class. This course will acquaint students with new research areas and help them develop skills to make presentations on their research.

◎ **대기관련 교과목 (21과목)**

1. 3345.551
종관기상학 (Synoptic Meteorology), 3-3-0

중위도 지방 저기압의 형성, 발달 및 소멸 과정을 강의한다. 전선 형성의 원리와 상층 제트 스트림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저기압과 강수 형성 기구의 역학을 알아본다.

In this course we try to understand the genesis, development, and dissipation of the mid-latitude cyclones. We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fronto-genesis and the upper level jet stream. We will talk about the cyclones and accompanying precipitation processes.

2. 3345.552
대규모대기역학 (Large Scale Dynamics of Atmosphere), 3-3-0

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규모의 현상 중 주로 대규모 현상들을 역학적으로 설명한다. 종관규모 운동의 특징을 토의하고 대기의 진동, 중규모 순환 및 대기대순환을 다룬다. 특히 대기불안정 문제, 이와 관련된 종관계의 발달기구 및 대규모 기상현상들에 대한 역학적 접근 등이 주요 과제이다.

The large-scale motions among meteorological phenomena of various scale are mainly studied by using dynamical analysis. The features of synoptic-scale motion, atmospheric oscillations, mesoscale circulation and general circulation are discussed. Especially, the atmospheric instability,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unstable synoptic system and dynamic approach for large-scale meteorological phenomena are main topics.

3. 3345.553
미기상학 (Micrometeorology), 3-3-0

이 과목은 대기과학 전공자를 위한 대학원 교과목으로써 인간이 거주하는 대기 최하층인 surface layer, planetary boundary layer 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좌우하는 물리적, 역학적 현상과 더불어 화학물질들의 거동을 설명하는 화학적 현상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혼합고의 연직구조, 난류, 지표의 에너지 균형 등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일기예보 및 기후연구에 사용되는 수치모수화 및 여러 스킴들에 대해 공부하고 간단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다.

This class is an upper division elective course for graduate students with atmospheric sciences majors. It is an introductory course on the earth's atmospheric boundary layer (ABL), roughly the lowest kilometer of the atmosphere adjacent to the surface. Topics include mean vertical structure of ABL, turbulence and vertical turbulent fluxes in the ABL, surface energy balance, mathematical parameterization of ABL used in weather and climate models, mesoscale circulations driven by ABL processes, and applications to such topics as air pollution dispersion and wind speed assessment for wind energy.

4. M1411.000800
대기수치모델링 및 실습1 (Numerical Modeling of the Atmosphere and the Practice 1), 3-2-2

대기과학연구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대기 전지구 모델 및 일기예보 모델의 근간을 구성하는 대기역학 코어 및 자료동화 시스템에 이용되는 다양한 수치적인 방법들을 공부한다. 실습시간에는 실제 현업 모델 혹은 단순화된 현업 모델을 이용하여, 대기역학 코어 및 자료동화 시스템이 실제 기상현상의 수치모의에 있어 어떻게 이용되는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The goal is to obtain a fundemental understanding of the basic numerical techniques used in the atmospheric dynamic core and the data assimilation system that form the foundation of the 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model (GCM) and weather prediction model (NWP). During the practice, the students will have a chance to practice the class materials with the operational GCM/NWP or simplified models.

5. M1411.000200
대기난류 및 경계층 (Atmospheric Turbulence and Boundary Layer), 3-3-0

난류의 근본적 특성을 해석하고, 대기의 난류 현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난류의 원천, 특성 및 스케일, K-이론 및 적용한계, 난류에너지 수지, 경계층에서의 난류 특성, 혼합층의 형성 및 발달 과정, 상사이론, 난류에너지의 스펙트럼 분포 및 에너지 캐스케이드(cascade) 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대기의 난류 현상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physics of turbulence, which includes the origin of turbulence, methods of describing turbulence, similarity theories, spectral analysis and energy cascade.

6. 3345.559
대기대순환 (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3-3-0

대규모 대기순환 형태와 이 대기순환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운동량 보존 법칙을 공부한다. 해들리, 패럴 순환의 유지에 필수적인 복사-대류 에너지와 에디의 역할을 이해하고 에너지의 생성, 변환, 소멸 과정을 설명한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some basic requirements of large-scale atmospheric circulations, energetic and angular momentum conservation, In particular, effects of radiation-convection energy and eddies on the maintain of Hadley and Ferrel circulations and processes of energy generation, conversion, and disspation are explained.

7. 3345.561
열대기상학 (Tropical Meteorology), 3-3-0

열대지방에서 나타나는 일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열대와 중위도 사이의 일기현상의 상호작용을 규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지구적 규모와 종관규모의 일기계, 열대의 대기대순환과 요란, 대류적운의 역할, 열대지방의 대기파동, 열대성 저기압과 계절풍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tropical weather and investigating tropics-extratropics interaction. The major topics of this course are global and synoptic weather system, general circulation and disturbances in tropics. The role of convective system,

atmospheric wave dynamics, tropical cyclone and monsoon related problems will be studied also.

8. 3345.564
구름물리학 (Cloud Physics), 3-3-0

구름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물리 과정과 기본적인 구름 역학을 이해한다. 레일리-베나르 대류, 구름 미세물리와 강수 과정, 적운 역학, 적운 모수화, 악기상과 관련된 구름 물리 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cloud microphysical processes and basic cloud dynamics. Contents include Rayleigh-Benard convection, cloud microphysics and precipitation processes, cumulus dynamics, cumulus parameterizations, and cloud physics associated with severe weather.

9. 3345.565
대기과학 특강 1 (Topics in Atmospheric Sciences 1), 3-3-0

기본적인 교육과정에서 습득된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학생들의 논문 연구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 습득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연구 능력 향상을 기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acquirement of research methodology to study specific topics. Thus, this course provides various methodology on the current issue of active research fields to increase research power of students.

10. 3345.566
기상통계학 (Statistical Methods in Meteorology), 3-3-0

통계적인 자료분석 기법들-EOF(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CSEOF(cyclostationary EOF), CEOF(complex EOF), EEOF(extended EOF), POP(principal orthogonal patterns)분석, 시계열분석 및 웨이브블렛분석, 수학적, 통계적 이론을 배운다. 이론에 근거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구과학 연구에 쓰이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강의실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실질적인 강의를 구현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능력을 향상한다.

This class teaches the mathematical and statiscal concepts of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tool - EOF(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CSEOF(cyclostationary EOF), CEOF(complex EOF), EEOF(extended EOF), POP(principal orthogonal patterns) analysis, time series analysis, and wavelet analysis. Computer programs based on the theory of statistical anaysis tools will be used to analyze geophysical data and interpret the results so that students possess necessary skills for researches in geosciences. In-class data analysis and physical and statistical inferences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first-hand experience on and skills for geophysical researches.

11. 3345.570
지리정보기상학 (GIS Meterology), 3-2-2

수치예보 모델의 발달로 시공간상 정밀 자료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날씨 예보와 기상 관측 자료에 대한

자료의 정밀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료의 신뢰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정보 산업사회의 진전, 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우주 과학 기술에 대한 염원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시공간적인 정밀도를 가지는 상세 자료를 요구한다. 기상 자료의 통합적인 처리와 분배, 그리고 활용법을 다루고자 날씨에 대한 개념, 기상 자료의 특성, 지리정보 시스템의 이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state-of-the art numerical weather forecast models produce the high resolution weather information data in space and time. The level of the data resolution increases as time flows. The resolution is different aspect of weather data compared with its credibility. The more high resolution weather data are requir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standard living of our lives, the evolution of our society toward information and high-technology, and high expectation about the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educate the ways of dealing with weather data, and its application and distribution, I will deal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weather data, the adoption of GIS basics and its techniques for meteorology.

12. 3345.721
대기-해양역학 (Atmosphere-Ocean Dynamics), 3-3-0

대기와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역학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한다. 질량장과 속도장 사이의 상호 조절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파동의 특성을 토의하고, 이에 대한 지구 자전의 효과를 이해한다. 자유운동과 강제운동의 차이를 분석하고, 중위도지방의 운동과 열대지방의 운동을 비교함으로써 전지구적인 운동에서 지역적 상호관련성을 검토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atmospheric and oceanic phenomena by the dynamical approach. We will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waves, mainly focusing on the mutual adjustment between mass and wind fields. We will then examine their effect on the rotation of the earth. We will als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free motion and forced motion, and make comparisons between the motions in the mid latitudes and the tropics.

13. 3345.723
대기오염 및 분산 (Air Pollution and Dispersion), 3-3-0

대기난류 및 대기 경계층(혹은 미기상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실제대기에서 각종오염 물질이 어떻게 확산되고 수송되어 가는 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 및 그 방법론에 대하여 강의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study the models and methodologies to infer the dispersion and transport of various pollutants in the atmosphere based on our understanding of the atmospheric turbulence and atmospheric boundary layer micrometeorology.

14. M1411.000900
대기수치모델링 및 실습2 (Numerical Modeling of the Atmosphere and the Practice 2), 3-2-2

대기과학연구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대기 전지구 모델 및 일기예보 모델의 근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리모수화(대기경계층, 적운, 구름거시물리, 구름미세물리, 에어로졸 등)에 이용되는 다양한 수치적인 방법들을 공

부한다. 실습시간에는 실제 현업 모델 혹은 단순화된 현업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리모수화 방법들이 실제 기상현상의 수치모의에 있어 어떻게 이용되는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The goal is to obtain a fundemental understanding of the basic numerical techniques used in various physics parameterizations (Planetary Boundary Layer, Convection, Cloud Macrophysics, Cloud Microphysics, and Aerosol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the 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model (GCM) and weather prediction model (NWP). During the practice, the students will have a chance to practice the class materials with the operational GCM/NWP or simplified models.

15. 3345.725
중규모 기상학 (Mesoscale Meteorology), 3-3-0

중규모 대기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역학을 이해한다. 성층화된 흐름에서의 적분 정리, 중규모 파동 역학, 중규모 대류, 지형이 유도하는 흐름, 열적으로 유도되는 흐름, 대류가 유도하는 내부 중력파 항력 모수화 등을 공부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 dynamics of mesoscale atmospheric phenomena. The topics that we will discuss include the following: the integral theorems of stratified flows; mesoscale wave dynamics; mesoscale convection; topographically forced flows; thermally forced flows; and convectively forced internal gravity wave drag parameterization.

16. 3345.726
대기파동 (Atmospheric Waves), 3-3-0

Rossby wave를 중심으로 대기에 존재하는 파동들의 특성과 관련된 역학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주요내용은 대기운동보존법칙, 파동방정식과 분산방정식, Rossby wave의 3차원 전파역학, wave-mean flow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dynamic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rge-scale atmospheric waves-particularly the Rossby waves. Main topics of this course include conservation theorem, Rossby waves, wave-mean flow interaction, instability, meridional dispersion, critical and turning latitudes, multiple equilibrium, EP flux, and three-dimensional wave propagation.

17. 3345.729A
중층대기역학 (Middle Atmosphere Dynamics), 3-3-0

이 과목에서는 주로 성층권과 중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층대기의 역학현상과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학을 배운다. 특히 마찰이 적은 대규모 대기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서평균계의 수식과 선형파동 이론이 강조된다. 중층대기의 역학현상으로는 성층권 돌연승온, 열대지방의 준2년진동과 반년진동, 열대의 파동현상, 미량기체의 수송, 성층권과 대류권의 연관성 등의 있다.

In this course we will study the dynamic phenomena in the middle atmosphere and the dynamics

which will help ou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a. We will focus on the zonally-averaged formulations and linear wave theory to represent the inviscid dynamics. The dynamic phenomena of the middle atmosphere include sudden warming of the stratosphere, quasi-biennial and semiannual oscillations in the tropical areas, tropical wave phenomenon, transport of minor gases, and interations of the stratosphere and troposphere.

18. 3345.733
대기과학 특강 2 (Topics in Atmospheric Sciences 2), 3-3-0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주제의 최신의 연구 방법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접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에 적용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연구 능력을 배양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the ability to conduct research. Students will read various papers on the current issues in atmospheric science and are encouraged to apply the new methodologies to their own research.

19. 3345.734
대기화학 (Atmospheric Chemistry), 3-3-0

대기의 미량기체는 비록 그 농도가 작아도 산성비, 광학 스모그, 오존층 감소 등의 현상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기상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대류권내 미량 화학성분들의 변화는 지구환경에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정에서는 대기를 화학환경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을 기본으로 하며 특히 최근 대기환경 영역에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에어로졸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Even the smallest concentration of minor gases in the atmosphere can be a direct/indirect cause of atmospheric phenomena such as acid rain, photochemical smog, and depletion of ozone layer and can bring about significant climactic changes. In this course we will study the atmosphere as a chemical environment and focus on the field of aerosol research.

20. 3345.735
대기복사학 (Atmospheric Radiation), 3-3-0

대기에서 이루어지는 복사 전달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기 모형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태양복사의 흡수와 산란, 지구복사의 복사전달, 원격탐사의 원리, 복사 기후학 등이다.

This course i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radiative transfer to modern problems in the atmospheric sciences. Portions of this course provide the fundamental theoretical and mathematical background to problems encountered in radiation physics as applied to planetary atmosphere. Students will also study the techniques of radiative transfer, particularly parameterization techniques, that have wide applications in remote sensing, climate modeling, and diagnostic studies.

21. M1411.000300
대기원격탐사학 (Atmospheric remote sensing), 3-3-0

인공위성의 발달과 더불어 대기 및 지상의 기상 및 기후요소의 관측은 일기예보와 기후분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대기과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대기복사 이론이 대기원격탐사에 어떻게 적용되어 일기 및 기후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하며, 얻어진 자료가 물 및 에너지 수지, 대기물리과정의 이해, 자료동화, 기후분석 등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강의한다.

With recent advent of satellite technology, satellite measurements of atmospheric and surface parameters became indispensible in weather and climate analysis and studies, and thus satellite remote sensing can be considered to be important area in atmospheric sciences. In this course, we focus on understanding the basic interactions between radiation and the atmosphere, and how weather and climate data can be obtained from satellite remote sensing. Also focused on are satellite data applications including water and energy budgets, atmospheric physical processes, data assimilation, and climate analysis.

나. 주요 이수규정

1) 교과학점 통산

가) 대학(원) 과정의 취득학점 인정

(1)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은 통합 운영되는 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 중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위해 과정 수료 후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2)석사과정 취득학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인정은 **그 성적이 B0이상인 교과목 학점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는 석사과정 취득학점은 1977년 이후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학점에 한한다.

입학 전 과정	현재과정	인정학점	비고
석사과정	석사과정	12학점 이내	
	석박통합과정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박사과정	18학점 이내	
	석박통합과정	18학점 이내	
석박통합과정	석사과정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18학점 이내	
	석박통합과정	18학점 이내	

(3)현재의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입학 이전에 본교 동일전공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으로 입학 이전에 본교 동일전공 석박통합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함.

(4) 신청기간: 매 학년도 3월 초, 9월 초

(5) 신청방법: 서울대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학사행정→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

나) 입학 전 타교 석·박사과정 취득 학점 인정(*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1) 본교 석·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타교 동일과정 동일전공의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성적이 B0 이상이며 10년 이내에 이수한 동일·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

학점, 석박통합과정 15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전 타교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본교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학부장으로부터 본교의 전공 및 교과목과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학부 관련 위원회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과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학생 소속 학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본교의 동일·유사 교과목 주관 학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학점 인정을 승인받은 교과목은 본교의 동일·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입학 전 학점을 취득한 대학명을 표기하며, 성적은 평점 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타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본교에서 명칭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과정간의 학점 취득 인정

(1)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대학원과정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수료 및 졸업이수 규정

가) 졸업(수료) 이수학점 기준

과정	학위취득 최저 필요학점	논문연구 취득한도	수업연한	비고
석사	24학점	6학점	2년	전체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평점 3.0이상이어야 학위취득 가능
박사	36학점	12학점	2년	
석박통합과정	60학점	18학점	4년 (1년 이내 단축가능)	

(1) 대학원 논문연구

논문연구의 경우 인정가능 학점 한도 내에서 반복수강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다.

단, 석사·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음.

(2) 타학부 교과목의 이수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부장이 인정하는 타학부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타 대학 이수학점의 인정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지구환경과학세미나(3345.777) 이수

(가) 07~13학번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모두 2개 학기 수강
- 석사과정에서 2개학기 수강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추가 수강 불가(수료학점 인정불가)

(나) 14학번 이후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수강
-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은 2개 학기 수강
- 석사과정에서 1개 학기 수강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박사과정에서 1개 학기만 수강

(5) 연구윤리 교과목(990.501A) 이수

(가) 17~18학번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모두 필수로 수강하되,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19학번 이후

- 필수지정 해지,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17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생은 17~18학년도에 연구윤리를 수강했을 시에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수료학점으로 인정함.

※ 19학년도부터는 연구윤리를 수강해도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6) 2군 교과목의 부제명이 다른 경우, 각각의 학점으로 인정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중복이수(수료학점 인정) 불가함

5. 대학원 과정별 일정표

가. 석사과정

1년차	
학기1	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교수로 학사위원회 구성 교과목 수강
학기2	교과목 수강
2년차	
학기1	논문제출 자격 시험 교과목 수강
학기2	논문심사 (구술고사 포함 1회 실시)

나. 박사과정

1년차	
학기1	지도 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교수로 학사위원회 구성 교과목 수강
학기2	교과목 수강
2년차	
학기1	논문제출 자격 시험 (Qualifying Exam), 심사위원 5명으로 논문심사위원 구성 교과목 수강
학기2	교과목 수강
3년차 이상	
	필요학점 (36학점) 수강 완료시 연구학생 등록 학기당 1회 논문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연구 진행 점검 (권장) 논문 시험 (최종 학기에 예비심사, 종심 포함 3회 실시)

다. 석박사 통합과정

1년차	
학기1	지도 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교수로 학사위원회 구성
학기2	교과목 수강
2년차	
학기1	교과목 수강
학기2	24학점 이수 시 박사과정생 자격 부여
3년차 이상	
학기1	논문제출 자격시험 (Qualifying Exam), 심사위원 5명으로 논문심사위원 구성
학기2	학기당 1회 논문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연구 진행 점검 (권장) 논문 시험 (최종 학기에 예비심사, 종심 포함 3회 실시)

6. 논문 제출 자격시험

가. 시험과목

구분 / 시험명	과정명	시험과목		배점 및 합격기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 험	석 사	- **영어**<TEPS정기시험 또는 TOEFL(CBT,IBT) 성적으로 대체> - **제2외국어 : 없음** - **한국어 : 외국인학생**	전공과목	-TEPS: **2018학번 이후 601점 이상** **(개정 TEPS 327점 이상)** **2008학번 이후 551점 이상** **(개정 TEPS 298점 이상)** 2001학번 이후 550점 이상 2000학번 이전 501점 이상 -TOEFL(CBT/IBT) : **2018학번 이후 IBT 86점 이상** 2008학번 이후 213/79점 이상 2001학번 이후 213/79점 이상 2000학번 이전 197/71점 이상 -**전공시험** **석사 : 100점만점에 60점이상 합격** **박사 : 100점만점에 70점이상 합격**
	박 사	- **영어**<TEPS정기시험 또는 TOEFL(CBT,IBT) 성적으로 대체> - **제2외국어 : 없음** - **한국어 : 외국인학생**	전공과목	

나.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영어, 한국어시험		-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외국인 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7개 국가(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의 국적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한국어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종합 시험	석사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석박통합	-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 논자시 합격 인정 여부 (대기과학전공 해당)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은 아래 1), 2) 항목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논자시에 합격 한 것으로 인정한다. 본 개정안은 2013년 8월부터 약 6개월의 공고과정을 거친 후 2014년 1학기 논자시 부터 적용된다.

1) 학생이 논자시에 응할 시 기 수강한 교과목 중 학사 커미티에서 지정한 10개의 교과목에 한하여 해당 과목을 강의한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로 구성된 논자시를 치른 후 시험점수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정한 합격 기준 이상인 경우 논자시 합격으로 인정한다.

2) 위의 10개의 교과목 중 8 개 이상의 과목에서 A-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논자시를 합격 한 것으로 인정 한다. (성적표 제출 필요)

◆ 위 1), 2)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총 3명의 전공교수로 구성된 학사위원회 (education committee)를 구성한다.
학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제외한 두 교수를 전공주임이 균형을 맞추어 선정하고 그 중 한 사람을 학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한다.

◆ 위원장은 학생이 박사과정이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시작한 학기에 조속히 학사위원회를 열어 수강 교과목을 10과목 이상 결정한다. 단지 특강은 수강교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현재 수료 했거나 이미 학위과정을 상당 부분 마친 학생의 경우 학사위원회 구성은 힘들다고 판단되며 대신 박사학위위원회(thesis committee)에서 10개의 교과목 선정을 수행한다.

◆ 학사위원회는 학생의 기초지식 배양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매학기 학생면담을 통해 학생이 수강할 교과목에 대한 제안 및 지도를 수행한다.

◆ 학생은 수강신청 전 반드시 학사위원회의 사인을 받은 수강신청 초안지를 전공사무실에 제출 후 이에 근거하여 수강 신청을 한다.

◆ 학생이 전과나 전학을 한 경우에 전 학교나 과에서 수강한 과목의 인정 범위는 학사위원회가 의논하여 잠정결정하며 전공주임에게 통보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전공주임은 의논의 필요한 사안의 경우 이 문제를 전공교수회의에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논문 제출 및 심사

가. 논문 제출자격

1)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외국어시험포함)

2)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대학원 과정 수료자는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나. 논문심사 신청

1)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온라인 신청)

- mysnu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졸업 → 논문/실적심사 신청/취소

가) 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지구환경과학부 졸업요건확인 신청서
-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지구환경과학부 졸업요건확인신청서

나) 제출장소 : 지구환경과학부 행정실(25-1동 311호)

2) 논문심사료 납부

- 석사 : 100,000원
- 박사 : 300,000원

*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mysnu 로그인 ⇒ 학사정보 ⇒ 졸업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선택 후 출력
* 환불 가능시기: 심사위원 위촉 전까지(이후 환불 불가)

3)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논문 예비심사 시, 각 심사위원에게 개별 전달

다.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1) 석사과정: 심사위원 3명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명예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2) 박사과정: 심사위원 5명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아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타교 교원 : 조교수 이상
나) 연구기관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 (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명예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외부 심사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3인까지 가능)

라. 논문심사 절차

1) 석사: 졸업 학기에 종심 및 구술고사 포함 1회 이상 실시

가) 각 심사위원이 주관하여 실시 (대기과학전공 제외)

나) 논문성적 평가

- A : 심사위원 전원 찬성
- B : 심사위원 2/3 찬성
- C : 심사위원 1/3이하 찬성

다) 합격기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논문성적: B이상), 구술고사 60점 이상

라) 결과제출: 석사학위논문심사요지 제출

-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되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 소속 학부(과) 행정실에 제출·보관함. (심사위원 전원의 통일된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의견도 심사요지서에 포함시켜 작성가능)

2) 박사: 졸업 학기에 예비심사, 종심포함 3회 이상 실시

가) 각 심사위원이 주관하여 실시

나) **합격기준:** 종심시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 구술고사 평균 70점 이상
(단,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다) 결과제출: 박사학위논문예비심사결과보고, 구술고사 성적표 5부, 투표용지 5부, 박사학위논문심사요지, 박사학위논문심사결과표 제출

라) 논문 심사기간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 (직전학기 연장 승인자는 재연장 불가)

3) 논문심사 시기 (대기과학전공만 해당)

가) 석사과정: 졸업 예정 학기 최소 1개 학기 이전에 제안발표 실시, 졸업 학기에 논문 최종 발표 실시

- 매학기 말(6월 초, 12월 초)에 제안발표 및 최종발표를 동시에 실시

나) 박사과정: 졸업예정 학기 최소 1년 전에 제안발표, 논문 최종발표일 최소 3개월 이전에 중간발표 실시

마.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1) 학위논문 On-Line 제출 : 심사 종료 후 ~ 책자논문 제출 전

2)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 석사 : 은박하드커버 3부
- 박사 : 금박하드커버 3부

※ 1부는 반드시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인준지” 및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 첨부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 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의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 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각 대학(장)의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

바. 논문제출 기한 및 연장

1) **석사과정**: (수료 후 자동) 4년
박사과정: (수료 후 자동) 6년

※ 수료 후 입대를 한 경우 군복무 전 기간, 출산을 한 경우는 출산 1회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2) 1)의 기간 내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학생들은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이 되는 시점 직전에 논문제출**기한**연장 신청을 하여 추가 2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음.
- **석사과정**: (수료 후 자동) 4년+(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 2년 → 총 6년
- **박사과정**: (수료 후 자동) 6년+(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 2년 → 총 8년

(예시)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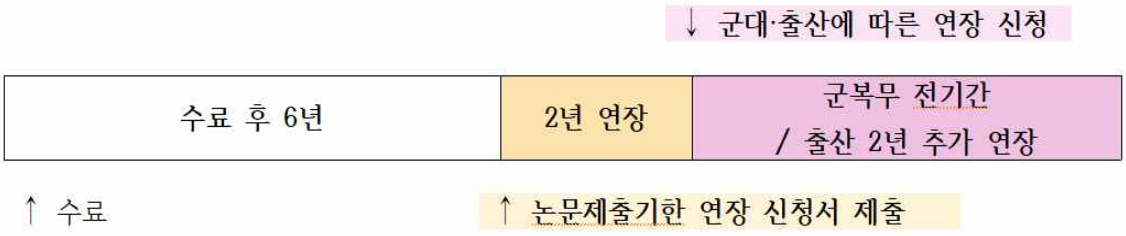

※ 논문제출자격신청서 제출 시기를 놓쳐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게 되어도 신청 시점이 아니라 기본 논문제출기한에 바로 이어서 추가 연장이 인정된다.

(예시)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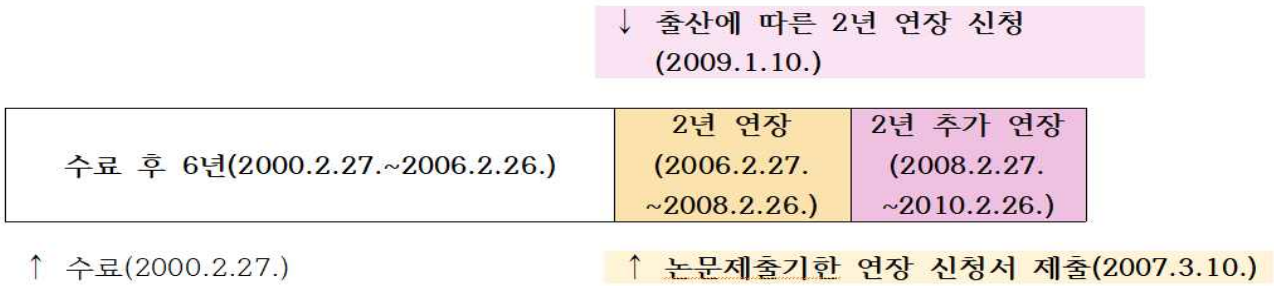

3) 2)의 기간이 경과해도 논문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 **초과자연구생등록**을 하여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
- **석사과정**: (수료 후 자동) 4년 →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 2년 → (초과자연구생등록) 3년
- **박사과정**: (수료 후 자동) 6년 →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2년 → (초과자연구생등록) 3년

※ 초과자 연구생 등록은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연장 기회**로 석사 1개 학기 이상 등록 후 6학점을 이수, 박사 2개 학기 이상 등록 후 9학점을 이수하여야 논문심사 자격이 주어짐.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등록금 납입이 필요함.

(예시)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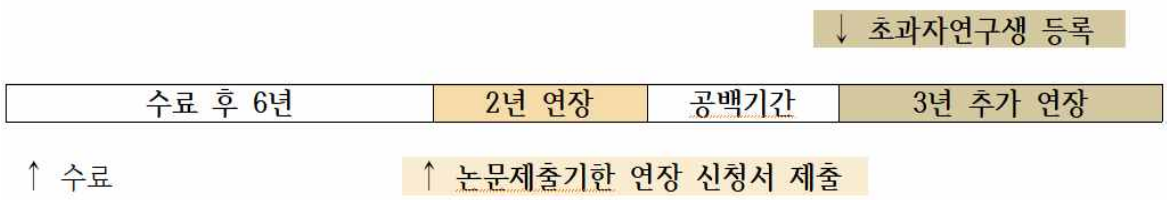

4) 논문심사기간연장 (박사만 가능)

- 박사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기에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때 논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1개 학기 심사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연장받은 학기에도 논문심사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논문심사를 철회하고 이후에 다시 논문심사를 신청해야 함.
- 박사 수료 후 8년이 되는 마지막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다 논문심사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한 학기에 초과자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아도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예시) 박사

5) 보존용 논문 제출기한 연장

- 종심 후 **보존용 논문 미제출 사유서** 제출(단, 그 사유가 논문의 수정·보완일 경우는 불가)
- 종심 시 합격한 논문의 제목과 내용 그대로 보존용 논문 제출을 하여야 하며, 상당한 부분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함.
- 보존용 논문 제출기한 연장 후 다음 학기에도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논문심사를 진행해야 함.

8. 대학원 장학

가.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 매학기 말(5~6월, 11~12월)

2) 신청방법 : 서울대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 장학 미신청자는 장학선정대상에서 제외

나. 장학금 종류

1) 교내·외 장학금

장학금명	최소자격기준	장학금액	비고
강의연구지원장학	직전학기 성적 3.3 이상, 지도교수 추천자	석사재학: 등록금+월20만*6개월 박사재학: 등록금+월30만*6개월 석사수료: 월50만*6개월 박사수료: 월90만*6개월	교수 1인당 학생 1명 -연구년, 파견제외 제출서류: 추천서, 신청서, 소득금액증빙서류
단과대학 맞춤형	직전학기 성적 3.3이상	수업료10~90%, 또는 등록금 전액	수업료의 10%단위로 배정
서울대 발전기금	직전학기 성적 3.3 이상	기금 예산 범위 내	전재규, 김종온 발전기금 (지질전공 전공학생에 지급)
기초학문후속세대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박사재학: 연간2천만원 박사수료: 연간2천4백만원 석사재학: 연간1천만원	매년1~2월 선발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희소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석사과정: 연간1천만원 박사과정: 연간2천만원	여석 발생 시 신규검토
자연대_ 손동준 장학기금	형편이 어려운 박사수료	연간 14,400천원	여석 발생 시 신규검토

2) 외국인 학생 대상 장학금

장학금명	최소자격기준	장학금액	비고
글로벌초우수	직전학기 3.0이상인 외국인 재학생(신입생가능)	등록금 전액	
SPF장학금	해당학기 신입생 중 개발도상국 주요 대학의 대학교원으로서 박사학위 미소지자	연간 약 4천만 원	국제협력본부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외국인 우수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부모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초,중등,대학교육에	등록금+월 생활비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입학신청 시, 장학금 신청서도 함께 접수

(GSFS)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사학위를 시행계획상 해당국가에서 취득한 자		

3) 외부재단 장학금

장학재단명	지원 자격	장학 금액	신청 시기		비고
			1학기	2학기	
미래국제재단 선한인재지원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 재학생	생활비: 30만원/월	3월	9월	기부의 선순환을 위해 졸업 후 발전기금으로 소액 기부 필수
우산육영회	석사 신입생, 성적우수자	생활비: 40만원/월	12월		
OK배정장학재단	직전학기성적3.8이상, 가정형편 어려운자	생활비: 50~200만원/월	1월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대학원 신입생	550만원, 4학기	2월		
관악회	동창회 재무간사 추천자	등록금or생활비	2월	7월	지질 동창회 손치무장학

※장학 신청 시기는 변동 가능, 홈페이지 공지 참조.

9. 국내·외 교류

가.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

1) 지원 자격: 본교 재학생으로 누적성적평점 (대학원) 3.3(B+) 이상인 자

※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이어야만 신청 가능

2) 신청가능학점

가) 정규학기: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 학점을 포함하여 대학원과정은 12학점 이내

나) 계절학기: 본교 신청 학점 포함 최대 (하계)9학점, (동계)6학점

다)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

3) 신청절차

가) 서울대학교 포털 mySNU에서 신청

나) 교류대학별 안내문·제출기한 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학생공지에서 확인 가능)

다)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후 학부행정실에 제출

나. 공동/복수학위

1)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가) 공동학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

나) 복수학위: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 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적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

2) 학위 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에 한하여 실시함

3) 지원자격, 수학신청 및 허가, 등록 및 학점인정

-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수학신청 및 학점인정 등 진행
- 국외수학 허가 및 취득학점인정이 선행되어야 함.

4) 관련 규정

-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다. 국제학술교류 협정 체결 현황 (2020년)

1) 자연과학대학

번호	협정대상		협정서		특이사항
	국가	국외대학(기관)명	구분	체결일자/ 만료일자	
1	덴마크	University of Copenhagen	학생교류	2017.01.23./ 2020.12.31	Erasmus+ Program
2	독일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of Mainz	공동/복수학위	2009.02.06./ 자동연장	박사과정 대상 복수학위
3	독일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일반학술	2013.06.27./ 자동연장	
4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공동/복수학위	2008.06.10./ 자동연장	박사과정 대상 복수학위
5	미얀마	Dagon University	일반학술	2015.05.26./ 자동연장	
6	스웨덴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공동/복수학위	2011.06.28./ 자동연장	박사과정 대상 공동학위
7	인도네시아	Universitas Padjadjaran (Department of Statistics, Faculty of Mathematics and Natural Sciences)	일반학술	2016.10.12./ 2021.10.11	
8	일본	Higher Accelerator Research Organization (Institute of Particle and Nuclear Studies)	일반학술	2012.08.21./ 2022.03.31	
9	일본	RIKEN	일반학술	2012.02.13./ 2022.02.12	
10	프랑스	Université Paris-Saclay	공동/복수학위	2019.01.03./ 자동연장	박사과정 대상 복수학위
11	프랑스	Université Paris-Sud	공동/복수학위	2005.11.24./ 자동연장	박사과정 대상 공동학위
12	프랑스	Université Pierre et Marie Curie (UPMC)	공동/복수학위	2012.07.11./ 2022.07.10.	

2) 지구환경과학부

번호	협정대상		협정서		특이사항
	국가	국외대학(기관)명	구분	체결일자/ 만료일자	
1	몽골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School of Geography and Geology)	일반학술	2013.04.10./ 2023.04.09	교원·학생·정보 교류
2	미국	UCSD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SIO)	일반학술	2003.01.21./ 5년마다 갱신	교원·학생·정보 교류

라. 교환학생

1) 지원자격

가) 학적: 본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 성적: 기 이수한 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2) 본교 선발 기준

외국대학에서 제시한 지원자격(학업성적, 어학성적 등 포함)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한하여 학업성적(평균평점) 순으로 선발

3)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마감일 까지 국제협력본부 담당자에게 방문 제출

4) 수학기간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5) 등록금

본교 등록금을 파견되는 학기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해야하며, 파견되는 대학교의 등록금은 면제됨

6) 학점 취득 및 인정

가) 학점 취득: 대학원생은 학기당 최소 3학점 이상 또는 1 과목 이상 학점을 취득해야함

나) 학점 인정: 「서울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참고

마. Study Abroad Program(SAP)

1) 프로그램 목적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외연수를 지원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방학기간 동안 세계 유수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이수하거나 실습·실험 등의 국외 연수를 경험함.

2) 유형 및 연수 기간

가) 유형Ⅰ: 국제협력본부 지정 프로그램 (학부생만 지원 가능)

나) 유형Ⅱ: 학생설계프로그램 (개인 연구·자료조사, 단체 실습참관 등)

다) 연수기간: 방학 중 최소 2주 이상

3) 선발 및 파견 절차

가) 참가자 선발: (하계) 3월 (동계) 9월

나) 연수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기관에 지원: (하계) 4월~5월 (동계) 10월~12월

다)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참가: (하계) 6월 (동계) 12월

4) 지원 자격

가) 공통: 어학 성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학사/석사/박사 재학 중 동일 과정에서 SAP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지원 제한

나) 유형Ⅱ

- 학부 재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연수기간 중에도 재학 중인 자
  (대학원 연구생/수료생 지원 불가)
-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이 평점평균 2.7 이상)
- 아래 어학 성적 요건 중 한 개를 충족하는 자:
  - 영어: TOEFL IBT 80, IELTS 5.5, TOEIC 800, TEPS 640 이상
  - 파견국가 언어: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 B2 이상 / 일본어 JLPT N2 이상 /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 신청서 제출 시점의 학기에 BK21 사업단 연구비 수혜를 받는 학생 지원 불가능

5) 선발 방법 및 심사 기준

가)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나) 심사기준: (1차) 성적과 가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 (2차) 심층면접

6) 연수비 지원 금액 (유형Ⅱ)

(단위: 원)

지역	연수 지원비		
	2주 이상 4주 미만	4주 이상 6주 미만	6주 이상
아시아	1,600,000	2,200,000	2,700,000
중동/아프리카	2,250,000	3,000,000	3,500,000
오세아니아	2,500,000	3,500,000	4,000,000
미주/유럽	2,750,000	4,000,000	4,500,000

7) 유의사항

- 학교 지원금 이외에 연수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출국 수속 등 일체의 절차는 본인이 처리해야 함
-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등은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야 함
-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 선발 후 연수를 취소할 경우 향후 SAP 재지원 불가

10. 기타 학생 생활

가. 관악학생생활관 안내

1) 주요일정

구분	기간
입주신청 공지	11월 말
입주신청	12월초 일주일간
입주대상자 발표	12월 말
호실선택사항 신청	12월 말 대상자발표 후 일주일간
등록(서류제출/관리비납부)	입주대상자 발표 후 다음연도 1월초

※ 입주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dorm.snu.ac.kr) 입주/퇴거 공지게시판 참조

※ 관리비 납부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입주대상자 발표 시 공지

2) 입주 신청 자격

종류	내 용
공통사항	- 입주 신청연도: 1학기 관악캠퍼스에서 수학 예정인 대학원생 (과정생 및 전일제연구생) - 신청 가능 지역: 부,모 거주지가 모두 지방 또는 서울(노원구, 도봉구)및 근교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과천, 성남, 군포, 의왕) 지역 - 입주 불가 지역: 서울 지역(노원구, 도봉구 제외)
석사 및 박사과정생	- 재학생, 입학 예정자(이하 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석사·박사 통합과정생	-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박사과정으로 인정된 학생을 말함)의 경우, 박사과정 체크박스 (인적사항란 밑에 위치)에 체크표시를 하여야 박사과정으로 인정됨 (석사과정생 또는 연구생이 체크표시를 할 경우, 허위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격이 취소됨)
전일제연구생	- 대학원 정규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연구생 등록을 한 자 - 관악학생생활관은 전일제 연구생(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규정에 부합하면서 학위논문을 위해 캠퍼스에서 주 5일 이상 전일 연구하는 자를 말함)만 수용함 - 입주 신청연도 1학기 학적이 연구생이 되는 경우 연구생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해야 함(기존 연구생은 자동으로 반영) - 신입생 또는 과정생이 연구생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합격자는 서류제출 시 “전일제 연구생 확인서” 필수 제출 - 연구생 등록(연구생 등록금 납부)을 하지 않은 경우 퇴거 조치됨

3) 신청 자격 제한

가) 성적 미달자

- 내국인: 대학원 재학생 전체평점 3.0 미만인자
- 외국인: 대학원 재학생 전체평점 2.7 미만인자

※ 단, 신입생 혹은 누적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나) 서울 거주자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서울(노원구, 도봉구 제외)에 거주하는 자

4) 입주 신청 방법

관악사 홈페이지(https://dorm.snu.ac.kr) 접속 → 온라인 입주신청 → 포털 로그인 → 학생생활관 → 관악학생생활관 → 입주신청

5) 문의처 :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02-880-5401)

관악학생생활관과 체력단련실 등 생활관내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악사 홈페이지 (https://dorm.snu.ac.kr) 에서 찾을 수 있음

나. 학생증(S-CARD) 발급 안내

1) 학생증(S-CARD) 종류 및 기능

S-CARD는 ID기능(학생증/신분증) 과 금융기능 (체크·후불교통카드) 등 하나의 카드로 통합된 다기능 스마트카드

구 분	기 능
카드형 S-CARD (ID+금융기능) 	▪ 신분증 ▪ 도서관, 정보화본부 등 주요 시설물 출입 ▪ 도서관 좌석 배정, 도서 대출·반납 ▪ 전자 출결 ▪ 학내전용 사이버머니 ‘SNU 머니’ 결제(식당, 매점, 복사·프린트 결제 등) ▪ 금융 기능(체크카드) - 후불 교통카드(만18세 이상 신청 가능) - 주요 혜택 . G마켓, 옥션 10% 할인, 스타벅스 20% 할인 .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10% 할인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0% 할인 .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10% 할인 . CU, GS25, 올리브영, 군마트(PX) 10% 할인 . 휴대전화요금(SKT, KT, LG U+) 3천원 할인 .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 2천원 할인 . YBM시사(토익 응시료 포함), 파고다, 해커스 어학원, 텝스 응시료 10% 할인 . 교보문고, 영풍문고 10% 할인

	※ 할인한도 및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서울대학교 CHECK'로 검색
모바일 S-CARD 	▪ 카드형 S-CARD와 기능 동일(금융기능 제외) ▪ '서울대학교' 앱에서 사용 가능
USIM S-CARD 	▪ 카드형 S-CARD와 기능 동일(금융기능 제외) - 주요 시설물 출입 시 '서울대학교' 앱 실행 없이 핸드폰을 바로 접촉하여 사용 - 모바일 S-CARD 발급 시 추가 발급 ※ 안드로이드폰 및 이동통신 3사(SK telecom, LG U+, KT) 가입자만 사용 가능(아이폰 또는 알뜰폰 가입자 불가)

2) S-CARD 발급

가) 발급절차

사진 확인 및 교체 신청 → 카드형 S-CARD 온라인 발급 신청 → 모바일 및 USIM S-CARD 발급신청 → 카드형 S-CARD 수령(개강 후)

나) 카드형 S-CARD 발급

- S-CARD 사진은 입학지원서의 사진으로 인쇄되며 사진교체를 원할 경우 입학 전 사진교체 신청기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본인 mySNU 메일 계정(외부 메일은 본인 확인 불가)으로 이메일 신청
  - 메일 수신: 서울대학교 학생처(student@snu.ac.kr)
  - 메일 제목: [S-CARD 사진 변경 요청] 학번_이름
  - 메일 내용: 소속/학번/이름/연락처 기재
  - 사진 파일명: 학번.jpg (예, 2020-xxxxx.jpg), 파일 확장자: jpg
  - 사진 규격 및 용량: 3*4cm 증명사진(사진 용량은 최대 1MB)

※ 증명사진이 아닌 셀카 또는 상반신 사진 등은 학생증에 이용 불가

※ 파일 공유를 통해 사진 발송 시 다운로드 불가, 반드시 파일 첨부

다) 온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학기 시작 전 주말포함 1주일간 (날짜는 사전 안내 예정)

※ 온라인 미신청자 또는 학부(정시) 추가 합격자는 개강 이후 우리은행 서울대지점 방문 신청 (모바일 및 USIM S-CARD 우선 사용 가능)

- 신청절차: 핸드폰에 '우리은행 위비뱅크' 앱 설치 → 우측 상단 → [서비스] → [대학교 ID 카드신청] [신청하기] → [약관] 동의 → [서울대학교] → 정보입력

※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우리은행 대학생 ID 카드(학생증) 발급안내' 참고

라) 수령

- 수령일: 학기 초 개강 이후

- 장소: 배포계획은 mySNU 포털 게시판(학생공지)을 통해 공지

마) 외국인학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가지고 학기 초에 우리은행 서울대지점 또는 임시영업소 두레문예관 67동 2층에 방문 신청

3) 모바일 S-CARD 발급

모바일 S-CARD 발급 절차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서울대학교' 앱 설치 → 포털 mySNU ID, PW 로그인 → 하단 중앙" "선택 → 모바일 학생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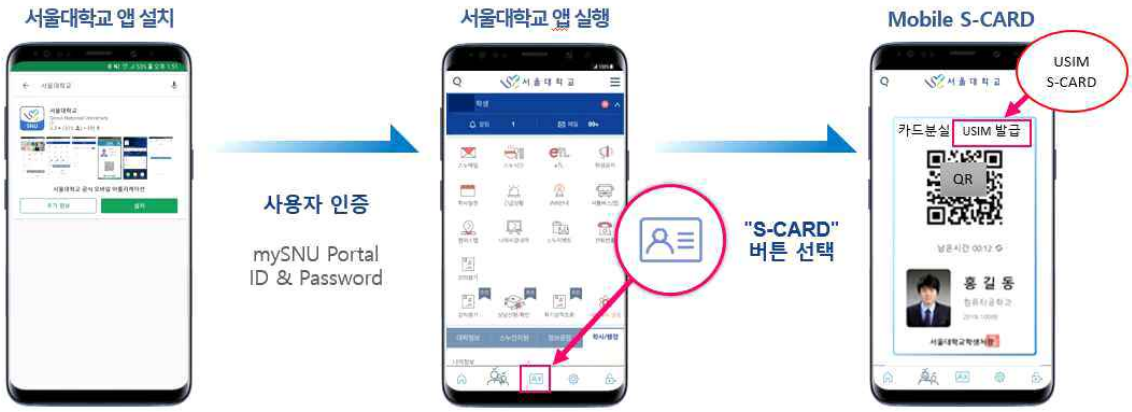

4) USIM S-CARD 발급

가) 대상: 안드로이드폰 및 이동통신 3사(SK telecom, LG U+, KT) 가입자
(아이폰 또는 알뜰폰 가입자 불가)

나) 방법: 모바일 S-CARD 화면에서 [USIM 발급] 신청 (상단 그림 참조)

※ 주의: 모바일 및 USIM S-CARD는 학기 초부터 사용 가능하며 개강 후 1개월 이내 카드형 S-CARD를 발급 받아야 계속 사용 가능(카드형 S-CARD 미발급 시 4. 1.부터 기능이 자동 정지됨)

5) 분실

가) 분실 시 ID 및 금융기능 정지를 위해 반드시 학교 및 우리카드 양쪽에 신고

나) 학교(ID 기능 정지): S-CARD 홈페이지(http://scard.snu.ac.kr)에서 분실신고

다) 우리카드(금융기능 정지): 콜센터 1588-9955

6) 재발급

가) 재발급 신청: 교내 우리은행지점에 재발급 신청
(금융카드 발급→ 학생지원센터 (두레문예관 67동 201호) 방문 (ID기능 탑재)

나) 재발급 비용

- 카드 훼손/분실 재발급: 무료
- 훼손 카드는 학생지원센터 또는 우리은행에 반드시 반납해야 함

※ 재발급 횟수가 일정기준 초과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7) 반납

S-CARD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졸업, 수료, 퇴학, 제명, 제적 등) 소속 대학 또는 학생지원센터

67동 201호에 반드시 반납해야 함
※ S-CARD(금융카드)에 기재된 카드 유효기간은 금융기능 사용 기간으로 ID카드 사용기간과는 무관함

8) 기타

가) 본인이 직접 S-CARD 신청 및 수령이 어려운 경우(대리 신청 및 수령을 원하는 경우)
- S-CARD 신청서 원본 1부(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위임장 원본 1부(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원본 1부

※ 금융카드는 대리 신청 및 수령 불가

나) 양식 및 S-CARD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ySNU 상단메뉴 → 정보광장 → 게시판 → 공유마당 → 자료실 → 'S-CARD'로 검색

다) 문의(학생지원센터): S-CARD (02-880-5248), 건물출입 (02-880-5249)

다. 학생건강검진 안내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는 학생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연중 상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

구 분	내 용
일시/장소	■ 매일 오전 09:00~12:00/화,목 14:00~14:20 (소요시간 약30~40분) ■ 63동 학생회관 3층 보건진료소
대상/비용	■ 학생: 학부/석사/박사 과정 재학생(휴학생, 연구생 포함)/매년 1회 무료 ■ 일반: 연구원, 언어교육원생, 연2회 이상 검진자/2만원
검사항목	■ 체성분검사(인바디), 혈액검사(일반혈액, 간 기능, B/C형 간염, 혈당, 콜레스테롤 4종, 신장기능, 요산), 소변검사(요단백, 요당), 흉부단순촬영, 혈압측정, 시력검사, 신체계측(비만도/허리둘레), 건강습관 및 정신건강 설문 + 개인별 추가 선택검사 가능(유료, 검진 당일 항목 추가/변경/취소 가능) + 구강검진(월, 화 오전) + 필요시 의사 예진
준비사항	1. 검진 전날 ■온라인 사전 예약 필수: 보건진료소 홈페이지 http://health4u.snu.ac.kr (마이스누 앱으로도 예약가능) ■건강설문 작성: 검진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건강설문 작성 ■검진 전 12시간 이상 금식: 순수한 물만 섭취 가능 2. 검진 당일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복장: 탈의하기 쉽고 편안한 복장(예:면 티셔츠). 액세서리 최소화 ※관악학생생활관 입사 지원 예정자는 소아예방접종수첩 또는 홍역예방접종 증명서를 출력해 오세요. http://www.minwon.go.kr (접종 기록이 없더라도 검진 시 확인을 위해 내용을 꼭 출력해 오세요)
문의	02)880-5349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라. 증명서 발급(인터넷 발급)

1) 인터넷 발급

가) 발급 가능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나) 신청방법 :

서울대포털(http://mysnu.snu.ac.kr) 접속 → ID, 비밀번호로 로그인 → 학사행정 → 증명발급에서 '인터넷 발급' 선택신청 → 즉시발급

다) 수수료 : 없음

2) 증명서 종류(국·영문 모두 발급 가능)

종류	비고
성적증명서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 "F" 성적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재수강한 성적을 표기 - "F" 성적을 재수강하지 않는 경우 증명서에 "F" 성적을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
학위수여증명서	석사·박사과정의 학위 취득자 * 졸업증명서는 학사과정 졸업자만 발급 가능
수료증명서	석사, 박사 수료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석사·박사과정 학생으로 논문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논문 심사 중인 자
수료예정증명서	석사·박사과정 최종 학기에 재학 중인 자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자
재적증명서	입학하여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휴학생, 제적생의 경우에는 재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입학, 재학, 휴학, 제적, 복적, 재입학 등이 기재 됨)
연구생증명서	수료 후 논문 제출을 위하여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

3) 기타 발급 방법(수수료 부과)

가) 방문신청: 관악캠퍼스 대학본부(행정관 60동) 1층 학사과 증명창구

※ 씰링(Sealing, 봉인)처리가 필요한 경우 학사과 증명창구에 신청

나) 팩스민원 : 가까운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접수 후 3시간 이내 해당 구청 및 센터로 증명서를 FAX로 전송

마. 교육

1) 연구윤리교육

- 19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연구 윤리(990.501A)” 교과목 필수지정을 해지하며,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또한 ’17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생은 ’19학년도부터 “연구 윤리(990.501A)” 교과목을 수강해도 수료학점 으로 인정하지 아니함.(2019.3.7. 기획·교학위원회에서 결정됨)
- 더불어 본교 및 교육부에서는 학내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하여 상시 학습이 가능한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

◎ CITI Program: 9강좌(각 45분)
경로: http://www.citikorea.org → 회원가입 → 강의수강

번호	강의목록	분야
1	의과학연구(Biomedical Research)	생명윤리
2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 Behavioral Research)	생명윤리
3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for Clinical Trials with Drugs and Biologics)	생명윤리
4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GCP for Clinical Trials with Medical Devices)	생명윤리
5	의약품및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GCPforClinicalTrialswithDrugsandMedicalDevices)	생명윤리
6	개인정보보호및보안(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생명윤리
7	책임있는연구수행, 연구윤리(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esearch Ethics) - 의과학 연구종사자 들을 위한 연구윤리 - 사회행동과학 연구종사자들을 위한 연구윤리 - 연구행정을 위한 연구윤리	연구진실성
8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연구진실성
9	IRB 위원장(IRB Chair Course)	생명윤리

◎ 연구윤리 정규수업 동영상: 13강좌(각 2~3시간)
경로: 중앙도서관(http://library.snu.ac.kr) → “연구윤리 수업” 검색 → 강의수강
포털 ID, PW로 로그인

번호	강의목록	분야
1	연구윤리 소개 및 관련 법규	연구진실성
2	연구노트 연구데이터관리와 연구윤리, 동물실험윤리	연구진실성 / 동물 실험윤리
3	Biohazard in animal experiments for medical research	생물안전
4	임상시험과 GCP, 충분한 정보와 설명에 근거한 동의	생명윤리
5	임상연구에서 연구계획서 작성법, 임상연구자의 이해상충(COI)	연구진실성
6	인간대상연구연구윤리-실험적 임상연구에서의 고려사항	생명윤리
7	인체유래물연구의 유래, 역학연구와 의무기록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생명윤리
8	의무기록 이용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방안	생명윤리
9	피험자 모집 및 특수한 피험자 연구의 윤리, 취약한 피험자 연구의 윤리	생명윤리
10	연구결과의 발표, 심사 윤리	연구진실성
11	연구의 위험-이익 평가 및 관리	연구진실성
12	연구자와 IRB	생명윤리
13	대학원 연구생활	연구진실성

◎ KIRD 이러닝: 18강좌(각 1~2시간)

경로: 산학협력단 R&D교육센터 (https://cyber.kird.re.kr) → 회원가입 → 연구윤리 바로가기 → 수강신청 → 강의선택 및 수강

번호	강의목록	분야
1	대학생을 위한 학습윤리	연구진실성
2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연구진실성
3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연구진실성
4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연구진실성
5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연구진실성
6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이공계)	연구진실성
7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인문사회계)	연구진실성
8	BK21 플러스 사업 건강한 연구 환경 조성	연구진실성
9	연구윤리 심화콘텐츠(이공계)	연구진실성
10	연구윤리 심화콘텐츠(인문사회계)	연구진실성
11	연구윤리 심화콘텐츠(예체능계)	연구진실성
12	Academic ethics for college students	연구진실성
13	Research ethics for graduate students (Science and Engineering)	연구진실성
14	Research ethics for graduate studen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연구진실성
15	Research ethics for participant researchers (Science and Engineering)	연구진실성
16	Research ethics for participant researcher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연구진실성
17	Research ethics course for research manager (Science & Engineering)	연구진실성
18	Research ethics course for research manager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연구진실성

※ 연구윤리정보센터(한국연구재단 지정): http://www.cre.or.kr - 다양한 교육자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

2) 연구활동종사자 환경안전교육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 훈련 등)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매 6개월마다 6시간의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가) 본교 안전교육 규정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환경안전교육)
-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5조(기능)
- 서울대학교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 제11조(방사선 안전교육)

나) SNU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교육

위 규정에 따라 이공계(미술대 포함) 대학의 모든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은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생물, 방사선 등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별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

다) 안전교육 과정

교육명	구분	교육대상	일정	내용
안전환경교육	신규	이공계(미대 포함)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	2월, 8월	연구실 안전 전반에 관한 집체교육
	정기		1학기(3월~7월) 2학기(9월~12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온라인 교육
생물안전교육	신규 (실습)	병원체 및 LMO(2등급 이상)연구실 사용자	2월, 8월	생물안전 2등급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
	계속	생물안전 1등급 이상(LMO 포함)연구실 사용자	1학기(3월~7월) 2학기(9월~12월)	생물안전에 관한 온라인 교육
방사선 안전교육	신규	신규 방사선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2월, 8월	직장교육
	정기	기존 방사선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2월, 8월	기본교육, 직장교육

라) 교육문의 및 신청방법

교육관련 세부 정보는 연구안전정보통합시스템 (http://rsis.snu.ac.kr)에서 확인.

바. 대학원 생활 중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 대학원 생활 중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찍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연구/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일차적으로 지도교수나 논문지도교수 위원회와 상담을 하고 다른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도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담당 부학부장이나 학부장과도 면담할 수 있다. 지환부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자연대의 Ombuds person(학생부학장)과 상담할 수 있다.
-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 대학의 인권센터(http://hrc.snu.ac.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두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고 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에 소개한 자연대의 **자:우리**를 이용하거나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http://snucounsel.snu.ac.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활문화원은 학생들이 고충이 있거나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이며 심리상담, 위기상담도 받을 수 있다.

사. 자:우리

1) 자:우리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인을 위한 학생상담센터로 개인상담, 심리상담, 집단상담, 워크샵, 특강 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지원해주는 센터

2) 자:우리 상담 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모든 자연과학대학 구성원

3) 제공서비스

종류	내 용	
상담프로그램	개인상담	우울, 불안, 성격, 대인관계, 진로 등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전문상담사와 1대1로 만나 해결하고 성장하는 과정
	심리검사	정신건강, 성격, 진로, 대인관계를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도구를 통해 살펴보는 과정
	집단상담	여럿이 함께 서로의 성장을 돕는 집단학습의 과정
교육프로그램	심리특강	다양한 분야의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개안역량의 개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및 성차별 없는 건강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자연과학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신입생 심리검사	자연과학대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과정
	학업부진 상담	학업부진의 원인을 함께 찾고 원인에 따른 적극적인 개입

4) 자:우리 이용방법

가) 온 라 인 상담신청: 이메일 신청(cns.counsel@snu.ac.kr)로 신청 및
홈페이지(http://cnscounsel.snu.ac.kr) 상담예약기능 신청

나) 오프라인 상담신청: 센터 방문 (501동 328호) 및 전화(02-880-4340)신청 후 방문

11. 각종 서식

[(공동)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관련 서식1]

(공동)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서

논문지도대상 학생					논문지도교수			공 동 지 도 교 수			
과정	입학년도 및 학기	학부	학 번	성 명	학부	직 급	성 명	대학 (기관)	직 급	성 명	세부전공
		지구환경 과학부			지구환경 과학부						

- 선정사유 :

. . .

논문지도학생 : (인)

논문지도교수 : (인)

공동논문지도교수 : (인)

년 월 일

지구환경과학부장 : 이 강 근 (인)

자연과학대학장 귀하

[(공동)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관련 서식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표준 양식]

<table>
<tr><td rowspan="4">논문작성자</td><td colspan="2">학위과정명:</td><td colspan="2">입학년도 및 학기:</td></tr>
<tr><td colspan="4">학부(과) · 전공: 지구환경과학부</td></tr>
<tr><td colspan="4">학 번:</td></tr>
<tr><td colspan="4">성 명:</td></tr>
<tr><td rowspan="3">현행 논문지도교수</td><td colspan="2">학부(과): 지구환경과학부</td><td rowspan="3">변경후 논문지도교수</td><td>학부(과): 지구환경과학부</td></tr>
<tr><td colspan="2">직 급:</td><td>직 급:</td></tr>
<tr><td colspan="2">성 명: (인)</td><td>성 명: (인)</td></tr>
<tr><td colspan="5">변경 신청 사유</td></tr>
<tr><td colspan="5"></td></tr>
</table>

※ 신청자는 변경 전 · 후 지도교수 또는 학생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 유: 지구환경과학부장 이강근 (인)

자연과학대학장 귀하

[논자시 지도교수 확인서 서식1]

지 도 교 수 확 인 서

2020학년도 제1학기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학부(과) 학 번		성명		과정	석사 □/박사 □
주민등록 번 호	(뒤의 1자리 이하 별표)		연락처 (☎)		
응 시 현 황					
구 분	응시 여부	비 고			
한국어 (외국인만 해당)		□필답고사 □구술고사 ※ 필답고사에 1회 이상 불합격 시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하면 구술고사로 대체 가능			
영어		□TEPS □TOEFL		점수:	

본인은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위의 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신 청 자 : (인)

상기자의 지도교수로서 학력, 인품, 태도 등으로 보아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지도교수 (인)

자연과학대학 학부(과)장 (인)

자연과학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자격 : 등록회수 2회 이상이면서 9학점이상 취득한 자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응시여부: 금회 응시하는 과목에 필히 ∨표기해야 함.

※ 외국인 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7개 국가(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의 국적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한국어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영어 응시자는 지도교수의 서명 생략 가능.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1]

박사학위 심사위원 위촉 현황

○○○○학년도 ○학기 학부(과)장 (인)

학과 (부)	학번	성명	지도 교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비고
				성명 직명	소속 학위명	성명 직명	소속 학위명	성명 직명	소속 학위명	성명 직명	소속 학위명	성명 직명	소속 학위명	

* 내부위원을 먼저 기입 후 외부위원 기입, 직전학기 심사연장자는 비고란에 '직전학기 심사연장'표시
* 심사위원 중 연구기관 연구원은 학위명 밑에 반드시 "박사학위취득 년, 월"을 기재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2]

박사학위 논문 심사 요구서

성 명 (한글) :

(한자) :

학 번 :

학 력 :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입학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수료(예정)

논문제목 :

국 문 :

영 문(기 타) :

논문내용 작성언어(해당란에 ∨표): □한국어,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기타(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상기 논문을 ( )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논문 00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납 부 확 인	
논문심사료	연구생부담금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해당란에 반드시 납부확인(○표)을 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수료자는 반드시 연구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논문심사 가능.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3]

지 도 교 수 추 천 서

박 사 학 위 논 문 제 출 자 인 적 사 항

대학원 학과(부) 전공 학번 :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추천내용

년 월 일

추천인 : 지도교수 (인)

경 유 : 학 과 장 (인)

학 장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4]

이 력 서

(1) 성 명 한글 : 한자 :	(2) 성 별 □ 남 □ 여	(3) 주민등록번호 : (4) 현주소 : 연락처 :

(5) 학 력(학사과정부터)

기 간		학 력	사 진
부터	까지		

(6) 자격•면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류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부터	까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보 수	발령청
부터	까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

년 월 일

성 명 :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5]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논문제목			
학 위 명	이학석사(박사)		
소 속	자연과학대학원 OO학과 OO전공		
학 번	OOOO-OOOO	생년월일	OOOO.OO.OO
성 명	O O O	지도교수	

본인은 위 학위논문(실적심사)을 작성함에 있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위조·변조·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학위취소 등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OOOO년 OO월 OO일

성 명 : O O O (서명)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6]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1. 논문제출자

소　　속 : 자연과학대학　　학부(과, 전공)

학　　번 :

성　　명 :

신청학위 :　○○박사

지도교수 :

논문제목 :

2. 심사위원

구　분	소　속	직 명	성 명	학　위	전공분야	비　고 (전화번호)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 지도교수 및 교외인사(기금교수 포함)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명예교수는 교내인사로 간주됨
※ 심사위원중 연구기관 연구원은 비고란에 반드시 "박사학위취득 년, 월"을 기재
※ 소속은 대학교, 대학, 학부(과)까지 기입 요함
※ 학위명은 구체적으로 기재 (예) 이학 박사, 공학박사

위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심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7]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

1. 논문 제출자

○ 소　　속 : 자연과학대학　　학부(과, 전공)

○ 학　　번 :

○ 성　　명 :

○ 신청학위 : ○○○ 박사

○ 지도교수 :

○ 논문제목 :

2. 논문심사위원

논 문 심 사 위 원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	소 속	직명	성 명	소 속	직명	학위	성 명	
위원장	서울대학교 ○○○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학과	교수	○○○학 박사	○○○	변경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
위 원	○○대학교 ○○○학과	조교수	○○○	○○대학교 ○○○학과	조교수	○○○학 박사	○○○	

※ 소속과 학위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

예) ○○○학과 / ○○○학 박사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8]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자격기준 미달자 추천 사유서

1. 심사대상자 인적사항

ㆍ소속학과(부) 및 전공

ㆍ학 번 :

ㆍ성 명 : ㆍ수여예정학위명 :

ㆍ논문제목 :

2. 심사자(심사위원으로 추천된 자)

ㆍ소속(현 근무처 등) :

ㆍ직급(위) :

ㆍ성 명 :

ㆍ소지학위 및 취득년월일 : (. .)

3. 심사위원 추천 자격기준 미달사유 :

4. 심사위원 추천사유(심사위원 업적 및 이력포함) :

붙임: 심사위원 이력서 1부.

20 . . .

( )학과(부)장 : (인)

논문지도교수 :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9]

○○○○학년도 ○학기 석·박사 학위 논문심사 대상자 현황

학부(과) 및 전공명 :

(단위 : 명)

석 사		박 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기준 미달 추천자 수	비 고
학위별	등록자	학위별	등록자	직전 학기 심사연기자	계		
이학석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계							

※ "등록자 수"는 반드시 논문심사료 납부자 인원과 같아야 함

※ 박사학위논문심사연기자의 경우 논문심사예정자 명단 입력시 비고란에 반드시 "심사기간연장"을 기록하여야 함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기준미달자 추천시 해당학과(장)의 사유서를 별도제출(서식별첨)하여야 함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10]

박사학위 명칭 변경 사유서

소 속 : **학 과(전공) :**
학 번 :
성 명 :
요청학위명 :

변경사유
(학위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 (해당 학위) 분야 인정 가능 교과목 확인 명세서 1부

20 . .

본인: (인)

지도교수: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11]

(학문분야 기재)분야 인정 가능 교과목 확인 명세서

구 분	인정 가능 교과목		비 고
	교과목명	이수학점	
소속 성명 (학번)			
	소 계		

위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은 우리 학부(과)의 (해당학위 기재)박(석)사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문분야 기재)분야 과목으로 인정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OOOO. OO. OO.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학과(부)장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12]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소속		학번	
성명		학위명	(　　학) 박사
학위논문 제목			
학위논문 예비심사 진행상황	가. 제 1 차　20　.　.　.(　) 요일　시 심사위원 : 나. 제 2 차　20　.　.　.(　) 요일　시 심사위원 :		
최종심사 희망일시	20　.　.　.(　) 요일　시		

위와 같이 예비심사를 종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심사위원장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논문 예비심사는 2회 이상 실시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13]

구술고사 성적표

신청자 성명 :

시험성적 ( ) 점

20 년 월 일

시험위원 : (인)

심사위원장 확인 : (인)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임.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14]

투 표 용 지

신청자 성명 :

가	부

심사위원장 확인 (인)

※ 무기명 투표로 행하되 해당란에 ○표로 표시한다.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15]

박사학위 논문심사요지

논문제목					
소속 학과		성 명		수여예정 학 위	
○심사요지					
20 . . . 심사위원장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16]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표

1. 성명 :
2. 소속 : (　　)학과 (　　)전공
3. 논문제목 :

4. 심사결과 : 가(　표) 부(　표)
5. 심사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부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대학원학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17]

해외인사 논문심사료 계좌이체 신청서

학 부 (과):

심사대상자(학생명) :

★ 논문심사료 지급에 따른 해외인사의 논문심사료를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인사 심사위원 소속	
해외인사 심사위원 직급	
해외인사 심사위원 성명	
이체 요청 계좌 및 계좌명의	
사 유	해외인사의 국내 계좌가 없음

★ 이체 계좌는 심사대상자의 지도교수 혹은 학부(과) 운영 계좌로 적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계좌 명의자가 아래의 [본인 계좌 이체 동의]에 서명하여 주시되, 학부(과) 운영 계좌 사용 시 학부(과)장 혹은 전공주임의 서명으로 합니다.

★ 해외인사의 경우 대부분 화상을 통하여 심사가 진행되어 본인 서명을 받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외인사의 심사료 이체 동의 서명을 생략하오니 해외인사에게 심사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께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명의자 본인 계좌 이체 동의 (인)

학부(과)장 혹은 전공주임 (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18]

박사학위 논문심사 철회 신청서

1. 소　　속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학과(부) (전공 :　　)
2. 학　　번 :
3. 성　　명 :
4. 수료년월 :
5. 논문제목 :

6. 철회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20　.　.

신 청 인 :　　(인)

지도교수 :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19]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연장 신청서

1. 소　　속 :

2. 학　　번 :

3. 성　　명 :

4. 수료년월 :

5. 연장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20　.　　.

신 청 인 :　　(인)

지도교수 :　　(인)

학부(과)장 :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박사 서식 20]

박사학위 논문심사기간 연장 신청서

1. 소　　속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학과(부) (전공 :　　)
2. 학　　번 :
3. 성　　명 :
4. 지도교수 :
5. 수료년월 :
6. 논문제목 :
7. 심사기간 연장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20　.　.

심사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학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박사 서식 21]

○○○○학년도 ○학기 논문심사 결과 현황

(석·박사과정별로 각각 구분 작성)

학부(과) 및 전공명 :

구분 / 학과	심 사 대상자 (B포함)	합격자 (A)	불합 격자	철회	심사연기 (박사만해당)	직전학기학위 수여보류자 (논문미제출) (B)	합격자 논문내용 작성언어				비 고
							한국어	영어	기타	계 (C=A+B)	
계											

※ 작성요령

① 심사대상자 : 심사대상자를 기재하되 직전학기 논문미제출로 학위수여 보류자도 포함(교무과 서식에 따름)

② 합격자 : 합격자를 기재하되 직전학기 논문미제출로 학위수여 보류자는 제외 됨

③ 심사연기자 : 박사학위 대상자만 해당 됨

④ 직전학기 학위수여 보류자 : 직전학기 논문미제출로 학위수여 보류자를 기재 함.

⑤ 논문내용작성언어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에 의거 논문내용에 대한 작성언어를 파악, 해당자수를 기재(영어, 불어 등의 작성언어는 예시이며 필요시 변경 가능함). 합격자와 직전학기 학위수여 보류자(논문 미제출자)만 해당.

[논문심사 관련서식- 박사 서식 22]

○○○○학년도 ○학기 보존용 학위논문 미제출자 명단

기관명 :

과정	학과(부)	성 명	미 제출사유	향후제출계획
계				

※ 반드시 당해학기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

붙임 : 학위논문 미제출사유서 ( ) 부

[논문심사 관련서식- 박사 서식 23]

보존용 학위논문 미제출 사유서

1. 소속대학 및 학과(부):
2. 학 번:
3. 과 정:
4. 성 명:
5. 미제출 사유(구체적으로):

   이번학기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해당 논문의 철회, 불합격, 논문심사 연장 등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유의)

6. 향후제출 일정 및 계획

7. 확 인 : 지도교수 : (인)

20 . .

사유서 제출자 :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 박사 서식 24]

석사·박사 학위논문 비공개 승인자 명단

기관명 :

구분	대학	학과	과정	학번	성명	논문제목	조치사항	비공개 사유
1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특허출원, 군사상 비밀, 사생활침해 우려, 학술지 게재 예정등 간단히 기재
2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3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4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5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붙임 :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 ( ) 부

[논문심사 관련서식- 박사 서식 25]

논문 비공개 신청서

아래 논문의 열람실 또는 자료실 논문원본을 ○○○○년 ○○월 ○○일까지 유보하여 주시고, 또한 논문이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차후 인터넷 및 전자 자료실 등을 통한 공개행위를 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소　　속 :
- 학　　번 :
- 과　　정 :
- 성　　명 :
- 지도교수 :
- 논문제목 :
-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지도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교수

○○○ (인 또는 서명)

학위논문저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과정)

○○○○ (인 또는 서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박사 서식 26]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학위논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서울대학교가 다음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 제목	
학위 구분	**석사** □ / **박사** □
학 과	
학 번	
연 락 처	

1.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전송·배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서울대학교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 저작물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5. 서울대학교는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을 준수하며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저 작 자 : (인)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박사 서식 27]

논 문 초 록

1. 국문요약(국문초록)

요약(국문초록)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하여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주요어 : (6단어 이내)
학 번 :

2. 외국어초록(Abstract)

Abstract

제 목

성 명(영문명)
학과 및 전공(영문명)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하여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keywords : (6단어 이내)
***Student Number* :**

※ 주요어 부여시 유의사항

① 주요어(keywords)는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적 내용을 함축성있게 나타낼 수 있는 어(語), 구(句)를 사용한다.
② 주요어는 논문을 검색할 때 색인어로 가능한 단어를 6개 이내로 선정하여 초록 끝에 제시한다.
③ 주요어 부여는 국문초록 밑에는 국문으로, 외국어초록 밑에는 외국어를 사용한다.
④ 주요어는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
⑤ 영문의 경우 첫 문단을 들여 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번째 문단부터 들여쓰기를 한다.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학년도 ○학기 학부장 (인)

학 생	지도 교수	심 사 위 원					
		구 분	성 명	전 공	소 속	직명	비고 (전화번호)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합 계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소속은 대학교, 대학, 학부(과)까지 기입요함
* 심사위원 중 연구기관 연구원은 비고란에 반드시 “박사학위취득 년, 월”을 기재
* 1장에 모든 학생의 심사위원을 적을 것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2]

석사학위 논문 심사원

(전화 :)

주 소 :
성 명 : (한글) (한자)
학 번 :
학 력 :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입학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수료(예정)

논문 제목 :

논문 작성언어(해당란에 ∨표) : □한국어,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기타(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7조에 의거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납 부 확 인	
논문심사료	연구생부담금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해당란에 반드시 납부확인(○표)을 하여 주시기 바람.	

상기자의 지도교수로서 학력, 인품, 태도 등으로 보아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도 좋다고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지 도 교 수 :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수료자는 반드시 연구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논문심사 가능.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3]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논문제목			
학 위 명	이학석사(박사)		
소 속	자연과학대학원 OO학과 OO전공		
학 번	OOOO-OOOO	생년월일	OOOO.OO.OO
성 명	O O O	지도교수	

본인은 위 학위논문(실적심사)을 작성함에 있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위조·변조·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학위취소 등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OOOO년 OO월 OO일

성 명 : O O O (서명)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4]

○○○○학년도 ○학기 석·박사 학위 논문심사 대상자 현황

학부(과) 및 전공명 :

(단위 : 명)

석 사		박 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기준 미달 추천자 수	비 고
학위별	등록자	학위별	등록자	직전 학기 심사연기자	계		
이학석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계							

※ "등록자 수"는 반드시 논문심사료 납부자 인원과 같아야 함(직전 학기 심사연기자 제외)

※ 박사학위논문심사연기자의 경우 논문심사예정자 명단 입력시 비고란에 반드시 "심사기간연장"을 기록하여야 함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기준미달자 추천시 해당학과(장)의 사유서를 별도제출(서식 별첨)하여야 함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5]

석사학위 명칭 변경 사유서

소 속 : **학 과(전공) :**
학 번 :
성 명 :
요청학위명 :

변경사유
(학위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 (해당 학위) 분야 인정 가능 교과목 확인 명세서 1부

20 . .

본인: (인)
지도교수: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6]

(학문분야 기재)분야 인정 가능 교과목 확인 명세서

구 분	인정 가능 교과목		비 고
	교과목명	이수학점	
소속 성명 (학번)			
	소 계		

위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은 우리대학의 (해당학위 기재)박(석)사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문분야 기재)분야 과목으로 인정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OOOO. OO. OO.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학과(부)장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7]

석사학위논문심사요지

1. 논 문 제 출 자 : 학과 전공 성명 :
2. 논 문 제 목 :
3. 성 적 :
4. 구술고사성적 :
5. 심 사 요 지 :

※ 1. 성적은 A, B, C로 구분하되 A, B 를 합격으로 한다.
2. 구술고사 성적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 상기 논문제목과 논문심사결과보고서(전산입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8]

해외인사 논문심사료 계좌이체 신청서

학 부 (과):

심사대상자(학생명) :

★ 논문심사료 지급에 따른 해외인사의 논문심사료를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인사 심사위원 소속	
해외인사 심사위원 직급	
해외인사 심사위원 성명	
이체 요청 계좌 및 계좌명의	
사 유	해외인사의 국내 계좌가 없음

★ 이체 계좌는 심사대상자의 지도교수 혹은 학부(과) 운영 계좌로 적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계좌 명의자가 아래의 [본인 계좌 이체 동의]에 서명하여 주시되, 학부(과) 운영 계좌 사용 시 학부(과)장 혹은 전공주임의 서명으로 합니다.

★ 해외인사의 경우 대부분 화상을 통하여 심사가 진행되어 본인 서명을 받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외인사의 심사료 이체 동의 서명을 생략하오니 해외인사에게 심사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께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명의자 본인 계좌 이체 동의 (인)

학부(과)장 혹은 전공주임 (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9]

석사학위 논문심사 철회 신청서

1. 소　　속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학과(부) (전공 :　　)
2. 학　　번 :
3. 성　　명 :
4. 수료년월 :
5. 논문제목 :

6. 철회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20　.　.

신 청 인 :　　(인)

지도교수 :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0]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연장 신청서

1. 소　　속 :

2. 학　　번 :

3. 성　　명 :

4. 수료년월 :

5. 연장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20　.　.

신 청 인 :　　(인)

지도교수 :　　(인)

학부(과)장 :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1]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

1. 논문 제출자

○ 소　　속 :　자연과학대학　　학부(과, 전공)

○ 학　　번 :

○ 성　　명 :

○ 신청학위 :　○○○ 석사

○ 지도교수 :

○ 논문제목 :

2. 논문심사위원

논 문 심 사 위 원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	소 속	직명	성 명	소 속	직명	성 명	
위원장	서울대학교 ○○○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학과	교수	○○○	변경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
위 원	○○대학교 ○○○학과	조교수	○○○	○○대학교 ○○○학과	조교수	○○○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2]

○○○○학년도 ○학기 논문심사 결과 현황

(석·박사과정별로 각각 구분 작성)

학부(과) 및 전공명 :

구분 / 학과	심 사 대상자 (B포함)	합격자 (A)	불합 격자	철회	심사연기 (박사만해당)	직전학기학위 수여보류자 (논문미제출) (B)	합격자 논문내용 작성언어				비 고
							한국어	영어	기타	계 (C=A+B)	
계											

※ 작성요령

① 심사대상자 : 심사대상자를 기재하되 직전학기 논문미제출로 학위수여 보류자도 포함 (교무과 서식에 따름)

② 합격자 : 합격자를 기재하되 직전학기 논문미제출로 학위수여 보류자는 제외 됨

③ 심사연기자 : 박사학위 대상자만 해당 됨

④ 직전학기 학위수여 보류자 : 직전학기 논문미제출로 학위수여 보류자를 기재 함.

⑤ 논문내용작성언어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에 의거 논문내용에 대한 작성언어를 파악, 해당자수를 기재(영어, 불어 등의 작성언어는 예시이며 필요시 변경 가능함). 합격자와 직전학기 학위수여 보류자(논문 미제출자)만 해당.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3]

○○○○학년도 ○학기 보존용 학위논문 미제출자 명단

기관명 :

과정	학과(부)	성 명	미 제출사유	향후제출계획
계				

※ 반드시 당해학기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

붙임 : 학위논문 미제출사유서 ( ) 부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4]

보존용 학위논문 미제출 사유서

1. 소속대학 및 학과(부):
2. 학 번:
3. 과 정:
4. 성 명:
5. 미제출 사유(구체적으로):

   이번학기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해당 논문의 철회, 불합격, 논문심사 연장 등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유의)

6. 향후제출 일정 및 계획

7. 확 인 : 지도교수 : (인)

20 . .

사유서 제출자 : (인)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5]

석사、박사 학위논문 비공개 승인자 명단

기관명 :

구분	대학	학과	과정	학번	성명	논문제목	조치사항	비공개 사유
1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특허출원, 군사상 비밀, 사생활침해 우려, 학술지 게재 예정등 간단히 기재
2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3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4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5							열람실, 자료실 비치유보 ⇒ (. . 까지) 인터넷 등 전자자료실을 통한 공개 유보 ⇒ (. . 까지)	

붙임 :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 ( ) 부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6]

논문 비공개 신청서

아래 논문의 열람실 또는 자료실 논문원본을 ○○○○년 ○○월 ○○일까지 유보하여 주시고, 또한 논문이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차후 인터넷 및 전자 자료실 등을 통한 공개행위를 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소　　속 :
- 학　　번 :
- 과　　정 :
- 성　　명 :
- 지도교수 :
- 논문제목 :
-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지도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 교수

○○○ (인 또는 서명)

학위논문저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과(○○과정)

○○○○ (인 또는 서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7]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학위논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서울대학교가 다음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 제목	
학위 구분	**석사** □ / **박사** □
학 과	
학 번	
연 락 처	

1.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전송·배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서울대학교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 저작물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5. 서울대학교는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을 준수하며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저 작 자 : (인)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논문심사 관련서식- 석사 서식 18]

논 문 초 록

1. 국문요약(국문초록)

요약(국문초록)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하여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주요어 : (6단어 이내)
학 번 :

2. 외국어초록(Abstract)

Abstract

제 목

성 명(영문명)
학과 및 전공(영문명)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하여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keywords : (6단어 이내)
***Student Number* :**

※ 주요어 부여시 유의사항

① 주요어(keywords)는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적 내용을 함축성있게 나타낼 수 있는 어(語), 구(句)를 사용한다.
② 주요어는 논문을 검색할 때 색인어로 가능한 단어를 6개 이내로 선정하여 초록 끝에 제시한다.
③ 주요어 부여는 국문초록 밑에는 국문으로, 외국어초록 밑에는 외국어를 사용한다.
④ 주요어는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
⑤ 영문의 경우 첫 문단을 들여 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번째 문단부터 들여쓰기를 한다.

[학위논문 관련 서식1]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학위논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서울대학교가 다음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 제목	
학위 구분	**석사 □ / 박사 □**
학 과	
학 번	
연 락 처	

1.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전송·배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위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서울대학교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 저작물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5. 서울대학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하여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며, 이후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저 작 자 : (인)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Thesis and Dissertation Deposit Agreement

Under this Agreement, I represent and warrant that my dissertation or thesis(the "Work") does not infring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copyright, of any third party. I gran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the "SNU") certain rights as follows.

Title	
Degree	Master ☐ / Ph.D. ☐
Major	
Student ID No.	
Tel./Mobile No.	

1. I hereby consent to authorize the SNU to reproduce, distribute, display and transmit the Work over the internet through the SNU library.

2. I hereby grant to SNU the royalty-free right to use for oline service.

3. I agree that SNU may, without changing the content, translate the Work to any medium or format.

4. If I grant to others copyright ownership, I will notify a relevant office in SNU so as to make the Work available to the public or not.

5. Under Article 46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NU will exploit the Work when the holder of author's property right grants authorization, and will not be obligated to take legal action related to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Work.

Date : 20 . . .

Author : (sign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위논문 관련 서식2]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

1. 규격

㉮ 논문의 규격은 4×6배판(가로 19㎝, 세로 26㎝)으로 한다.

㉯ 외표지(하드커버)의 표지는 흑색(짙은 곤색) 포크로스 지로 하고, 석사는 은박, 박사는 금박으로 인쇄한다.

㉰ **양면(兩面)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 50페이지가 넘지 않을 경우 단면 인쇄 한다.

㉱ 표지의 측면 세로쓰기를 제외하고, 가로쓰기(좌 → 우)를 한다.

2. 조판요령

1) 외표지(서식 1)

㉮ 논문 제목과 성명은 한글(국문)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효과적인 의미전달을 위해 한자(漢字) 및 널리 통용되는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경우 성명은 외국어로만 표기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 한다.

㉰ 논문 제목을 한 줄로 표기할 수 없을 경우, 둘째 줄은 중앙에 맞춘다.

㉱ 부제(副題)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아래 중앙에 맞춘다.

㉲ 학교, 학과, 전공, 성명은 한글로 표기한다.

㉳ 논문 발간년도는 학위수여일이 속한 연, 월까지 표시 한다.

예) 2019년 2월 졸업 시 : 2019년 2월

㉴ 기타 외표지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을 맞추어 인쇄한다.

2) 표지 측면(서식 1)

㉮ 기재내용 : 학위논문제목, 논문 발간년도, 성명

㉯ 논문 제목은 한글(국문)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미 전달 목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한자(漢字) 및 널리 통용되는 외국어를 혼용할 수도 있다.

㉰ 논문 부제는 표기하지 않는다.(제목만 표기)

㉱ 논문 발간년도는 졸업년도를 뜻하며, 아라비아 숫자 세로로 표기한다.

㉲ 학위논문 제목, 논문 발간년도, 성명을 세로로 표기한다.

㉳ 논문 제목을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 책등 상단에서부터 가로로 표기한다.

3) 속표지

㉮ 외표지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외국어 논문 제목은 논문 부제 아래의 중앙 부분에 표기한다.

4) 내표지(인준지)

㉮ 인준지의 서명과 날인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한다.

㉯ 심사위원의 인준 증명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지도 논문의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 중 1인이 되어, 인준지 가장 하단에 날인한다.

㉱ 논문 제출일은 “논문심사계획”상의 심사용 논문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 월까지만 표시한다.

예) 논문제출기한이 2018. 12. 22일 경우 : **“2018년 12월”** 표기

㉳ 논문 인준일은 “논문심사계획”상의 논문 종심일이 속하는 연, 월까지만 표시한다.

예) 논문 종심기한이 2019. 1. 22일 경우 : **“2019년 1월”** 표기

5) 본문

㉮ 본문은 38자 × 25행 정도로 인쇄한다.

㉯ 본문 분량은 논문 규격(19㎝ × 26㎝)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한다.

㉰ 본문내용 : 글자크기 11pt 정도, 줄간격 170이상, 장평 100, 자간 0

㉱ 각주 : 글자 크기 9~10pt

㉲ 서체 : 명조체나 신명조체 류

㉳ 글자색 : 흑색(수록 자료는 칼라 가능)

㉴ 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

㉮ 페이지 표시는 각 면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6) 초록(ABSTRACT)(서식 4)

㉮ 초록(ABSTRACT)은 본문이 국문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 외국어로 논문이 작성되었을 경우 반드시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 논문초록의 길이는 2 ~ 7페이지 이내로 한다.

㉱ 초록의 제목은 해당 원어(原語)로 한다. 한 줄로 표기할 수 없을 경우 둘째 줄은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부제는 제목의 하단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제목 하단에 성명, 전공, 학과, 학교명을 기재한다.

㉴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7~8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7) 감사의 글

인쇄용 석·박사학위논문에는 생략 가능하며, 온라인제출용 원본 파일에는 넣지 않는다.

3. 제본 요령(논문제본 순서)(※반드시 순서에 따를 것)

㉮ 외표지(서식 1 참조)

㉯ 간지

㉰ 표제면

㉱ 인준지(서식 2 참조)

㉲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국문초록(본문이 외국어일 경우 외국어초록)(서식 3)

㉴ 목차(表目次, 圖目次(그림목차) 등 포함)

㉵ 본문

㉶ 참고문헌

㉷ 부록, 색인, 기타(필요한 경우)

㉸ 외국어초록(본문이 외국어인 경우 국문초록)(서식 3)

㉹ 감사문(생략가능)

㉺ 간지

㉻ 뒷표지

※ ㉮항의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제출하는 논문 중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논문 1부에만 부착한다.

4. 표지 및 내용 활자 크기

구분 \ 활자크기	22pt	16pt	14pt	11pt
외표지	논문제목	부제, 학교명, 성명	○○○○년, ○○월 ○○학위논문, 학과, 전공	-
표지 측면	-	논문제목 (글자수에 따라 크기조정 가능)	졸업년도, 성명	-
내표지 (인준지)	논문제목	부제, 외국어 논문제목, 이 논문을 ○○학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학교명, 성명	지도교수, ○○○○년 ○○월, 학과, 전공 심사위원 ○○○	-
본문	-	각론(서론, 본론, 결론), 장 제목	단위 제목	내용
초록 (외국어)	논문제목	부제	성명, 학과, 전공, 학교명	내용

※ 글자 크기는 아래한글(HWP) 기준

5. 제출

1) 인쇄논문 제출

㉮ 학위논문은 심사완료 후 소정기일까지 중앙도서관에 제출한다. 다만, 1부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다음 장에 반드시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1)를 합철 제본하고, 나머지 2부에는 인준지 복사본을 합철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출부수 : **석사 3부, 박사 3부**(중앙도서관 보존용 1부, 국립중앙도서관 제출용 1부, 국회도서관 제출용 1부)

※ 각 해당대학 자료실에 제출하는 논문부수는 별도

㉰ 석사 : 은박 하드커버(Hard Cover) 학위논문 **3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한 논문)

㉱ 박사 : 금박 하드커버(Hard Cover) 학위논문 **3부**(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날인한 논문)

2) 온라인 제출

㉮ 논문 심사 종료 후 인쇄논문 제출 전까지 제출한다.

㉯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 원문 파일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 학위논문 제출”로 제출한다.

㉰ 원문 파일은 윈도우용 워드(한글 및 MS워드) 또는 PDF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표제지 부터 초록과 본문(그림 및 표 포함)까지 논문전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감사의 글은 원문 파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원문 파일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경우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학위논문 표지형식 예시>

※ 석사 학위논문 외표지(은박 하드커버 4×6배판)

○○○석사 학위논문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고찰

20 년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학과 및 전공)

○ ○ ○(논문 작성자)

※ 석사 학위논문 내표지(인준지)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 ○ ○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 년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학과 및 전공)

○ ○ ○(논문 작성자)

○○○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 년 월

위 원 장 _____(인)

부 위 원 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 박사 학위논문 외표지(금박 하드커버 4×6배판)

○○○박사 학위논문

朴趾源문학연구

-한문단편을 중심으로-

20 년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학과 및 전공)

○ ○ ○(논문 작성자)

※ 박사 학위논문 내표지(인준지)

朴趾源문학연구

-한문단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 ○ ○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 년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학과 및 전공)

○ ○ ○(논문 작성자)

○○○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 년 월

위 원 장 _____(인)

부 위 원 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서식 1(외표지) : 책등(측면)

서식 1(외표지) :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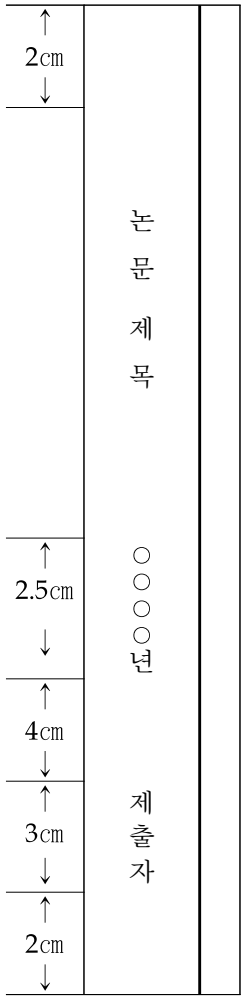
2cm
논 문 제 목
2.5cm
○○○○년
4cm
3cm
제 출 자
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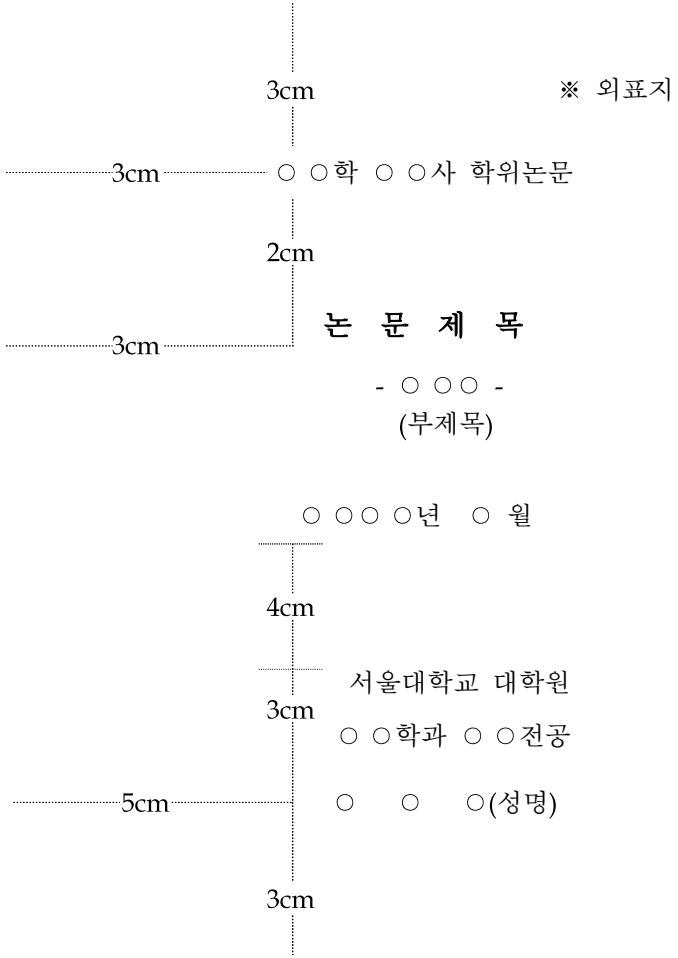
※ 외표지
3cm
3cm
○ ○학 ○ ○사 학위논문
2cm
3cm
논 문 제 목
- ○ ○○ -
(부제목)
○ ○○ ○년 ○ 월
4cm
서울대학교 대학원
3cm
○ ○학과 ○ ○전공
5cm
○ ○ ○(성명)
3cm

서식 2(인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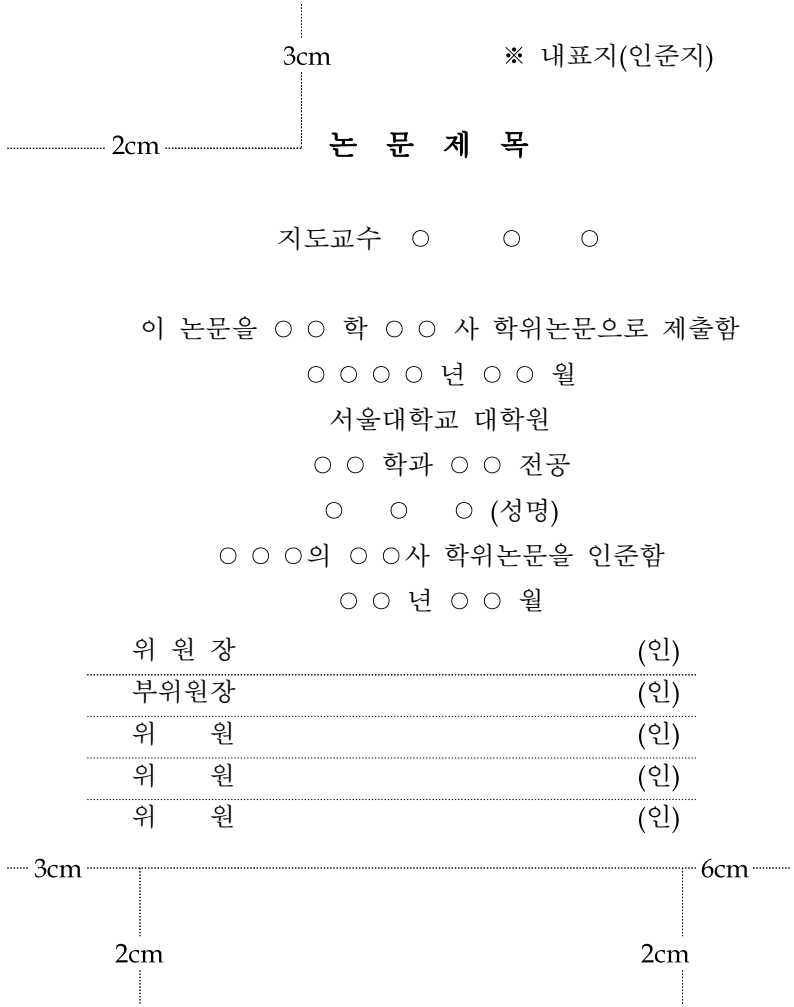

※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3인

서식 3(초록)

논 문 초 록

1. 국문요약(국문초록)

요약(국문초록)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하여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주요어 : (7~8단어 이내)
학 번 :

2. 외국어초록(Abstract)

Abstract

제 목

성 명(영문명)
학과 및 전공(영문명)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하여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keywords : (7~8단어 이내)
***Student Number* :**

※ 주요어 부여시 유의사항

① 주요어(keywords)는 논문의 중심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語)나 구(句)를 사용한다.

② 주요어는 논문을 검색할 때 색인어로 가능한 단어를 7~8개 이내로 선정하여 초록 끝에 제시한다.

③ 주요어 부여는 국문초록은 국문으로, 외국어초록은 외국어로 표기한다.

④ 주요어는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

⑤ 영문의 경우 첫 문단을 들여쓰기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번째 문단부터 들여쓰기 한다.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

[시행 2017. 7. 17.]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호, 2017. 7. 17.,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02-880-516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따라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9.>

제2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9.>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박사통합과정생의 응시자격은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 12. 9.>

제3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지정된 서식의 응시원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9.>

제4조(시험시행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각각 1회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 12. 9.>

제5조(외국어시험의 시행방법) ① 각 대학(원)별 외국어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외국어시험은 별표 1에서 명시한 과목이외에 각 대학(원)장이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 2015. 2. 11., 2015. 3. 19.>

② 외국어(한국어 제외)시험에서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전자사전 및 전자수첩 제외)을 지참하여 응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

③ 외국어과목의 답안작성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

④ 외국어(한국어 제외)시험의 세부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1. 12. 9.>

제5조의2(종합시험의 시행방법) ① 종합시험(전공시험) 과목 및 세부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09. 5. 14., 2010. 7. 8., 2011. 12. 9.>

② 각 대학(원)장은 각 학문(전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부) 단위로 종합시험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

제6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2. 9.>

②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에게는 소속 대학(원)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

제7조(영어시험의 대체시행) ① 영어시험은 TEPS 또는 TOEFL(PBT 제외) 성적으로 대체하며, 대학(원)별·학위과정별 합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9. 5. 14., 2010. 7. 8., 2010. 8. 19., 2011. 1. 31., 2011. 4. 28., 2011. 12. 9., 2012. 3. 8., 2012. 5. 3., 2012. 6. 14., 2012. 8. 2., 2012. 12. 7., 2013. 2. 21., 2013. 5. 30., 2013. 7. 25., 2014. 3. 20., 2014. 4. 17., 2014. 8. 21., 2014. 12. 11., 2015. 3. 19., 2015. 4. 2., 2015. 5. 14., 2015. 8. 19. 2016. 2. 24., 2016. 3. 31., 2016. 7. 25., 2017. 1. 26., 2017. 5. 23., 2017. 7. 17.>

②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학위논문심사 서류 제출 전(1학기는 4월초, 2학기는 10월초)까지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

정 2011. 12. 9.>

③ 각 대학(원)장은 학생들이 제출한 영어 성적에 대한 합격인정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9.>

④ <삭제><개정 2011. 12. 9.>

제8조(외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① 외국어시험 성적(TEPS 또는 TOEFL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성적 포함)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합격 인정 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학위취득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1. 12. 9.>

② 제1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 전형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 또는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제9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학위수여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과목(영어과목 제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 2015. 3. 19.>

1.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제12조의 학위과정별 합격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개정 2011. 12. 9.>
2.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학기)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개정 2011. 12. 9.>
3.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어학능력시험의 종류 및 자격시험【별표 3】에서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개정 2011. 12. 9.>
4. 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과목의 어학능력시험(SNULT)에서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합격기준 이상을 취득한 경우<개정 2011. 12. 9.>
5.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개정 2011. 12. 9.>

② 외국어과목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9.>

제10조(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① 1과목의 외국어(영어포함)를 부과하는 대학(원)의 외국인학생은 영어(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 한국어, 제2외국어(모국어 제외)중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영어과목이 모국어(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인 경우 한국어과목 또는 제2외국어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9.>

② 2과목의 외국어(영어포함)를 부과하는 대학(원)의 외국인학생은 영어(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 한국어, 제2외국어(모국어 제외)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인 경우에는 영어과목을 면제하고, 한국어 또는 제2외국어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9.>

제11조(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개정 2011. 12. 9.>

② 한국어시험의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③ 한국어시험은 필답고사로 시행하되, 과정별(석사, 박사과정) 및 학문분야별(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1. 12. 9.>

④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 12. 9.>

⑤ 한국어시험(구술고사 포함)의 시험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임 교원 중에서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

⑥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 C-이상 " 또는 " S "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과목의 취득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⑦ 행정대학원 글로벌공공행정석사학위과정과 국제대학원 개발협력정책석사학위과정, 사범대학 글로벌스포츠매

니지먼트전공 내 드림투게더마스터 프로그램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교육원 개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강하고, 그 성적이 " C-이상 " 또는 " S "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과목의 취득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3. 2. 21., 2013. 5. 30., 2014. 4. 17.>

⑧ 각 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한국어시험(구술고사 포함)의 응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지정된 기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점수) 과목별(영어과목 제외)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재응시)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 응시 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에게는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횟수 및 응시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 7. 17., 2011. 12. 9.>

제14조(합격자 발표 및 보고) 각 대학(원)장은 매 학기 시험 종료 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1학기는 3월말, 2학기는 9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은 자체 학사일정에 따라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문서의 보관)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는 각 대학(원)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지 원안 및 답안(채점)지 : 5년
2. 결과표(사정일람표) : 준 영구
3. 기타 서류 : 1년

제16조(자체 내규 제·개정 및 보고) 각 대학(원)장은 학위수여규정과 동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체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을 제·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869호, 2012. 7. 1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2조에 따른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7.,2012. 7.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계절수업"이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이하 "정규학기"라 한다)와는 별도로 휴가 중에 학칙에 규정된 학점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개설)① 개설교과목은 정규학기에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교과목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및 영주 재외국민을 위한 외국어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한 인원이 적정하지 않은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4조(수강자격 및 수강신청)① 계절수업은 당해 학기 등록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기 졸업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② 수강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 이외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주수 2분의 1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 8. 6.]
④ 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다만, 개강 전일까지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⑤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대학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국외대학의 재학생은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⑥ 본교 재학생이 아닌 외국인 또는 영주재외국민은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⑦ 특별수강생 및 교류학생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5조(학점)① 학점단위는 15시간 이상 강의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와 체육은 30시간 이상 강의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02. 1. 7.]
② 1회의 계절 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하계 계절하기는 9학점, 동계 계절학기는 6학점까지로 하며, 취득한 학점은 학칙상의 이수학점에 포함한다.[개정 2002. 1. 7., 2007. 8. 6.]

제6조(시험과 성적) 계절수업의 시험과 성적은 학칙과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I(미완)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입금)① 학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납입금을 반환한다.[개정 2002. 1. 7., 2007. 8. 6.]
1. 당해학기 개시일 전 : 납입금 전액
2.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3분의 2
3.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2분의 1
4.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② 납입금액은 학기마다 정한다.

제8조(강사료의 지급)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국내·외대학 교류학생의 수강정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담당부서) 계절수업 수학허가 업무별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01869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5. 1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4. 5. 16.,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7.,2012. 7. 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대학이라 함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 중인 대학을 말한다.
2. 수학대학이라 함은 학생이 수학을 지원한 대학을 말한다.

제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5조(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 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수학신청)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원(별지 1호 서식)
2. 지도교수 추천서

3-4. [삭제 2002. 1. 7.]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개시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제7조(수학허가) 수학은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제8조(등록)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양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수학신청의 취소)①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계절수업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학점 인정) 타 대학에서 수학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3조(취득학점)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2009. 8. 7.]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02. 1. 7.]

제14조(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 7.]①-② [삭제 2002. 1. 7.]

제15조(학점의 인정 기준)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개정 2003. 7. 28.]

②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 28.]

③ 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2. 1. 7., 2003. 7.28.]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6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 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28.]

제16조(학점인정 절차)① 수학학점은 수학대학의 수학결과통보에 의하여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전항에 의한 취득학점은 학적부에 "○○대학(교) 수학 이수학점"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

제3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7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수학신청) 소속대학 총장은 수학 지원자 명단과 수학신청원(별지1호 서식)을 학기 개시(계절학기 개강)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2. 1. 7.]

제19조(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계절수업 개강) 2주 전까지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정원)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21조(등록금 및 수강료 등)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계절수업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수학신청의 취소)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2. 1. 7.]①-② [삭제 2002. 1. 7.]

제26조 [삭제 2002. 1. 7.]

제27조(취득학점의 처리)① 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신분증의 발급)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9조(시설물의 이용)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01956호, 2014.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서울대학교 군휴학 중 원격수업 학점이수제도 운영 지침

[시행 2016. 1. 18.]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호, 2016. 1. 18., 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02-880-2077

제1조(목적) 이 지침은「병역법」제73조, 「고등교육법」제23조, 「서울대학교 학칙」제92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원격수업"이라 함은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하"군휴학생"이라 한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된 강좌를 말한다.

제3조(교과목개설)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제13조에 따라 군휴학생원격수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및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원격수업 교과목은 교양교과목의 경우 기초교육원 운영위원회 및 기초교육위원회, 전공교과목의 경우 대학 본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학기에 개설한다.

제4조(수업기간) 수업기간은 정규학기로 하고, 수업 시간은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강자격 및 수강신청) ① 수강자격은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 중 병역법에 따른 군휴학생으로 한다.

② 전역 또는 소집해제일이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수강자격을 갖춘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강좌는 지정된 기간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2분의 1선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다만, 개강 전일까지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콘텐츠의 분량과 질의응답, 온라인토론 등 수업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강신청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며, 학점취득은 입영 또는 복무기간 중 최대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험 및 성적) ① 시험은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시험 또는 과제 제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성적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학칙 제85조제1항을 따르되,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낙만 구분하여 급제는 'S' 로, 낙제는 'U' 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과목의 재수강) 입영 또는 복무기간 중 이수한 원격수업 교과목은 복학 후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군휴학 전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입영 또는 복무기간 중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없다.

제9조(수강료) ①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당해 연도 본교 계절학기 학점 당 수강료 기준에 따른다.

②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한다.

1. 당해학기 개시일 전: 수강료 전액
2.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수강료의 3분의 2
3.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수강료의 2분의 1
4.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0조(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군휴학 중

취득학점"임을 학적부에 표시하고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도중 전역 또는 소집해제 하는 경우, 남은 강좌를 모두 이수하면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취득한 학점은 복학한 학기의 종강일 이전까지 소정의 서류를 소속대학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제11조(책임시간 인정) 원격수업을 담당한 전임교원의 강의 시간은 책임시간에 산입할 수 있고, 비전임교원의 해당수업은 매학기 담당강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2조(원격수업의 운영) 원격수업의 운영관리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하고,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콘텐츠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관리한다.

제13조(군휴학생원격수업운영위원회) ① 원격수업 운영을 위하여 교무처에 군휴학생원격수업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육부처장, 기초교육원 부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부처장이 된다.

④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 선정 및 개발 ·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의 발전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세부사항)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6. 1.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규정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869호, 2012. 7. 1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8조에 따른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7.,2012. 7. 12.]

제2조(용어의 정의) 대학원연구생이라 함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2. 6. 7.]

제3조(교과목수강 자격 및 의무)① 대학원연구생에게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부)장의 승인을 거쳐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수강교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전문개정 2002. 6. 7.]

제4조(신분) 대학원연구생은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원연구생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등록) 대학원연구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연구생 자격을 상실한다.

1. 대학원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제7조(부담금 등 징수)① 대학원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 사용료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되, 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2. 6. 7.]

제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1869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9. 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44호, 2016. 9. 6.,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29.,2012. 7. 12.,2014. 7. 14.]

제2조(정의) 석사·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11. 4. 29.]

제2조의2(설치 및 운영) ①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부)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7. 14.]
②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29.]

제3조(선발대상) 통합과정의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1. 4. 29.,2014. 7. 14.]

제4조(선발인원) 통합과정의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학과(부)별 입학정원 범위에서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 4.29.]

제5조(전형방법) 통합과정의 선발방법 및 전형방법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4.29.]

제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4.29.,2012. 7. 12.,2014. 7. 14.]
②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개정 2011. 4.29.,2014. 7. 14.]

제7조(이수학점)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4. 29.,2014. 7. 14.]

제8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 4. 29.,2014. 7. 14.]
② 제1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제9조(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4.29.]
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과(부)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으로 매 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4.29., 개정 2014. 7. 14.]
③ 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는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1. 4.29., 개정 2016. 9. 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학생 중 「서울대학교 학칙」제89조제1항 및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4.29.,2012. 7. 12.,2014. 7. 14.,2016. 9. 6.]

⑥ 제5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생 중 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신설 2016. 9. 6.]

제10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 후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29.,2014. 7. 14.]

제11조(박사학위논문 제출) 통합과정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9.,2012. 7. 12.,2014. 7. 14.]

제11조의2(박사학위의 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89조제2항 및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1. 4.29., 개정 2014. 7. 14.]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2044호, 2016. 9.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시행 2010. 7. 16.]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호, 2010. 7. 16.,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윤리팀, 02-880-5153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임과 동시에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선도적 연구기관이다. 선도적 연구기관을 구성하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학문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 뿐 아니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닌다.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탐구를 향한 원동력이며, 호기심으로 유발된 탐구는 우호적 환경을 통하여 꾸준히 지원될 때에 비로소 창의적 결과로 태어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사회적 통념, 편견, 관습은 때로 새로운 탐구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때로 유발된 호기심이 창의적 연구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자에게는 유형, 무형의 구속이 없이 연구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가 진리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연구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므로 그 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나아가 한국의 선도적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연구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연구는 한국이라는 지역 사회를 넘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연구물은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연구의 윤리성은 연구자 개인, 그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와 더불어 국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함의를 갖는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다가오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의 학문과 기술 수준은 국가 능력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학은 이러한 지식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대학과 연구자 개인은 사회로부터 부단한 연구 경쟁과 연구능력의 평가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점차 확대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구결과물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야기하기도 한다. 환경의 변화는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행위규범을 요구한다. 본 연구윤리 지침은 서울대학교의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사회적 요청에 미래지향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초석으로 마련되었다.

제1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서울대학교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연구가 장기적으로 인류문화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한다.

제2조 (지도자로서의 책임)
①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본 연구윤리지침을 포함한 윤리기준을 숙지시켜야 한다.
③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저자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교수는 박사후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가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용역의 결과 혹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연구경력의 표현 시 지켜야 할 책임)
① 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5조 (원칙)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 · 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장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 추가 · 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제7조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 ·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 ·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연구계획서, 학술지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문헌 ·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 · 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뷰논문(review article)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 · 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

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중복게재 · 출간의 제한)
① 연구자는 이미 게재 ·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 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 · 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 출간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 · 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 · 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 · 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 · 출간하는 경우
6. 이미 게재 · 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 · 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 · 출간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 · 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제10조 (저자 표시)
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연구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연구의 제안 · 수행 · 보고 · 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 추가 · 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연구부적절행위)
① 연구상 중대하지 아니 한 과실로 인하여 연구의 제안 · 수행 · 보고 · 발표 등 전 과정에서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적절행위의 책임을 진다.
② 고의 또는 중대한 연구상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적절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제6조 제3호를 위반하여 연구데이터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한다)
4.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5.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한다)
6. 제9조를 위반하여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저서·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
7. 제10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위반하여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공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공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8.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제13조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의 판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의 해당 여부 및 위반의 정도는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제3장 연구자료의 관리

제14조 (원칙)
연구데이터(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의 결과 등 원자료를 의미한다) 및 연구자료(연구데이터 및 이를 처리한 이차자료를 의미한다)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제15조 (연구데이터의 기록)
① 연구데이터는 연구의 독자성(originality)을 증명하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이므로, 연구노트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의 집합체로서, 연구자 자신 뿐 아니라 연구실 내의 지식의 전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므로,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위하여 제본된 노트에 내구성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특성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연구노트에 준하는 기록인증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구데이터는 연구일자,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하여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원래 기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실험기기의 출력물 등 노트에 기재할 수 없는 연구데이터는 노트에 붙이거나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연구노트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를 보관·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 연구노트는 서울대학교의 소유에 속한다.
③ 연구자료는 학계의 검증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안이 필요한 연구자료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인 경우에는 접근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파괴하는 자는 제2장 제7조의 규정과 동일한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이해상충

제17조 (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1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9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제20조 (원칙)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 의생명과학, 행동과학 등을 포함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인간 대상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
③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제23조 (원칙)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 非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2. 축소원칙 :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3. 개량원칙 :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제2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동물대상 연구는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제25조 (동물대상 연구의 종료)
동물대상 연구를 종료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 시켜야 한다.
2. 실험동물의 사체는 각 실험동물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서울대학교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의 안전관리

제27조 (연구실 안전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학교 당국에 신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들은 연구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기준 및 서울대학교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서울대학교는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제공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생물안전관리)
① 생물자원(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미생물, 프리온 등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을 의미한다)을 이용하는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해당 연구시설을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을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①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 내장기기,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구매·사용·폐기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을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사선을 취급하는 연구자는 방사선장해 방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인화성물질은 원칙적으로 옥내 저장소에 보관하되, 실험실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둔다.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은 특성에 맞게 분류·저장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제30조 (서울대학교의 책무)
① 서울대학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연구자의 책무)
①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 (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869호, 2012. 7. 1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조 및 제9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7., 2008. 2.19.,2012. 7. 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 교류를 통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개정 2008. 2. 19.]

제2조의2 (용어의 정의)①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학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③ "복수학위"라 함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 2. 19.]

제3조(운영주체 및 협정체결)① 제2조의2 제1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본교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 2. 19.]
② 제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 2. 19.]
③ 협정에는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문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19.]
④ 학위과정에 관한 협정체결은 학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석사·박사 학위과정에 관한 협정체결은 미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8. 2. 19.,2012. 7. 12.]

제4조(학위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는 본교 학위수여규정과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8. 2. 19.]

제4조의2(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8. 2. 19.]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5조(지원자격, 수학신청 및 허가, 등록 및 학점인정 등)① 지원자격, 수학신청 및 허가, 등록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의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에 따른다.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신청자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19.]

제6조(수학기간)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협정을 통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08. 2.19.]
② 협정에 명시되었거나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논문심사)①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학위수여규정에 준하여 선정, 구성된 심사위원 이외에 당해 외국대학 전임교원 1인 이상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② 외국대학 소속의 위원은 협정 또는 당해 외국대학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③ 논문 심사는 본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다만, 외국대학 위원의 심사는 서면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8조(지원자격)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9조(지원시기, 수학허가 및 취소, 등록 및 수강료) 지원 및 수학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규정이나 협정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학기간) 제6조를 준용하되, 동조 제1항의 규정내용 중 “외국대학”을 “본교”로 본다.

제11조(학위 논문심사)① 학위 논문심사는 당해 외국대학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② 외국대학 논문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본교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본교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의 경우 1인 이상, 박사의 경우 3인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01869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3. 29.]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6. 3. 29.,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7., 2012. 7. 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4조(지원대학)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하"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수학신청)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원 (별지 1호 서식)
2. 지도교수 추천서

3.-4.<삭제> 2002. 1. 7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제7조(수학허가) 수학은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제8조(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학신청의 취소) ①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계절수업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2009. 8. 7.>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02. 1. 7>

제12조(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 7>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개정 2003. 7. 28>

②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 28>
③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28>

제14조(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원)장은 소속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③ 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대학(교) 수학 이수학점"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5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16조(지원시기)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 7>

제17조(수학허가)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정원) ① 학사과정 정규학기 수학 학생(교환·방문, 공동·복수학위 학생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정원의 25%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 정규학기 수학 학생(교환·방문, 공동·복수학위 학생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정원의 50%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이 학과(부)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대학(원)은 해당 대학(원) 전체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19조(등록 및 수업료)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중 학생교환 협약에 따라 상호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업료는 납입하지 아니하나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 2. 12.]
② 수업료는 본교 재학생의 해당 학기 납입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학점 수를 기준으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 2. 12.]
③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계절수업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2. 1. 7> ①-②<삭제> 2002. 1. 7

제23조 <삭제> 2002. 1. 7

제24조(취득학점의 처리) ① 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수강증의 발급)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의 이용)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02035호, 2016.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869호, 2012. 7. 1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4. 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대학원연구생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4. 23.]

제3조(구분)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4. 23.]

1.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장학금
2. 각종 교외장학단체(또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4.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가. 학내 각종 업무에 종사케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
   나. 교수의 연구보조·강의보조 및 학사행정보조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다. 가계가 곤란한 학생의 생활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신설 2012. 4. 23.]
5. 그 밖의 장학금[개정 2012. 4. 23.]

제2장 장학실무위원회 [개정 2012.4.23.]

제4조(설치목적) 장학정책의 집행에 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4. 23.]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4. 23.]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겸임하고,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 기획부처장, 입학본부 부본부장,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4. 3. 26.,2010. 8. 25.,2012. 4. 23.,2012. 7. 12.]

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복지과 장학담당 사무관이 겸임한다.[개정 2002. 6. 7.,2012. 4. 23.]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2. 장학·복지위원회에 부의할 장학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3. 그 밖에 장학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장학·복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전면개정 2012. 4. 23.]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학(원)장학실무위원회)① 각 대학(원)별로 장학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4. 23.]

②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장학생

제9조(자격)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품행이 방정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계 곤란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
2.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3.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학생
4.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학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다만, 위원회(대학(원)장학실무위원회 포함)에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제1호 : 재학생의 경우 그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 2.4이상
2. 제1항제2호 :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순위 100분의 50 이내, 재학생의 경우 그 직전학기(대학원 연구생은

최종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석·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은 3.3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에 대한 학업성적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2. 4. 23.]

제9조의2(자격상실)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휴학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제10조(선정신청 공고) 총장은 학기개시 3개월 전(6월, 11월)까지 장학금 지급방침을 정하여 장학생 선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에게 장학생 선정신청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자는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추천) 지도교수는 접수한 선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학(원)장에게 추천한다.

제13조(선정)① 총장은 장학금 지급방침에 따라 대학(원)별 장학생 수 또는 장학금액을 배정하며 이에 따라 학(원)장은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 4. 23.]
② 총장은 추천된 장학생을 심사하여 이를 확정하고 학(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3.]

제4장 장학금

제14조(장학금 지급액) ① 제3조제1호의 장학금 지급액은 등록금의 전액면제 또는 일부면제로 하되, 일부 면제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3조제4호의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대학(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2. 4. 23.]

제15조(수혜기간 등) ① 장학금의 수혜는 1학기를 단위로 한다.[개정 2012. 4. 23.]
② 규정학기 초과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 4. 23.]

제16조(이중수혜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제3조제4호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 4. 23.]

제17조(장학금 수혜보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기록) 학생처와 대학(원)에서는 장학생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장학금 지급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2012. 4. 23. 삭제]

제20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 9. 26.]

부칙 <제00844호, 1991. 11.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대여한 장학금은 이 개정규정에 의한 대여학자금으로 본다.

부칙 <제00956호, 1995.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47호, 1997. 5.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59호, 2000. 9.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342호, 2002. 6.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31호, 2004. 3.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43호, 2005.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14호, 2005. 9.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799호, 2010. 8.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864호, 2012.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869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32호, 2014. 1. 3.,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강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7.,2014. 1.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특별수강생"이라 함은 본교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① 학사과정 특별수강생은 국내·외의 정규대학 정규과정을 1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
② 석사 및 박사과정의 특별수강생은 당해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입학) 특별수강생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학과(부)의 서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수강허가) 입학을 허가받은 자의 수강은 소속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하되, 학위과정별로 2개 학기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만 수강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정원) 특별수강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위탁이 있을 경우와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강증명) 특별수강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등)① 수강이 허가된 자는 당해학기 또는 계절수업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당해학기 재학생의 납입금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개정 2009. 8. 7.,2014. 1. 3.]
1. 수강료=수업료×수강학점수÷수강신청기준학점수(학사과정 : 18학점, 대학원과정 : 12학점)
2. [삭제 2014. 1. 3.]
③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계절수업만을 위한 수강료는 따로 정한다.
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학기당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2학점, 대학원과정에서는 6학점 이내로 한다.

제10조(수강허가취소) 특별수강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특별수강생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00891호, 1992. 11.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외국인학생수학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특별생으로 수강을 허가받은 자 또는 수강을 받고 있는 자는 본 규정에 의한 특별생으로 본다.

부칙 <제00930호, 1994. 4.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4학년도 입학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990호, 1995. 11.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50호, 1997.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86호, 1998. 3.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338호, 2002. 6.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736호, 2009. 8.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932호,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학사·석사연계과정 운영 규정

[시행 2012. 7. 1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869호, 2012. 7. 1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에 따라 학사·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2.]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연계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부)·전공{이하 "학과(부)"라 한다}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대학 내 또는 대학(원) 상호간에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원)장은 선발인원, 선발방법, 과정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대학(원) 상호간에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장이 주관하여 해당 대학(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3.5년(7개 학기)
2. 석사학위과정 : 1.5년(3개 학기)

제4조(지원자격 및 절차)①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균평점이 3.3 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3.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원 지원학과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이내에서 선발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①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연계과정 학생"이라 한다)는 매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각 대학(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중 성적,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와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③ 각 대학(원)의 장은 매학기 말까지 연계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①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시 매학기 수강신청을 최대 24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소속 학과(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8조(연계과정 운영 등)① 각 대학(원)의 장은 연계과정 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초에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연계과정 학생은 매학기 연구활동계획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해당 학과(부)장(또는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또는 전공주임)은 연계과정 학생을 위한 학사·석사공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과(부)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 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과정탈락한 자 등에 대한 조치)① 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이하 "포기자"라 한다)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포기원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대학원 입학 포기자 포함)는 「학칙」 제88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2. 7.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학사과정 졸업 자격 및 대학원 입학)① 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개 학기 이내에 각 대학에서 정한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2. 당해 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필한 자
3. 연구활동계획서 2회 이상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졸업신청서와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원)의 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이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과정 졸업이수학기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연계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① 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실적심사 등)을 면제한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01670호, 2008. 3.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869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5. 1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4. 5. 16.,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07조에 따라 학생 징계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2.]

제2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서울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1.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6.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하거나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7. 학내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8. 「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9. 학칙 등 제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10.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제3조(징계권의 위임)①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징계 대상 행위가 소속 대학(원) 구내에서 발생하거나 소속 대학 관련 교육·행사 중에 발생한 경우
2. 기타 대학(원)장에 의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의결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구를 받은 대학(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의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①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로 한다. [개정 2010. 8. 25.]

③ 위원의 자격은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징계대상혐의의 조사 및 고지)① 학생처장은 학생이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학생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징계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별표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학생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권이 대학(원)장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학생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의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결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⑥ 학생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감사원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와의 관계)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제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징계사유의 시효)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처장의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장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의 재심의·의결 요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① 위원장은 학생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하되,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한다.
③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와,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⑤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연행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이 서면진술서의 제출기회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학생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및 지도 교수와 학부(과)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기한)①위원장은 학생처장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징계의 의결은 별표 제 3호 서식에 의한 학생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하되, 징계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10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① 학칙 제107조제3항에서 정하는 징계 중 근신은 7일 이상 1월 이하로 하고, 정학은 무기정학과 유기정학으로 하되,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2012. 7. 12.]
② 징계의 양정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근신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3월 이상의 정학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징계처분 및 통지)① 총장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4호의 서식에 의거 징계대상 학생과 그 학생이 속한 대학(원)장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04. 5. 12.]
② 제3조 제1항에 의거 징계권을 위임받은 대학(원)장이 징계처분을 한 때에도 지체없이 별표4호의 서식에 준하여 징계대상 학생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신설 2004. 5. 12.]

제13조(징계의 재심의)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총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2.]
② [삭제 2004. 5. 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2.]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제14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대학(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징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9조 제1항의 학생처장은 "해당대학의 담당 부학장"으로 본다.

부칙 <제01200호, 2001. 10.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39호, 2004. 5.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799호, 2010. 8.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869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956호, 2014.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시행 2019. 7. 1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68호, 2019. 7. 10., 일부개정.]

교무처 학사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업성적(이하 "성적"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등급) ①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로 하며, 각 등급을 +(상), 0(중), -(하)로 세분한다.
② 교과목 성적은 대학(계열) 또는 학과(반)별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의 수업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타 대학(학과)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학과)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강대상을 지정한 교과목은 지정한 강좌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또는 취소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 10.]
⑤ 수강신청 변경 학점 및 과목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 1. 7.]
⑥ 수강신청 변경기간 후 수업일수 2분의 1선까지는 담당 교원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교과목은 성적란에 "W"로 표기한다. 다만, 2분의 1선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 2. 27., 2019. 7.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5.]
1. 전공필수 교과목의 경우
2. 수강신청 취소로 해당 학기의 취득가능학점이 6학점 미만으로 되는 경우
⑧ 담당 교원은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본인의 자녀일 경우 해당 사실을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0.]

제4조(성적등급의 부여) 학사과정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 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제5조(성적의 제출) ① 담당 교원은 학기 종강일 후 1주 이내에 교과목을 관할하는 학과(부)장에게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원)장은 이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7., 2019. 7. 10.].
② 제출된 성적표의 성적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제3조제8항에 따라 자녀의 수강 사실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 성적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성적부여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0.]
② [삭제]
③ [삭제 2002. 1. 7.]

제6조(성적정정)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 교원의 착오 또는 성적기재 누락이 있을 때, 학(원)장은 해당 학기 종강일 후 4주 이내에 담당 교원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총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7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과목 신청서의 재수 표시란에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 1. 7.]
②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2. 1. 7.]
③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사과정의 경우 성적을 A0 이하 범위에서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과목임을 표시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유급 규정」을 적용하는 대학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7.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강일 이후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군복무 또는 군대체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개정 2004. 10. 28.]

제9조(징계받은 자의 성적처리) ① 징계를 받은 자의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속대학(원)의 교수회에서 정한다. 다만, 학기말 시험 이전에 수업일수 4분의 1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을 취소한다. [개정 2019. 7. 10.]
② 삭제

제10조(평점의 계산) ① ?학칙? 제83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절사한다. [개정 2012. 7. 12.]
②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평점합계
2. 학점합계
3. 성적취득 과목수

제11조 삭제

제12조(학사과정 학점초과 신청) ① 직전 2개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인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2. 1. 7.]
②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1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I” 성적) ① “I” 성적을 제출할 때 담당 교원은 미완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② “I” 성적을 부여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 종강일 후 3주 이내에 완성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개정 2019. 7. 10.]

제14조(성적등급의 환산) 제2조의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9. 7. 10.]

제15조(위반시 조치) 총장은 제3조제8항 및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부칙 <제00361호, 1975. 12.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71학년도 이전 성적은 A는 A0, B는 B0, C는 C0, D는 D0로 한 평점으로 환산 처리한다.
③(동전) 졸업에 160학점 이상을 필요로 하는 학생 중 평점평균이 3.0 이상으로서 24학점까지 초과신청한 경우와 군사학을 선택한 자는 23학점까지 초과신청할 수 있되 이 경우 학점 초과신청 표시는 제12조를 적용한다.
④(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서울대학교학업성적평가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00507호, 1979. 11. 2.>
이 규정은 197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26호, 1980. 4. 4.>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63호, 1981. 7. 3.>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93호, 1983. 3. 23.>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32호, 1984. 5. 29.>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35호, 1984. 11. 12.>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75호, 1986. 6.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82호, 1986. 9. 11.>
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98호, 1987.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15호, 1988. 3.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48호, 1989. 3. 29.>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10호, 1990. 7.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24호, 1991. 2. 6.>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77호, 1992. 6.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07호, 1998. 11. 10.>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41호, 1999. 12.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제2항중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는 200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20호, 2002. 1.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65호, 2004. 10.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28호, 2006.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은 2005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827호, 2011.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869호, 2012.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96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3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하고, 2015학년도 전에 수강했던 교과목을 재수강 할 경우, 교과목 당 1회에 한해 성적 상한 (A0)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02168호, 2019. 7. 10.>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시행 2019. 4. 1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48호, 2019. 4. 10., 일부개정.]

교무처 교무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0조에 따라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 12.]

제2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① 학위의 종류는 학사학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의 4종류로 하며, 그 종별과 해당학과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는 전공과 학위논문의 성격에 따라 소정의 자격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학과(부) 학위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공동학위 수여) 「학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각 학위과정별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7. 12.]

제4조(학위논문의 구분)(학위논문의 구분) 학위논문은 학사학위논문 ·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① 학사과정의 지도교수 선정 시기는 졸업학년 초 3개월 이내에 한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석사 · 박사통합과정 포함)의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입학 후 3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 학기를 경과한 후에라도 소속 학과(부)장이 대학(원)장에게 보고 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9. 6.]
④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명당 교원 1명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 전공의 교원이어야 한다.
⑥ 학과(부)장은 학생의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26.]
⑦ 논문지도교수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6조(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①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명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 또는 국내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이나 기관의 교원으로 한다.
③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논문작성계획서) 각 대학(원)장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석사 · 박사통합과정 포함) 학생에게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학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정이수학점을 해당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소속 대학장이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2.]
②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78조제3항(석사 · 박사통합과정 학생은「석사 · 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과정이수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2.]

제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과정에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교과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 · 박사통합과정생의 응시자격은 「석사 · 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 성적으로 대체하며,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외국어시험(영어과목 제외) 및 종합시험의 과목별 합격점수는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

상,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영어 제외)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제4항의 각 학위과정별 합격점수 이상인 경우
2.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C- 이상" 또는 "S"성적을 취득한 경우
3.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어학능력시험 성적이 각 대학(원)장이 정한 합격기준 이상인 경우
⑥ 외국인 학생 또는 대학원 입학고사에서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은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의학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및 공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시험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10. 31.]
⑧ 그 밖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험과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조(학위논문의 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은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논문의 표지형식은 별지양식 1과 같고, 학사학위논문의 표지형식은 각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8. 13.]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3., 2019. 4. 10.]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학사학위

제12조(학사학위수여) ① 학사학위는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논문심사 또는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여하며, 별지 제1호(영문 제1호의4) 서식의 졸업증서를 준다. 다만, 복수전공 또는 연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1호의2(영문 제1호의5) 서식의 졸업증서를 주고, 부전공, 연계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1호의3(영문 제1호의6) 서식의 졸업증서를 준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논문 또는 실적심사를 졸업종합시험 또는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각 대학별 졸업논문 대체 시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학위논문의 제출) 학사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논문심사위원) 학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2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장이 정한다.

제15조(논문심사평가 방법) 논문심사 평가방법 및 기준은 각 대학장이 따로 정하며, 평가결과는 합격(S) 또는 불합격(U)으로 한다.

제16조(학위논문의 대체시행 방법) ① 제12조제2항의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및 실적심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및 실적심사 평가결과는 합격(S) 또는 불합격(U)으로 하며, 실기발표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석사학위

제17조(석사학위 수여) ① 석사학위는 제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논문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하여 심사위원의 최종인준을 받은 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학생에게 수여하며, 별지 제2호(영문 제2호의3)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다만, 주관 대학(원)장이 없는 협동과정의 소속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의2(영문 제2호의4)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의학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및 공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위논문을 실적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5(영문 제2호의 6)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개정 2012. 7. 12.][개정 2016. 10. 31.]
③ 제2항의 실적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되, 이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학위논문의 제출) 석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심사용 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각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20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 심사와 함께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논문심사결과를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박사학위

제21조(박사학위 수여) 박사학위는 제8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논문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하여 심사위원의 최종인준을 받은 논문을 학(원)장에게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며, 별지 제3호(영문 제3호의3)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다만, 주관 대학(원)장이 없는 협동과정의 소속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의2(영문 제3호의4)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제22조(학위논문의 제출)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 요구서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3. 이력서
4.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23조(논문편수) 박사학위 논문은 1편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참고논문 또는 부본·역본·모형 및 표본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구성) ①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25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구술고사는 최종 심사와 함께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논문심사 결과를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학위수여의 결정)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7조(학위논문의 공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학위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장 명예박사학위

제28조(수여대상)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9조(수여방법) ①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여하며, 별지서식 3의 학위기를 준다.

② 그 밖의 명예박사학위 후보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위의 취소

제30조(학사학위의 취소)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의 취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02148호,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협동과정 인지과학 전공의 학위의 종류 및 종별 변경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서울대학교 학칙

[시행 2020. 2. 17.] [서울대학교학칙 제2210호, 2020. 2. 17.,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조직의 설치) ① 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부 및 학과(이하 "학과(부)"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의 일반관례, 사회적 수요 및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원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대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는 학과(부)를 둔다. 다만, 자유전공학부는 대학에 준하는 단위로 운영한다.

③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학부 또는 학과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④ 학과(부)에는 전공 또는 교과과정상 전공을 둘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⑤ 학과(부) 내에 전공을 따로 두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한다.

제4조(학위과정의 설치 등) ① 학과(부) 또는 전공에 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성격과 본교의 교육목표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원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6년제 학사과정의 경우,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각급 학위과정에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의 협동과정 및 제3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의 경우, 총장은 그 운영실적을 매 2년 마다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학위과정의 연계 및 통합) 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이 상호 연계된 과정(이하 "학사·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학위과정으로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학사·석사통합과정"이라 한다)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사·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전문석사학위 과정과 학술박사학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복합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학사·석사연계과정, 학사·석사통합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24.]

제6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은 대학(원)의 학과(부) 또는 자유전공학부에 소속된다. 다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요에 따라 타 학과(부) 또는 부속시설에 겸무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겸무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교수) 본교에 명예교수를 두며 추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년) 전임교원이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교과과정의 운영) ① 교과과정은 각 학과(부) 단위에서 종적으로 각급 학위과정 간에 일관성 있게 조정 운영되어야 하며, 횡적으로 각 학과(부)와 각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기초교육원간에 상호 조정 운영되어야 한다.
② 학사과정의 기초교양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은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등의 위탁) ① 학사과정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등을 위하여 입학 후 일정기간 동안 타 대학 또는 기초교육원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 및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인사관리는 일반대학원의 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각 학장과 전문대학원의 원장(이하 "전문대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학장은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에게 학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학(원)간·학과(부)간·부속시설간 협조) ① 2개 이상의 학부·학과나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기초교육원간에 교과과정·인사·예산·시설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2개 이상의 부속시설 간에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1절 총장·부총장

제12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13조(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 및 기획부총장을 둔다.
② 교육부총장은 대학원, 교무, 학생, 기초교육, 입학,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연구부총장은 연구, 산학협력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4. 1.]
④ 기획부총장은 대학운영의 기획·조정, 소통협력, 일반행정, 재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4. 1.]

제2절 교육조직

제14조(대학·대학원 등) ① 본교에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간호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미술대학·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음악대학·의과대학·자유전공학부를 둔다. [개정 2013. 4. 24.,2017. 10. 19]
②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보건대학원·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국제대학원·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융합과학기술대학원·국제농업기술대학원·공학전문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4. 6. 25.,2015. 10. 13.,2019. 12. 26.]
③ 대학에 별표1의 학부·학과·전공을 둔다.

제15조(학생의 소속) 학사과정 학생은 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1개의 모집단위 또는 별표1의 대학별 설치 학과(부)·전공에 소속되며, 대학원과정 학생은 별표3 또는 별표4에서 정한 1개의 학과(부)·전공 또는 협동과정에 소속된다. [개정 2016. 9.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학사과정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제17조(대학원과정 입학정원) ① 대학원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② 대학원과정의 학생모집단위별 구분과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다만, 모집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대학원장) ① 일반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육부총장으로 겸보한다.
② 대학원장은 일반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 일반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대학원장이 대학원과정의 학생교육을 학장 및 전문대학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해당 학장 및 전문대학원장이 담당한다.

제19조(학(원)장) ① 대학에 학장, 전문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학장 및 원장(이하 "학(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사과정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부설학교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전문대학원장은 그 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 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④ 대학에 부학장, 전문대학원에 부원장을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각각 4명 이내로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7. 12. 8.]
⑤ 부학장 및 전문대학원의 부원장(이하 "부학(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원)장을 보조한다. 다만, 학(원)장은 대학(원)의 운영상 각 부학(원)장의 직무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8.]
1. 교무부학(원)장 : 교원 및 조교 인사, 입학·졸업·학적·강좌·교과과정·수업·학점 등 교무에 관한 사항
2. 학생부학(원)장 : 학생의 보건·후생·상벌·장학·동원·집회·훈련·병사 등 학생에 관한 사항
3. 연구부학(원)장 : 학술연구,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연구시설 등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획부학(원)장 : 발전계획 수립, 정보화, 홍보, 대외협력 및 교류 등 기획에 관한 사항
⑥ 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부학(원)장(경영전문대학원·공학전문대학원은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8.]
⑦ 자유전공학부에는 학부장과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부학부장을 두되, 그 자격 및 직무 등은 각 대학의 학장 및 부학장에 준한다. [개정 2017. 12. 8.]

제20조(학장 및 원장의 선임) ① 각 대학에는 학장추천위원회를, 각 전문대학원에는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대학(원)에서 따로 정하되,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학(원)장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학(원)장이 연임으로 추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학(원)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후보를 추천한다.
⑤ 총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참고하여 학(원)장 후보 1명을 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원)장에 임명한다.

제21조(학부장 및 학과장) ① 대학과 대학원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학부장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두되, 교수 중에서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교수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대학과 대학원의 학부장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상호 겸보할 수 있다.
③ 학부장 및 학과장은 학부 및 학과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학생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조한다.

제22조(교수회) ① 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원)장이 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되, 재적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교수회는 해당 대학(원)의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학(원)장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칙·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6.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학부 또는 학과간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8.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9. 그 밖에 교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

제23조(부속시설) ① 본교에 지원시설로 중앙도서관과 기초교육원을 둔다.
② 본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둔다.
③ 본교에 연구시설과 부속시설을 두며, 각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에 각각 장을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총장은 부속시설 중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와 존속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중앙도서관장은 도서 및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중앙도서관에 전문분야별로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중앙도서관 및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기초교육원) ① 기초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초교육원장은 학사과정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기초교육원에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기초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처장으로 겸보하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정책부단장과 산학협력사업부단장을 두고 산학협력정책부단장은 연구부처장으로, 산학협력사업부단장은 부교수이상 전임교원으로 각각 겸보한다.
③ 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 및 운영, 감사의 선임 및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부설학교) ① 사범대학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른 다음 각 호의 초·중등학교를 설치·운영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총장은 부설학교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총장은 이를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또는 부설학교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④ 부설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학교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은 각 부설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7조의2(부설학교진흥원) ① 각 부설학교를 통할하기 위해서 부설학교진흥원을 둔다.
② 부설학교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설학교의 통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부설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사항
3. 부설학교 교원 급여 및 복지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부설학교 교육사업 및 장학에 관한 사항
5. 부설학교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부설학교 예산 및 시설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실습 지원, 현장교육 연구사업 등 초·중등 교육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부설학교진흥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두며, 원장과 부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7.]

제4절 행정조직

제28조(처·국 등) ① 본교에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처, 사무국, 시설관리국, 입학본부, 국제협력본부 및 정보화본부를 둔다.
② 제1항의 조직에 두는 처장·부처장, 국장, 본부장·부본부장 등의 보임에 관한 사항과 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처장을 둔다.
② 교무처장은 교원 및 조교의 인사, 학생교육, 국내 학술교류, 대학원 지원, 학적 및 수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교무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무부처장과 교육부처장을 둔다.
④ 교무부처장은 교원 및 조교의 인사, 국내 학술교류, 대학원 지원, 학적 및 수업관리에 관하여 처장을 보조한다.
⑤ 교육부처장은 대학교육 개선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하여 처장을 보조한다.

제30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처장을 둔다.
② 학생처장은 학생지원, 학생소통, 복지 및 장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학생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둔다.

제31조(연구처) ① 연구처에 처장을 둔다.
② 연구처장은 연구진흥정책 수립, 학술교류활동 지원, 연구소(원)의 설치 및 폐지 등 연구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연구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처장을 둔다.
② 기획처장은 대학운영의 기획 · 조정, 대학재정, 법무, 대외협력, 홍보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기획처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부처장, 협력부처장, 재정전략실장을 둔다.
④ 기획부처장은 대학운영의 기획 · 조정 및 법무에 관하여 처장을 보조한다.
⑤ 협력부처장은 홍보, 대외협력 및 대학평가에 관하여 처장을 보조한다.
⑥ 재정전략실장은 예산편성, 예산확보 및 재정 전략 수립, 자산의 운영에 관하여 처장을 보조한다.

제33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직원인사, 총무, 회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4조(시설관리국) ① 시설관리국에 국장을 둔다.
② 시설관리국장은 학교시설의 건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5조(입학본부) ① 입학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 입학본부장은 입학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입학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둔다.

제36조(국제협력본부) ① 국제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 국제협력본부장은 국제교류 및 외국인 교직원 ·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국제협력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둔다.

제37조(정보화본부) ① 정보화본부에 본부장을 둔다.
② 정보화본부장은 대학정보화 종합 기획 · 조정, 정보시스템의 개발 · 운영, 전산망 구축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정보화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둔다.

제5절 위원회 등

[제목개정 2019.6.12.]

제38조(기획위원회) ① 본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기획부총장 · 교무처장 · 학생처장 · 연구처장 · 기획처장 · 사무국장 · 시설관리국장 · 기획부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 · 장기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 · 장기 시설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 기획위원회에 일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⑤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9조(교육위원회) ① 대학의 교육목표, 교육방향 등 교육활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총장, 기초교육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본부장, 국제협력본부장과 총장이 임명 · 위촉하는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과 임명 · 위촉된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19. 6. 12.]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과과정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설정에 관한 사항
2. 입학정책 및 인재육성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12.]
3. 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원칙 및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학과(부)별 교육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④ 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제40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교육부총장 · 학장 · 전문대학원장 · 교무처장 · 학생처장 · 연구처장 · 기획처장 · 입학본부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사 · 박사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
3. 대학원과정의 입학 · 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4.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5.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석사 ·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대학원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대학원 학사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 학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 · 학(원)장 · 자유전공학부장 · 기초교육원장 · 교무처장 · 학생처장 · 연구처장 · 기획처장과 교수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
2. 강사의 신규채용, 재임용에 관한 사항
3. 부총장, 학(원)장 등 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대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기초교육위원회) ① 학사과정 기초교양교육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초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기초교육위원회는 기초교육원장 · 기초교육원 부원장 · 교육부처장 · 학생부처장 ·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과 총장이 임명 · 위촉하는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초교육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교육원 부원장이 된다.
③ 기초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과과정의 편성 · 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사과정의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기초교육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교무부처장·교육부처장·입학본부 부본부장·기초교육원 부원장·각 대학(원) 교무부학(원)장 및 자유전공학부 부학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료 및 학위수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 학사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항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4조(미래연구위원회) ① 교원의 학술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국가적 연구과제 등 미래 연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미래연구위원회는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연구부처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연구 분야에 많은 경험과 탁월한 식견이 있는 교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연구처장과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명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

④ 미래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의 계획, 관리, 운영, 지원 및 연구윤리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2. 전지구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방향 제시
3. 본교의 연구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4. 국가의 미래 연구 수요 예측과 이를 반영한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산업계 연구개발 인력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래가치 창출에 필요한 연구기획

⑤ 미래연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연구운영위원회) ① 교원의 학내외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운영위원회는 연구처장, 연구부처장, 각 대학(원)의 부학(원)장 또는 각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③ 연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 연구시설, 연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대학, 연구소 간 연구 관련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 활동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정보화위원회) ① 본교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화위원회는 연구부총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중앙도서관장·정보화본부장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8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며,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이 된다.
③ 정보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종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장·단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정보화 사업 및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 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7조(연구진실성위원회) ①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처장·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에관한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 개발, 평가의 시행방안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의2(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 ① 부설학교의 발전계획, 운영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교육부총장,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부설학교진흥원장, 부설학교진흥원 부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총장이 임명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설학교진흥원장이 된다. ③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2. 17.]
1. 학교발전계획 및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부설학교 직제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
3. 부설학교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부설학교 학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부설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8조의3(다양성위원회) ① 본교의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양성평등 촉진을 포함한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교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건의
2. 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황과 개선실적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출
4.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④ 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의4(대학혁신센터) ① 국가 고등교육 및 본교 혁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센터를 둔다.
② 대학혁신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③ 대학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등교육 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2. 본교 혁신 과제 및 정책 개발
3. 국·공립대 협력 과제 개발
4. 본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5.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
④ 대학혁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48조의5(AI위원회) ① 본교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AI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AI(인공지능) 위원회를 둔다.
② AI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AI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교 AI 관련 연구·교육·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2. 본교 AI 관련 정책 수립 및 AI 관련 대정부 제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AI 생태계 조성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④ AI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30.]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 일반 [본조신설 2015.12.30.]

제49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 2. 6.]
② 학기는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제50조(수업일수) ①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2. 6.]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8. 6. 15.]

제51조(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업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2. 하계휴가·동계휴가 : 학사일정에 따름[개정 2018. 6. 15.]
3. 임시휴업일 : 필요시 총장이 따로 정함.

제52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과 건축학전공은 5년,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은 예과 2년, 전공교육 4년으로 하고, 약학대학은 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과 편입학 또는 전과 후 전공교육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 4. 24.]
②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2년 이상(다만, 치의학대학원·의학대학원은 4년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이상,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및 SNU MBA는 1년 6개월 이상, Executive MBA는 2년 이상 [개정 2013. 4. 24.]
2. 박사과정 : 2년 이상
3. 학사·석사연계과정 : 5년 이상
4.학사·석사통합과정 : 6년 이상(다만,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8년 이상) [개정 201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4.]
5. 석사·박사통합과정 : 4년 이상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6년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각각 6개월 [개정 2013. 4. 24.]
2. 학사·석사통합과정 : 1년 6월 [개정 2013. 4. 24.]
3. 석사·박사통합과정 : 1년
④ [삭제 2018. 6. 15.]

제53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5.]
1. 학사과정 : 8년. 다만, 예과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2. 석사과정 : 4년. 다만, 치의학대학원 및 의학대학원은 8년, 법학전문대학원은 5년,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및 SNU MBA 석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3. 박사과정 : 6년.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4. 학사·석사연계과정 : 10년
5. 학사·석사통합과정 : 12년. 다만,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8년으로 한다. [개정 2013. 4. 24., 2018. 6. 15]
6. 석사·박사통합과정 : 8년
7.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12년
②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1. 유급을 적용하는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학사과정, 치의학대학원 및 의학대학원의 석사과정, 치의학대학원의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생 [신설 2018. 6. 15.]
2.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또는 연합전공이수 학생. 이 경우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주전공을 복수로 이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8. 6. 15.]
3.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학생 [신설 2018. 6. 15.]
4. 그 밖에 재학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학생 [신설 2018. 6. 15.]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입학과 등록

제54조(입학시기) ① 학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년도 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 2. 6.]
1. 편입학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입학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입학
② 대학원과정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55조(학사과정 입학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6조(석사과정 입학자격)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7조(박사과정 입학자격)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람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58조(통합과정과 복합학위과정 입학자격) ① 학사·석사통합과정 입학자격은 제55조의 "학사과정 입학자격"으로 한다.
② 석사·박사통합과정과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제56조의 "석사과정 입학자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24.]

제59조(대학원과정 지원학부 또는 학과의 허용범위) ① 대학원과정에는 지원자의 출신학부·학과 이외의 학부·학과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에는 지원자격을 일정한 석사과정의 출신학부·학과 또는 전공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학부·학과별로 지원할 수 있는 출신학부·학과 또는 전공을 제한할 경우에는 모집 시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
③ 출신학부·학과의 범위는 부전공 학부·학과를 포함한다.

제60조(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③ 입학고사의 관리·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학사과정의 편입학) ① 학사과정의 편입학은 정원내편입학과 정원외편입학으로 구분한다.
② 정원내편입학 학년은 3학년(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1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년의 신입생 선발 시 편입학을 목적으로 배정된 정원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③ 정원외편입학 학년은 3학년(의과대학 의학과·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1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94조의 위탁생의 경우에는 편입학 학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편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약학대학 전공과정의 편입학 자격은 본교 재적생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62조(대학원과정의 편입학) ① 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통합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편입학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석사·박사통합과정 편입학 자격은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 분야의 석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③ 편입학 시행방법, 학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을 정원내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할 수 있다.
1. 정원내 편입학 학년은 2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년의 신입생 선발시 배정 범위에서 선발한다.
2. 편입학 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30학점 이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3조(정원외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의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입학을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전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그 밖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이 별도로 정한 의무이수학점을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절 학적관리

제65조(전과(부)) ①학사과정 2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전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6. 15.]
② 제1항의 전과(부)의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 전공과정으로의 전입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 6. 15.]
③ 폐지된 모집단위 재적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과(부)를 할 수 있다.[신설 2018. 6. 15.]
④ 약학대학 전공과정으로의 전과 자격은 본교 재적생으로서 다른 학과(부)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한다.
⑤ 약학대학으로 전입한 학생의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학사경고·학사제적·재입학 횟수는 이를 통산하지 않는다.
⑥ 전과(부)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전과(부)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6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신청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6.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창업, 임신·출산, 육아 및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강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2018. 6. 15.]
③ 휴학은 2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권고휴학은 4개 학기까지, 군휴학은 의무복무기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6. 15.]
④ 휴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19., 2018. 6. 15.]
1. 학사과정 : 6개 학기. 다만, 예과과정 및 편입학한 경우(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및 약학대학으로 편입학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각각 3개 학기로 한다.[개정 2018. 6. 15.]
2.석사과정 : 4개 학기. 다만, 치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6개 학기,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및 SNU MBA는 8개학기로 한다. [개정 2013. 4. 24., 2018. 6. 15]
3. 박사과정 : 6개 학기.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4개 학기로 한다. [개정 2018. 6. 15.]
4. 학사·석사통합과정 : 10개 학기. 다만,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6개 학기로 한다. [신설 2018. 6. 15.]
5. 석사·박사통합과정 : 8개 학기[개정 2018. 6. 15.]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10개 학기[개정 2018. 6. 15.]
⑤ 다음 각 호의 휴학 기간은 제4항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군휴학 :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다만,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학기로 본다.
2. 창업휴학 : 2개 학기
3. 임신·출산휴학 : 2개 학기
4. 육아휴학 : 4개 학기
5. 질병휴학 : 4개 학기
6. 권고휴학 : 4개 학기
[신설 2018. 6. 15.]
⑥ [삭제 2018. 6. 15.]
⑦ [삭제 2018. 6. 15.]

제67조(복학)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 전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복학을 신청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휴학한 학생이 학기 개시 후에 전역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 [삭제 2018. 6. 15.]

제68조(자퇴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15.]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된다.

1. 휴학허가(휴학 연장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제53조의 재학연한 내에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3. 제66조제4항의 휴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4. 학사지도위원회에서 권고휴학을 하도록 한 학생이 권고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5. 사망한 경우

[신설 2018. 6. 15.]

제69조(복적 및 재입학) ① 제6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적된 학생이 1년 이내에 복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5.]

②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③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자퇴·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복적 또는 재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복적 및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6. 15.]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1.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사제적되거나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급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2. 제53조의 재학연한이 만료된 학생
3. 제107조제3항에 따라 징계 제명된 학생
4. 제110조제3항에 따라 학사 제명된 학생
5. 제111조제3항에 따라 유급 제명된 학생

[개정 2018. 6. 15.]

⑤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한다.[개정 2018. 6. 15.]

⑥ 복적하거나 재입학한 학생의 이미 이수한 학점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한다. [개정 2018. 6. 15.]

제70조(이중학적 금지) 본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7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수업연한 초과자 수강신청)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5.]

② [삭제 2018. 6. 15.]

제73조(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74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대학원과정의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한 이수단위, 이수기간, 이수방법 등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 실험 · 실습 · 실기 및 체육 수업시간 외의 학습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때 또는 교과과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별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사 · 석사연계과정이수자는 제1항의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76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전공이수)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대학장은 다음 각호의 전공이수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2. 2개 이상의 학과(부) · 전공이 연합하여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는 연합전공
3. 학과(부)가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하는 연계전공
4.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5.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부전공

②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학생설계전공이나 타 대학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간호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소속 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호의 전공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8조(과정이수 학점 등)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의학과 · 수의학과 · 약학과 · 제약학과의 학사과정은 전공과목을 주로 과하며, 의학과 · 수의학과 해당 예과에서는 교양과목을 주로 과하되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8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②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부) · 전공에서 정한 전공교과목 39학점 이상을,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에서 정한 교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 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 24학점
   나. 박사과정 : 36학점
   다. 석사 · 박사통합과정 : 60학점 [신설 2018. 6. 15.]
2. 전문대학원
   가.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 석사과정 30학점 [개정 2018. 6. 15.]
   나. 국제대학원 : 석사과정 39학점, 박사과정 45학점[개정 2018. 12. 7.]
   다. 경영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49학점 [개정 2013. 4. 24.. 2018. 6. 15.]
   라. 치의학대학원 : 석사과정 165학점, 학사 · 전문석사통합과정 275학점. 이 경우 전문석사과정 진입을 위한 학점은 110학점만 포함한다. [개정 2018. 6. 15.]
   마. 의학대학원 : 석사과정 148학점
   바.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0학점, 박사과정 24학점
   사.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 국제농업기술대학원 : 석사과정 39학점 [신설 2014. 6. 25.]
자. 공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36학점 [신설 2015. 10. 13.]
차.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신설 2019. 12. 26.]

④ 학사과정 졸업 및 대학원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제79조(타 학부·학과 교과목의 이수)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5.]

제81조(선수과목) 대학원과정에서 사전에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2조(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 2. 6.]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본교 입학 전에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3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복수전공·연합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부전공 포함)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대학원·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0 이상이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5절 시험과 성적

제84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85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3
B+
3.3
C+
2.3
D+
1.3
F
0
A0
4.0
B0
3.0
C0
2.0
D0
1.0
-
-
A-
3.7
B-
2.7
C-
1.7
D-
0.7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평점을 부여하지 않고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S"로, 낙제는 "U"로 표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한해서는 급제를 "S"와 "S+"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6조(추가시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수료와 졸업

제87조(학사과정의 학년수료) ① 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1. 1학년 : 33학점 [개정 2018. 6. 15.]
2. 2학년 : 65학점 [개정 2015. 2. 6., 2018. 6. 15.]
3. 3학년 : 98학점 [개정 2018. 6. 15.]
4. 4학년 : 130학점 [개정 2018. 6. 15.]
5. 5학년 : 160학점 [개정 2018. 6.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학사과정에서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개정 2018. 6. 15.]

제88조(학사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으로 제52조, 제78조 및 제83조에 따라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대학별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희망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8. 6. 15.]

② 졸업증서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학사·석사연계과정 이수자에게는 제1항의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학사·석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 4. 24.]

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대학별로 정한 전공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인정하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89조(대학원 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2조, 제78조 및 제83조에 따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치의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공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졸업종합시험과 학위논문은 실적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13., 2018. 6. 15.]

②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2조, 제78조 및 제83조에 따라 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 통합과정이나 의학대학원 또는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 6. 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제1항의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학생 [개정 2018. 6. 15.]
2.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
3. 의학대학원 또는 치의학대학원의 복합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

[개정 2016. 9. 6.]

④ 학위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제90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 4종으로 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제14조제2항의 전문대학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학위를 수여하되,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절 특별학점취득·계절수업·공개강좌 등

제91조(특별학점 취득) ① 특별학점 취득을 위하여 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계절수업 등) ① 하계휴가 또는 동계휴가 기간 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하계계절수업은 9학점 이내, 동계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3조(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본교에 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공개강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으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절 위탁생 · 특별수강생 등

제94조(위탁생) ① 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 있을 때에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위탁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5조(특별수강생) ① 각급 학위과정에 특별수강생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6조(교류수학생) 본교와 국내외 대학간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7조(연수연구원)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연수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수연구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8조(대학원연구생)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사람에게 대학원연구생의 자격을 준다.
② 대학원연구생의 자격 · 신분 ·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제99조(학생회 등) ①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0조(학생 생활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의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상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01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2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장학

제103조(등록금의 면제 · 감액) 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감면은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이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04조(장학금)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5조(학비보조 등) ① 간호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 중 학생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 · 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절 규율과 상벌

제106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으로 한다.
④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 · 증거제출 ·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8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치의학대학원 학사 · 전문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에 미달되거나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및 유급을 적용하는 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6. 15.]
②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2 이하이거나 2개 교과목 또는 6학점 이상의 성적이 "F"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 이 경우 성적산출시 학사과정과 외국어 진행강의 및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제외한다.[개정 2015. 2. 6.]
③ 학(원)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할 수 있는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연속하여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 6. 15.]

제109조(유급)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유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6. 15.]
1. 학사과정 : 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신설 2018. 6. 15.]
2. 석사과정 : 치의학대학원(학사 · 전문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제외한다),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2018. 6. 15.]

제110조(학사제적 · 학사제명)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108조의 학사경고를 4회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학사제적한다.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학사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 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한다.
③ 학사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제108조의 학사경고 2회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명한다.
④ 제1항의 학사지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1조(유급제적 · 유급제명) ① 제109조의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재학연한 중 3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연한 중 2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한다.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유급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 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적한다.
③ 유급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제명한다.

제5장 등록금

제112조(등록금 납부)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5.]

제113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명과 학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 또는 동문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 1명은 학교와 학생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4조(복학자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16조(실험실습비 등) 실험 · 실습 · 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7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학기단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등록금의 반환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 사망 ·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8. 6. 15.]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입학일 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6장 학칙개정

제118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교수회가 발의하고, 총장이 7일 이상 공고한 후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 · 공포한다.

제119조(규정 제정 및 개정) 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7일 이상 공고한 후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공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정관, 학칙 등 상위 규범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2. 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의 개정
3.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